

630.951

L293L

1999 v. 3

199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8. 11. 12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총6권중 제3권



농림부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6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1999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조합,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1999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업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6권 :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PC통신(AFFIS)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FFIS문의 : 농림수산정보센터 시스템운영과(전화 589-2039)
 - 구입문의 : 농림수산정보센터 총 무 과(전화 589-2034, 2036, 2048)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주요골자	4
3. 주요 변경사항	7
4. 해설	9
제1장 총칙	9
제2장 자율사업	13
제3장 공공사업	19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1
제5장 보칙	23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25
1. 배경	27
2. 주요골자	28
3. 주요 변경사항	32
4. 해설	36
III.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965호)	55
IV.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948호)	107
V. 참고사항	137
1. 42조원 지원계획	139
2. 농어촌특별세사업 지원계획	141
3.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143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149
1. 영농규모화사업(자율)	151
2. 토양개량사업(자율)	180
① 토양개량제공급 ② 객토	
3. 주요농작물원원종 및 원종생산*(공공)	202
4. 발기반정비(공공)	212
5. 경지정리사업(공공)	232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공)	260
7. 배수개선(공공)	272
8. 수리시설개보수(공공)	295
9. 대·중규모용수개발(공공)	331
10. 지표수보강개발(공공)	357
11. 농촌생산기반조사 및 생산기반종합정비시범사업(공공)	375
① 지하수개발조사 ② 농업용수수질조사·연구 ③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④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시범사업	
12. 대단위농업종합개발(공공)	412
13. 지역특화사업지원(공공)	427
①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② 감귤복합가공처리시설사업	
14. 서남해안간척(공공)	462
II. 농업기계화	481
15. 농기계구입지원(자율)	483
① 일반농가 ② 벼직파 및 발작물용 ③ 생산자조직 ④ 쌀전업농	
16. 농기계사후관리지원(자율)	575
① 농기계보관창고설치 ② 농기계수리봉사지원 ③ 광역농기계수리센터설치	
17. 시설농업기자재생산 및 농업기계생산비축지원(공공)	612
①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② 농업기계생산비축지원	
III. 생산 및 유통개선	627
18.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자율)	629
19. 농업협동조합합병지원(공공)	651
20.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실시(공공)	654
① 규모화촉진직접지불 ②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제3권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693
21. 고품질수량증자개발(공공)	695
II. 생산 및 유통개선	705
22.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707
① 시설원예 ② 노지채소 ③ 특작 ④ 과실	
23. 농산물규격출하(자율)	800
① 포장자재비지원 ② 포장개선시범	
24. 생산자조직육성(자율)	822
25. 산지유통기반확충	833
①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설 및 집하장시설보완 ② 농산물저온유통기반확충	
26. 농수산물도매시장및공판장건설(공공)	891
①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및 공판장건설 ② 농산물 도매유통시설 보완	
27. 농산물물류표준화(공공)	922
28. 농축산물판매촉진(공공)	933
29. 농산물물류센터(시설)건설(공공)	938
① 물류센터 ② 소비자단체물류시설	
30. 농산물직거래지원(공공)	959
31.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물류센터출하촉진자금(공공)	976
32. 채소수급안정사업(공공)	983
33. 농산물해외시장개척(공공)	990
34.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건립(공공)	1013
35. 수출농산물저장시설설치(공공)	1019
36. 우수농산물수매 및 유통지원사업(공공)	1026

제4권 [축산업구조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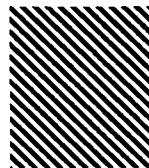
I. 사육기반확충	1043
37. 축산경쟁력강화사업(지출)	1045
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② 축산분뇨처리시설 ③ 경주마육성사업	
38. 축산단지조성사업(공공)	1107
39. 가축계열화사업(공공)	1120
40. 소산업정보화사업(공공)	1135
41.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공공)	1141
II. 생산 및 유통개선	1151
42.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공판장건설(공공)	1153
43. 축산물품질향상 및 유통시설지원(공공)	1159
① 품질향상 및 유통시설 ② 등급판정	
44. 경영상담·홍보 및 기술개발(공공)	1186
① 경영상담 및 홍보 ② 가축공제 ③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45. 축협조합 경영개선(공공)	1199
46. 축산기자재생산시설지원사업(공공)	1211
47. 사료제조시설 및 사료원료구입(공공)	1216
48.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공공)	1234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② 축산위생시설자금지원	
49. 학교우유급식사업(공공)	1258
50. 축산자조금(공공)	1266
III. 가축개량	1271
51. 가축개량사업(공공)	1273
① 한우개량 ② 젖소개량 ③ 돼지개량 ④ 닭개량	
52. 가축개량기반구축(공공)	1311

제5권 [농촌개발]

I. 생산 및 유통개선	1319
53.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및 환경농업지구조성(자율)	1321
①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 ② 환경농업지구조성 ③ 친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 ④ 환경농업교육사업	
54. 농촌가공산업육성(공공)	1371
① 농산물가공산업육성 ② 특산단지육성 ③ 농산물가공공장 경영·기술지도 ④ 명품개발	
II. 기술개발 및 정보화	1457
55. 농림기술개발(공공)	1459
56.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1468
①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② 지역특화시범사업	
57. 기술보급사업*(공공)	1488
① 새기술보급시범사업 ② 품목별전문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육성 ③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III. 인력육성	1515
58. 농업인후계자육성(자율)	1517
59. 전업농육성(자율)	1552
60.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시범사업(자율)	1597
61.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공공)	1615
62. 농업계학교등교육지원(공공)	1627
① 농업계특성화대학지원 ② 한국농업전문학교지원	
63. 농업경영컨설팅지원(공공)	1638
IV. 소득원개발	1677
64.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1679
65. 농공단지육성(공공)	1739
66. 한계농지정비(공공)	1756
67. 농·축산경영자금지원(공공)	1770
① 농업경영자금 ② 축산경영자금	
V. 생활환경개선	1785
68.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공공)	1787
① 일반정주권개발 ② 문화마을조성 ③ 농촌마을하수도시설 ④ 농가주거환경개선	
69.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공공)	1867

제6권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확충	1891
70.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1893
71. 사유림협업경영(공공)	1897
72. 임도시설(공공)	1902
73. 영림계획(자율)	1907
74. 임업기술개발보급(공공)	1912
II. 생산 및 유통개선	1917
75. 임산소득증대(자율)	1919
① 단기소득임산물생산 ② 조정수·분재소재생산 ③ 산림복합경영	
76. 임산물이용가공 및 저장시설(자율)	1944
77. 임업협동조합 및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공공)	1956
① 임업협동조합육성 ② 임산물생산자조직육성	
78.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1967
79. 합판 및 보드류시설지원(공공)	1997
III. 인력육성	2003
80.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육성(자율)	2005
81. 임업전문인력양성 및 임도시공장비지원(공공)	2011
① 임업전문인력양성 ② 임도시공장비지원	
IV. 환경임업육성	2023
82.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2025
83. 사방사업(공공)	2031
84. 산림생태보전(공공)	2036
85. 산촌종합개발(공공)	2043
V. 산림자원조성	2055
86. 해외조립사업(자율)	2057
87. 산림조성(공공)	2063



I. 생 산 기 반 확 충

여 백

21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산정책과(과장 박해상, 농업사무관 이재현)입니다

1. 목적

- 고품질 우량종자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육채종시설 및 신품종 육종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 기반 구축 및 종자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종자산업법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
 - ('98까지) 채소종자 → ('99) 채소, 과수, 화훼, 버섯종균 등 작물종자
- 업체별 전문작물을 지정·지원하여 전문화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체에 집중지원 및 개인육종가에게도 지원하여 대외 경쟁력 향상도모
- '99년부터 육채종 시설과 신품종 육종사업을 공통사업으로 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종자산업법 제16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업량	178품종 (79,961평)	60 (17,250)	90 (4,244)	80 (미정)	미정	미정	
사업비	계	백만원 18,500	5,140	6,166	4,286	14,300	57,200
	보 조	-	-	-	-	-	-
	용 자	12,778	3,600	4,316	3,000	10,000	40,000
	지방비 자부담	- 5,722	- 1,540	- 1,850	- 1,286	- 4,300	- 17,200

※ 주) 사업량의 ()내서는 육채종시설자금 지원규모임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자금지원대상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 규정에 의거 종자업등록을 필한 업체 및 개인육종가

(2) 지원단가

- 육채종시설(기자재) : 신청시설별로 기준단가 적용
 - 저온저장고 2,000천원/평, 일반창고 700천원/평, 실험실 1,600천원/평, 온실 1,300천원/평, 망실 및 비닐하우스 50천원/평, 첨단유전공학기자재 및 종자품질관리 기자재 시가 적용
- 신품종육종 : 품종당 50백만원이내에서 실제단가

(3)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4) 지원내용

사업구분	사업내용	지원기준
○ 육채종 시설 (기자재)	○ 종자생산 및 보관·저장 시설 온실, 실험실, 망실 및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 첨단유전공학 기자재(신규) 고속원심분리기, 식물배양기, 전기영동기 등 ○ 종자품질관리 기자재(신규) 종자소독, 종자정선 및 가공기자재	○ 업체의 신청 시설·기자재 별로 기준단가 및 시가 적용 융자지원
○ 신품종 육종	○ 고품질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 개발	○ 품종당 50백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4,286	3,000	-	3,000	-	1,286
육채종시설 · 기자재	미정	1,286	900	-	900	-	386
신품종육종	80품종	3,000	2,100	-	2,100	-	900

※ 주)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정책과(02-503-7281/2)
- 시·도 : 농산물유통과(농산과, 농산지원과, 특작과, 유통특작과등)
- 시·군·자치구 : 산업과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거 해당 시·군에 사업을 신청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 최근 1년간 종자분쟁으로 인하여 농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 대상자는 제한 또는 제외
- 최근 1년간 동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사업도중 사업을 포기한 사업대상자 또는 사업미시행으로 배정된 사업비를 불용시킨 사업대상자, 사업도중 사업계획 변경이 많은 사업대상자는 제한 또는 제외

(2) 우선순위

- 종자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체별로 지정한 전문작물별로 육채종 시설 및 신품종육종자금을 신청한 사업대상자 우선지원
- 육채종 시설자금은 저온저장고, 실험실, 온실등 육종시설에 우선지원
- 종자수출액이 많은 사업대상자 우선선정
- 기타 여건의 변화에 대처하여 농림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3) 선정절차

- 사업대상자는 정부가 제시한 지원내용을 토대로 사전에 자체 경영 계획에 맞게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종자산업 관련협회장의 추천을 받아(개인육종가는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장 등 관련기관장의 추천을 받음) 해당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별로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예산범위내에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감안 사업대상자를 확정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 정부가 제시한 지원내용을 토대로 사업대상자가 자체 경영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대상자 선정후 사업변경등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지원단가가 제시되지 않은 사업(첨단유전공학기자재등)을 신청할 경우는 객관적인 견적서, 원가계산서등 사업단가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발생시 당해 사업 대상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을 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를 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 요청, 변경승인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3)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자부담금 조달 및 투입내역등 사업의 실적(금융 거래자료,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 등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함)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시행 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자부담 비율제외)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함)에 따라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여기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지원업체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자부담 미사용, 사업계획의 부당변경 및 중도포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 사업자는 시설 등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후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목적외 사용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여야 함

나. 보고·기타

- 사업계획서 제출 : 1월말까지[별지 제1호서식]
- 사업진도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지 제2호서식]
- 사업추진결과보고 : 사업익년도 3월20일까지[별지 제3호 서식]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주시설 소재지의 해당 시·군

나.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 규정에 의거 종자업등록을 필한 업체 및 개인
육종가

다. 신청절차 :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를 작성
하여 주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에 제출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서식 준용)
- 종자산업관련협회장의 추천서(개인육종가의 경우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장
등 관련기관장의 추천서)
- 사업대상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산출근거(필요시)등

마.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우선순위, 선정절차 : 5 <추진체계> 다항 내용과 동일

바. 기타사항

- 정부시책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기타사업도 신청할 수 있음
- 2000년이후 융자금 금리는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심사제외

()사업 지원계획 보고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			농가수 (호)
				계	응자	자부담	
합 계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량을, “단위”는 사업내용에 적합한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나.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자별로 지원계획을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다. 농가수는 사업대상자수를 표기하고 ()에 전체 수혜농가수를 표기

(별지 제2호서식)

심사제외

()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사업지역 :

2. 사업자 :

3. 사업진도(총괄)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별	사업량			사업진도		계		음자		자담	
	계획	실적	비율	주요추진내역	공정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계			%		%						

주) 가. “사업지역”은 번지수까지 기재

나.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다. “세부사업별”란은 개별사업의 단위사업명을 기재

라. “주요추진내역”란은 부지확보, 건축허가, 시공업체명,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는 계획대비 보고전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을 기재

바.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자별로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4. 금후 사업추진일정

5.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6. 기타 참고사항

총공통-9

()사업 정산실적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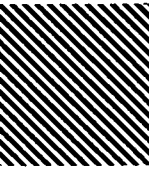
(단위 : 천원)

품목별 또는 단지명	대표 자 ()외 농가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획				집행실적(정산)								대비	
		세부 사업 명	계 획 (A)	실적 (B)	대비 (B/ A)	계	국고 보조 (C)	용 자	지방 비보 조	자부 담	계	국고 보조 (D)	용 자	지방 비보 조	자부 담	(D/ C)	차 년 이 월 액	불 용 또 는 집 행 액	착 공 일
합계				%															

- 주) 가.“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 나.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유리온실,
파이프비닐온실, 예냉시설 등을 기재
- 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라.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 법인,
작목반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세부정산실적을 별지로 적성, 첨부

여 백

Ⅱ. 생 산 및 유 통 개 선



여 백

I.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과장 홍순기, 농업사무관 이재욱), 과수화훼과(과장 박병원, 농업사무관 임정빈)입니다.

1. 목 적

- 시설원예 경영체에 현대화된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단위수량 제고 및 품질개선 등 생산성 향상 도모
- 기존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증대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시설의 집단지·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시설원예 전문생산단지 및 수출단지 육성지원으로 대외경쟁력 강화
- 생산 및 유통시설 종합지원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유통시설 활용도 제고 및 농가의 시장교섭력 강화
- 시설원예농가의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기위주 전문교육 시설 확충
-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고정투자가 많은 유리온실 설치 지원은 수출목적 및 공정육묘장에 한하여 지원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94-'96	'97	'98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 업 량		개소 175	55	30	15	50	175
사 업 비	계	609,938	115,278	129,711	67,860	50,000	175,000
	보 조	152,486	23,056	25,942	12,072	-	-
	용 자	182,982	46,111	51,885	30,144	40,000	140,000
	지방비	152,486	23,056	25,942	12,072	-	-
	자부담	121,984	23,055	25,942	13,572	10,000	35,000

- 1]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배 경

- 농촌노동력 부족, 농산물 시장개방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자본과 첨단기술의 집약을 통해 노동력을 대폭 절감하고 전천후 상시농업 및 고부가가치 농업기반을 마련코자 '94부터 채소류 주산지(화훼는 전국) 중심으로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 지원

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지역 >

- 농림부장관이 채소류 주산단지로서 고시한 지역(시설채소), 화훼(전국)
-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
- 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 시설현대화 사업지역으로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역

- 시설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
 -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법, 산림법, 상수원관리법 또는 군사시설보호법등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법적제한사항에 대해 해당기관과 사전협의 완료(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지내력이 양호하고 기반정비, 용수확보, 진입도로 조성, 전기인입 등이 용이한 지역
-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사업장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에 있는 사업장은 선정시 순위를 받이나 산지보다 후순위 부여

< 지원대상자 >

- 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회원농협 또는 전문농협, 선진작목반, 농어촌진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전업농, 전문가족농
- 대상자별 자격요건
 - 5가구 이상으로 구성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법인”이라 함;)
 - 구성원의 2/3이상 3년이상 시설원예 재배경력이 있거나 학교, 연구소, 행정 및 지도기관 등에서 3년이상 시설원예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류 첨부)이 있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운영실적이 1년이상된 법인으로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법인
 -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현물(농지, 시설등)로 출자하고,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회원농협 또는 전문농협(이하 “농협”이라 함)으로서 사업 완료후 직영하거나 농업인에게 임대 또는 분양코자 하는 단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농협이 적격지원 대상자로 추천하는 “선진작목반”
 - 구성원이 10인 이상이고 그 2/3이상 3년이상 시설원예 재배경력이 있는 작목반

- 총 기금조성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생산물의 공동출하실적이 연간 1억원이상인 작목반
- 최근 3년간 공동생산·공동출하등의 조직활동을 계속해온 작목반
- 농산물 관측조사등 정부사업에 적극 참여해온 작목반
- 시설관리, 재배 및 경영기술, 수출농업지원 등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농어촌진흥공사등 정부투자기관
- 시설원예분야 전업농 또는 지원을 통해 전업농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
- 전문가족농

개소당 지원단가 : 1,000백만원/개소

사업기간 : '99.1.1 - '99.12.31 (1년간)

- 사업비 지원 : '98년 계속사업 50%/ '99년 사업비 전액

지원조건

○ 재원별 지원기준

- '98년 계속사업 보조20%, 용자40, 지방20, 자담20
- '99년사업보조10%, 용자60, 지방비10, 자부담20

○ 용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시설별 용자기간

- 철골(유리, 경질판)온실, 철골온실내의 양액재배시설, 공정육묘장, 예냉 시설, 집하장, 조직배양실, 저온저장고(화훼용에 한함), 선별처리장, 저온 처리실 : 연리 6.5%,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파이프비닐온실, 파이프비닐온실내의 양액재배시설, 관정, 선별기, 절화 선별결속기, 저온수송차량, 반출도로 개설 및 보수, 비상발전시설, 변전 시설, 전기인입, 기타시설 : 연리6.5%,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소유권 구분

- 농가 개별소유가 가능한 시설장비 : 온실 및 그 부대장비, 소형관정 등 농가가 실제로 개별 사용하고 있는 시설장비
- 조직 공동소유 시설장비 : 공정육묘장, 산지유통시설(예냉시설, 집하장, 저온저장고), 기타 대형 암반관정, 비상발전시설, 변전시설등 공동이용시 활용도가 높은 시설장비

□ 세부사업내역

세 부 사 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합 계	평	천원	백만원	
<생산시설>			<3,488>	
○ 유리온실	1,500	500	7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시설(450천원/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철골, 알미늄피복, 천·측창개폐장치, 방충망, 강제환기장치, 관비장치, 난방장치, 복합환경제어장치 ○ 농가선택 사양(50천원/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₂발생기, 무인방제기, 토양소독기, 관리기, 운반차
○ 철골경질온실	1,500	310	4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시설(272천원/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철골, 알미늄피복, 천측창개폐장치, 강제환기장치, 온풍난방기, 집중컨트롤장치 ○ 농가선택 사양(38천원/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₂발생기, 무인방제기, 토양소독기, 관리기, 운반차
○ 파이프비닐온실	6,000	123	7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시설(90천원/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조, 피복, 지붕1.2중 및 측면개폐장치, 수평커튼장치, 집중컨트롤장치, 온풍난방기 ○ 농가선택 사양(23천원/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₂발생기, 무인방제기, 토양소독기, 관리기, 운반차 ○ 에너지 절감시설(10.4천원/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중가온시설 : 5.5천원/평 - 북측면반사필름 : 0.2천원/평 - 수막시설 : 4.7천원/평

세 부 사 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 공정육묘장	평	천원	백만원	
	1,500	667	1,000	○ 육묘장(450천원/평) - 유리온실 1,500평 ○ 부대기계장치(217천원/평) - 상토혼합기, 자동파종시스템, 운반대차, 발아실, 지게차, 자동설비관수장치, 복합환경제어장치, 벤치시설, 베드 자동이동라인
○ 양액재배시설★ (자루배지양액시설)	1,500 (1,500)	50 (23)	775 (345)	○ 고품배지경재배, 양액자동조절시스템
○ 조직배양실	10	2,500	25	○ 블록조 또는 조립식건물, 항온·항습 설비 배양시설
○ 암반관정	1공	37,000	37	○ 1일채수량 200m ³ 이상
○ 소형관정	5공	700	3.5	○ 1일채수량 50m ³ 이상
○ 비상발전기△	1대	700	3.5	○ 철골온실1ha, 파이프온실2ha이상 집단화
○ 전기인입△	km	44,000	44	○ "
○ 변전시설△	1셋	30,000	30	○ "
○ 반출도로개설 △ 및 보수	km	90,000	90	○ "
○ 벤치시설★	1,500평	70	105	○ 프레임 및 익스펜디드공장제작후 용융도금하여 설치
○ 보광시설*	1,500평	25	37.5	○ 전조재배시설
○ 심야전기이용*	1,000평	10	10	○ 축열식 전기보일러, 순환펌프, 배관파이프, 온도감지
○ 수막시설*	1,500평	4.7	7	○ 파이프온실610평의 경우(관정비용 미포함)
○ 지중난방시설*	1,500평	5.5	8.3	○ 파이프온실610평 시설 적용
○ 보온커튼시설*	1,500평	18	27	○ 파이프온실 부직포, 트로피칼 기준
○ 자동개폐시설*	1,500평	5.7	8.5	○ 파이프온실 610평 시설적용
○ 퇴비 및 석회 겸용살포기	1대	20/2.2	20/2.2	○ 트랙터부착형, 적용트랙터22-36/39-50PS, 살포능력30~40분/10a

세 부 사 업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지 원 기 준
<유통시설>	평	천원	백만원	<600>
○ 예냉시설	50평	3,500	175	○ 중앙 흡입식 차입 예냉시설
○ 저온저장고 (화훼용)	50평	4,500 (2,500)	225 (125)	○ 구근류등의 저장고 (기타 화훼류의 저장고)
○ 저온처리실	20평	1,100	22	○ 블록조 또는 조립식건물, 냉동, 단열등
○ 집 하 장	100평	1,167	117	○ 콘크리트 블록조 건물
○ 선별처리장	50평	500	25	○ 유리온실이상 건물면적의 1/10이상 저온저장고 건설 가능
○ 선 별 기	1대	17,000	17	○ 전자식 또는 기계식
○ 절화선별결속기	2대	5,000	10	○ 선별, 절단, 결속장치 등
○ 저온수송차량	1대	15,000	15	○ 2.5톤이상 보냉 또는 냉장차

주] *표시는 시설개보수 지원사업, △표시는 인센티브 사업, ★표시는 신규
또는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임.

- 사업계획서는 사업대상자가 상기 표준사업비 내역을 참고하여 필요한 시설유형과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작성
- 공정육묘장은 시·도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묘 수급상황, 기존육묘장과의 경합유무등 지역실정을 종합 감안하여 지원개소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연작피해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고품배지경재배, 양액자동조절시스템등 양액재배 시설 가능
 - 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자루(BAG)배지양액재배시설도 포함
- 하우스병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온실인근에 일하면서 설 수 있는 적정면적의 관리실(작업장) 설치 권장
- 집단화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기존시설을 포함 철골온실 3,000평 또는 파이프비닐온실 6,000평이상 집단화된 단지의 경우 비상발전시설, 반출도로 개보수 지원 가능
- 토지임대의 경우에는 장기임대 조건으로 허용
 - 임대기간은 사업별로 융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철골온실 20년, 파이프 비닐온실은 10년이며, 임대시 공증계약등 필요조치 강구
- 사업신청서 제출시 집단화 정도를 알수 있도록 지적도에 법인별 사업 지역을 정확히 표기하여 제출
- 사업비로 토지구입은 할 수 없음.
- 기반정비(관정개발, 농로개설, 발경지정리등)가 필요한 지역은 발기반 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등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 대상지역은 시·군 발기반정비 담당부서(건설과)에 사업신청
 - 시·군 건설과는 산업과와 협의, 발기반정비 예정지 보고시 우선시행 지구로 선정
 - 예정지 조사보고시 수평정지계획 포함하여 신청
 - 해당 시·군은 시·도 및 농림부에 계통 보고
- 시설이 분산된 경우에는 「소형관정」을 집단화된 것은 「암반관정」을 개발
 - 암반(공동)관정의 사업비는 개발심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비는 수혜자가 공동부담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하여 시행
- 기존 시설개보수 사업 추진
 - 대상사업 : 노동력 및 에너지절감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설 및 장비
 - 종류 : 자동화 개폐장치, 보온커튼시설, 관비장치, 수막시설, 기존 파이프비닐온실의 경질필름교체, 지중난방시설, 보관시설, 심야전기 이용, 벤치시설, 양액재배시설 등의 설치
 - 기존 시설개보수 사업은 사업내용이 다양하고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농어촌진흥공사의 현장조사 보고서에 따라 집행
- 단위사업내용 및 단가
 - 기본시설을 제외한 장비 및 기기는 농가 선택사양으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종 설치 가능
 - 사업비는 당해 기준사업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초과될 경우에는 자담으로 설치해야 함. 또한 설치단가 인하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는 자동화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에 활용가능

[유리온실]

구 분	규 격	기 준	기준사업비
계			480~500천원/평
○ 기본시설 - 기초,철골,알미늄,피복,천·측창개폐,방충망,강제환기장치,관비장치,난방장치,복합환경제어장치	철골유리온실	0.2~0.5ha/호	
○ 장비 및 기기 - 무인방제기 - CO ₂ 발생기 - 토양소독기 - 기화냉각장치 - 운 반 차 -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농가 선택사양 1대/호 1대/300평 1대/호 1대/900평 1대/호 1대/호	

※ 건교부 승인 표준설계도서의 경우는 설계단가 적용

[철골경질판온실]

구 분	규 격	기 준	기준사업비
계			310천원/평
○ 기본시설 - 기초,철골,알미늄,피복,천·측창 개폐장치,강제환기장치,온풍난방기, 집중콘트롤장치	철골유리온실	0.2~0.5ha/호	
○ 장비 및 기기 - CO ₂ 발생기 - 무인방제기 - 토양소독기(배지경제배용) -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 운 반 차		농가 선택사양 1대/300평 1대/호 " " "	

[파이프비닐온실]

구 분	규 격	기 준	기준사업비
계			123천원/평
○ 기본시설 - 골조,피복,지붕1·2중 및 측면 개폐장치, 수평커텐장치, 집중 콘트롤장치, 온풍난방기	파이프비닐온실	0.2~1.0ha/호	
○ 장비 및 기기 - CO ₂ 발생기 - 무인방제기 - 토양소독기(배지경제배용) -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 운 반 차		농가 선택사양 1대/300평 1대/호 " " "	

※ 새로운 경량화, 고효율 철골경질판온실, 파이프비닐온실이 개발될 경우는 농림부, 농진청, 농진공등 유관기관 합동 검토후 타당성 인정시 별도단가를 적용하여 보급

[공정육묘장]

구 분	규 격	기 준	기준사업비
계			667천원/평 10억원/1,500평
○ 공정육묘장 ○ 상토혼합기 ○ 자동파종시스템 - 상토공급기 - 상토충전기 - 진압 및 파종기 - 복토기 - 관수기 - 콤프레샤 ○ 운반대차 ○ 밭 아 실 ○ 자동시비, 관수장치 ○ 환경제어장치 ○ 벤치시설 ○ 베드자동이동라인	철골유리온실 25단×2열 온습도, 광조절가능12평 자주식살수장치 복합환경조절기능(전기식) 이동식	1,500평 1대 1set 40대 1실 1set 1set 920평 1대	

[산지유통시설]

구 분	규 격	기 준	단 가	기준사업비
○ 저온처리실	-	90평/동	1,100천원	99,000천원
○ 예냉시설	차압식	50평/동	3,500천원	175,000
○ 집 하 장	철근콘크리트	150평/동	설계단가	
○ 선 별 기	전자식 또는 기계식	2대	17,000	34,000
○ 저온수송차량	2.5톤이상	2대	시가	
○ 선별처리장	-	200평	400천원	80,000
○ 저온저장고(절화)	-	200	2,500천원	500,000
○ 저온저장고(구근)	-	200	4,500천원	900,000
○ 절화선별결속기	-	6대	5,000천원	30,000

[관 정]

구 분	시 설 규 모		기 준	단 가	기준사업비
	구 경	심 도			
○ 암반관정	200mm	50~150m내외	200m ³ /1일이상	3ha이상	37,000천원/공
○ 소형관정	40	18	50	0.5ha이상	700

※ 해안·산간지의 암반관정 채수량은 10m³/1일 이상을 기준으로 함.

[조직배양실]

구 분	규 격	기 준	기준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조 또는 조립식 건물 ○ 항온항습 설비 ○ 배양시설 등 		50평	125,000천원

[집단화단지 인센티브사업]

구 분	단 위	기 준	단 가	기준사업비	비 고
			천원	천원	
○ 비상발전시설	set	1/단지별	25,000	25,000	집단화된 단지의 인센티브 지원에 한함.
○ 변전시설	set	1/단지별	30,000	30,000	
○ 반출도로개설 및 보수	km	2/단지별	90,000	180,000	
○ 전기인입	km	2/단지별	44,000	88,000	

주) 반출도로는 설계비만 포함되고, 전기인입은 한국전력(주)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한 단가임.

[기타시설]

구 분	단 위	기 준	단 가	기준사업비	비 고
			천원	천원	
○ 양액재배시설	평	1,500평/호	50	75,000	
○ 자루배지양액시설	평	1,500	23	34,500	

□ 수출단지 지정

< 선정기준 >

- 대상품목 : 내수기반이 있고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있어 수출가능성이 큰 품목(오이, 토마토, 백합, 장미 등)
- 대상지역 : 다음 조건을 1개이상 충족하는 지역
 - 집단화, 규모화가 이루어져 일정 수출물량 확보가 가능한 지역
 -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수준이 높고 전문화가 되어 있어 수출규격품 생산이 가능한 지역
 - 생산자조직의 활동이 활발하며, 시설현대화에 대한 의욕이 높고, 단지 규모 확대 여건이 조성된 지역

< 선정절차 >

- 시·도지사는 수출단지 신청지역을 실사한 후 수출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는 시설원에 생산·유통지원사업의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연차별 수출단지 조성계획을 감안, 대상지역 확정

<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 등 >

- 수출단지 조성지원자금을 받은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세부지원방법 및 단지관리요령을 작성하여 지원·관리
 - 민간수출업체와 수출물량 공급계약체결 지원
 - 전담기술지도사 배치 등
- 사업추진은 시설원에 생산·유통지원사업에 준하여 시행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도지사(시장·군수)가 결정하여 시행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개소/백만원)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액 (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45	67,860.11	42,216.00	12,072.00	30,144.00	12,072.00	13,572.11
-'98계속	30	52,860.11	31,716.00	10,572.00	21,144.00	10,572.00	10,572.11
-'99신규	15	15,000.00	10,500.00	1,500.00	9,000.00	1,500.00	3,000.00
부 산	1.7	2,250.30	1,450.18	350.06	1,100.12	350.06	450.06
-'98계속	0.7	1,250.30	750.18	250.06	500.12	250.06	250.06
-'99신규	1.0	1,000.00	700.00	100.00	600.00	100.00	200.00
광 주	1.1	1,845.25	1,107.15	369.05	738.10	369.05	369.05
-'98계속	1.1	1,845.25	1,107.15	369.05	738.10	369.05	369.05
울 산	0.5	500.00	350.00	50.00	300.00	50.00	100.00
-'99신규	0.5	500.00	350.00	50.00	300.00	50.00	100.00
경 기	6.5	10,309.25	6,385.55	1,861.85	4,523.70	1,861.85	2,061.85
-'98계속	4.5	8,309.25	4,985.55	1,661.85	3,323.70	1,661.85	1,661.85
-'99신규	2.0	2,000.00	1,400.00	200.00	1,200.00	200.00	400.00
강 원	4.0	7,005.00	4,253.00	1,351.00	2,902.00	1,351.00	1,401.00
-'98계속	3.5	6,505.00	3,903.00	1,301.00	2,602.00	1,301.00	1,301.00
-'99신규	0.5	500.00	350.00	50.00	300.00	50.00	100.00
기 타	0.5	500.00	350.00	50.00	300.00	50.00	100.00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액 (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충 남	4.0	5,016.36	3,259.75	753.25	2,506.50	753.25	1,003.36
-'98계속	1.5	2,516.36	1,509.75	503.25	1,006.50	503.25	503.36
-'99신규	2.5	2,500.00	1,750.00	250.00	1,500.00	250.00	500.00
전 북	3.2	4,317.20	2,790.32	663.44	2,126.88	663.44	863.44
-'98계속	1.2	2,317.20	1,390.32	463.44	926.88	463.44	463.44
-'99신규	2.0	2,000.00	1,400	200.00	1,200.00	200.00	400.00
전 남	12.5	19,063.00	11,737.8	3,512.60	8,225.20	3,512.60	3,812.60
-'98계속	9.5	16,063.00	9,637.8	3,212.60	6,425.20	3,212.60	3,212.60
-'99신규	3.0	3,000.00	2,100	300.00	1,800.00	300.00	600.00
경 북	5.0	8,217.00	5,030.20	1,543.40	3,486.80	1,543.40	1,643.40
-'98계속	4.0	7,217.00	4,330.20	1,443.40	2,886.80	1,443.40	1,443.40
-'99신규	1.0	1,000.00	700.00	100.00	600.00	100.00	200.00
경 남	1.5	1,838.75	1,203.25	267.75	935.50	267.75	367.75
-'98계속	0.5	838.75	503.25	167.75	335.50	167.75	167.75
-'99신규	1.0	1,000.00	700.00	100.00	600.00	100.00	200.00
제 주	2.0	2,677.50	1,706.50	435.50	1,271.00	435.50	535.50
-'98계속	1.0	1,677.50	1,006.50	335.50	671.00	335.50	335.50
-'99신규	1.0	1,000.00	700.00	100.00	600.00	100.00	200.00
중앙유보	2.5	4,320.50	2,592.3	864.10	1,728.20	864.10	864.10
-'98계속	2.5	4,320.50	2,592.3	864.10	1,728.20	864.10	864.10

※ 융자조건 : 연리6.5%, 3년거치 7~17년 상환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 담당부서 :

- 농림부 : 채소특작과 02)504-9423/4, 과수화훼과 02)504-9425/6
- 시·도 : 농정(산)과, 농산물유통과, 유통특작과, 특작과
- 시·군·자치구 : 농정(산업)과, 농촌지도소

다. 자금지원대상자

(1) 선정기준

적격대상지역 및 대상자 중에서 아래 우선순위를 계량화하여 현지 실사후 선정

(2) 우선순위

- 집단화되어 있거나 받기반정비가 완료된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조직
- 자본금 규모가 크며 재배기술이 높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조직
- 재배작목을 전문화하여 집단화된 수출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조직
- 전문교육을 이수한 회원이 많이 있는 조직
- 규격상품을 공영 도매시장 등으로 출하하는 우수 조직
- 대농업인 및 시설원에 관련자에게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기관, 조직

(3) 선정절차

○ 사업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직이 자율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와 대출신청자료[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군·구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 대상지역 및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가린후 농림사업시행 지침서에 따라 사업신청서 정밀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 확정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 공개심의 조정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자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 자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유리온실은 공정육묘장 및 수출목적 용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 표준단위사업이외의 사업도 가능하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객관적인 단가와 사업 필요성 제시
- 개소당 세부사업내용은 생산자조직이 자율로 선택가능하나, 기존시설 활용도를 감안하여 생산·유통시설을 균형있게 설치
 - 농가당 온실면적 : 600~1,500평(단, 비닐온실은 3,000평까지)
 - 기타 세부사업 : 지역실정에 따라 선택조정 가능
- 사업비는 지역실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나 시·도별 자체 사업비는 개소단위로 확정되어야 함.
 - 경영체당 0.2개소(2억원)~3개소(30억원)까지(시설개보수사업은 시군당 0.2개소이상) 지원가능 단, 10억원을 초과시는 중앙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 사업방법 : 시설채소, 화훼품목 구분없이 통합 지원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은 입지여건 및 경영능력을 감안, 적정하게 수립시행하고 부득이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착수전까지 변경가능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시행 생산자조직이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변경승인시에는 지체없이 변경사유 첨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온실부대장치 및 기계구입단가는 선택기준에 따라 변경가능

※ 표준단위 사업내용 범위내 변경은 시·도지사(시장·군수) 승인사항임.

단, 기타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시·도지사의 검토 승인을 받아 사업변경 시행하고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

- 사업지역 변경 승인조치
 - 읍·면간 : 시장·군수
 - 시·군간 : 시·도지사
 - 시·도간 : 농림부장관

(3)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부 : 예산확보 및 사업자금 배정
- 시·도 : 사업대상자 교부금 결정
- 시·군 : 기성고에 따라 자금집행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전문농협)
 - 용자절차
 - 용자대상자 및 공사기성고 통보 : 시장·군수가 농협장에게 통보(별지7호서식)
 - 용자조치 : 농협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용자조치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
- 담보실행 및 기타사항 :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따름

□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 시장·군수는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시설원예 생산·유통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구성 : 관계공무원(지도소 포함), 단지회장, 농어촌진흥공사, 농협, 학계, 시공업체,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능 : 사업계획서 심의, 분기별 사업추진평가, 사업계획변경(사업대상자 포함) 심사,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의 심사,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심의

□ 기관별 업무분담 내용

- 농림부 : 지침시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 사업대상자 및 시공업자 교육, 사업종합조정 및 총괄지도
- 농촌진흥청 : 표준설계도 개발, 온실설치방법, 작물재배 및 규격상품 생산 기술지도,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성과(경영)분석
- 시·도 : 사업지구 타당성 검토 및 계획조정(변경),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 도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추진 감독 및 진도보고
 - 시·군 농촌지도소 : 전담 지도사 배치, 작형, 작목선택지도,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성 검토서 제출
- 시·군 : - 합동실무검토반 구성 운영, 사업신청서 접수, 심사, 후보지구 선정보고(사업성 검토의뢰 및 신용조사 의뢰), 사업대상자 확정, 세부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추진 지도·감독 및 상황보고, 기성 및 준공업무, 사업비 집행·정산, 경영성과 분석등 사후관리
 - 철골(유리·경질)온실, 파이프온실, 공정육묘장 사업등 지명경쟁 입찰 관련 행정지원
- 국립농산물검사소 : 규격출하지도 및 평가, 자율검사원 교육, 채소류 안전성 검사 및 지도, 품질인증제 실시 등
- 농협중앙회 : 용자실행 및 후취담보, 계통출하 및 판매지원, 상표개발지원, 출하조직(품목별협의회)육성, 시설원에 전산화 및 관측정보제공
 - 지역농협 : 신용조사서 작성
- 농어촌진흥공사 : - 표준설계도 개발,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기성검사 및 준공업무 지원, 시설관리 대농민 기술교육 지도, 용수 개발, 시설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추진
 - 시설개보수사업 현지조사 및 설계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수출시장 개척, 수출업무 지원, 수출관련교육 및 자금지원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예냉시설의 설계도서 검토 및 기술감리
- (사)대한온실산업협회 : 시공기술 개발·보급, 온실기자재 가격조사, 시공업체 (회원사) 지도·감독, 온실기자재 공동구매·보급, 시공업체의 시공능력 조사, 온실 시공능력평가서 발급, 시설자재 규격화·국산화 이행, 부실시공 및 불공정 거래사례(업체) 고발센타 설치 운영, A/S센타 설치운영
-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 수립, 시설채소관련 교육이수, 사업시행, 경영장부 및 경영일지 작성[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7,8호서식] 규격품 및 안전농산물 생산출하 등

□ 설계, 시공업체 선정, 시공 및 공사감리

(1) 설계

(가) 시설별 설계방법

- 철골, 유리, 경질판온실(신규 시설에 한함)

- 실시설계도서 : 농림부제정 “온실구조설계기준”(’95.4)을 기준으로 설계 기관이 현장에 맞게 실시설계도서(설계도, 내역서, 시방서)를 작성 또는 건교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설계도서

※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서 및 공사비명세서에 사업자 자부담 내용을 별도로 명기

- 설계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
- 설 계 비 :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건설부 공고 제1993-277호)의 75% 적용 단, 파이프비닐온실은 철골조온실 요율의 60% 적용
- 설계계약 : 시장·군수 입회하에 사업자 대표와 설계기관이 계약(각계약 불인정)
- 설계비 지급 :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 자부담분으로 설계도서가 납품되는 즉시 설계기관에 지급

- 파이프비닐온실(신규시설에 한함)

- 기준설계도 : 농진청 「농가보급형 자동화온실 표준설계도」
- 시공도서 : 기준설계도를 기초로 시공업체가 현장에 맞게 시공도서(시공도면, 시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음.
- 농진청 「농가보급형 자동화온실 표준설계도」와 다른형의 온실 : 농림부 제정 “온실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시공도서(시공도면, 시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음.

- 예냉시설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하 한식연)이 개발한 「예냉시설 표준 설계도」를 기준하여 한식연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역여건에 맞도록 작성
- 집 하 장 : 「가변형 농산물간이집하장 표준설계도」 (건교부 공고 제 1996-209호) 기준
- 양액재배시설 :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가 개발 보급한 「양액재배시설 표준 설계도」를 기준하여 설치, 단 작물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 관정 : 지하수법 및 국무총리훈령 제304호('94.11.12) 「관정의 개발 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 및 유자격 민간 관정개발업체에 의뢰하여 기초공사후 시추하여야 함.
 - 관정개발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작물재배에 적합한 양질의 용수 확보
- 비상발전시설 및 변전시설, 전기인입 : 전기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유자격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
- 조직배양실, 저온처리실, 기타 생산 및 유통시설 : 사업대상차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업체와 협의, 설계 시공

(나) 설계 또는 설계변경시 고려사항

- 기준단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함.
 - 낙뢰등 돌발재해 대비 장치설치 권장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
- ※ 농업기계 품질보증제도 대상 부대장치 및 기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 농업기계임.

(2) 시공업체 선정

(가) 시공업체 자격기준

- 철골(유리, 경질판)온실, 파이프비닐온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온실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
 - (사)대한온실산업협회가 운영하는 「고객사후봉사단체협약」에 가입한 자
 - 온실 시공능력 평가 공시 업체
- 예냉시설
 - 공기조화 및 냉동관련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유자 보유업체 또는 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동등한 설치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업체
- 관정 :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유자격 민간관정개발업체
- 기타시설 : 설치할 시설의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

(나) 시공업체 선정 방법

- 철골(유리, 경질판)온실, 파이프비닐온실
 - 시공업체는 사업지역별로 선정 계약
 - 지명경쟁입찰
 - 시공능력 확인 : 시장·군수는 철골온실의 시공업체 선정업무와 철골온실 이외의 시설의 계약승인시 시공업체로부터 온실협회 회장이 발행한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서」 [별지 제5호 서식]을 제공받아 시공능력을 정밀 검토하여 사업수행
- ※ 시장·군수가 당해 업체의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시공능력을 초과한 과다수주, 부실 시공한 경력이 있는 등 부적격 업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업체 교체
- 기타시설 :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가 선정

(다) 지명경쟁입찰 실시방법

- 실시주관 : 사업대상자(시·군, 농협 및 농어촌진흥공사, (사)대한온실산업협회 행정업무 지원)
- 입찰대상 : 파이프비닐온실, 철골(유리, PC, PET등) 온실의 기본시설 단, 파이프비닐온실은 일정규모(경영체당1ha이상)이상 적용
- 실시지역 : 전국
- 입찰참여 시공업체 : 시공능력공시업체중에서 3-5개업체를 영농조합법인등 사업조직이 선택하고 이중 2개업체 이상이 참석하였을 때 유효

- 낙찰예정가 결정
 - 설계금액의 $\pm 2\%$ 범위이내의 10개의 복수예정가를 결정
 - 입찰현장에서 복수예정가를 추첨(3매)하여 낙찰예정가를 결정
 - 낙찰자 결정(예정가의 90% 직사업체)
 - 낙찰예정가격의 100분의 90이상으로 입찰한 직사업체로 결정하며 동가 낙찰시에는 추첨으로 결정
-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라) 시공계약

- 시공업체는 농림부의 시설기자재 하자처리제도 지침에 의거 온실건설공사 표준계약서와 표준계약 조건에 따라 시공계약을 체결후 1개월이내에 표준계약서 사본 [별지 제6호]을 (사)대한온실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온실시공능력 평가서 발급 : (사)대한온실산업협회장은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가 당해 업체를 정밀검증 할 수 있도록 객관화된 정보제공[별지 제5호]
- 시장·군수의 입회하에 계약하되, 온실은 식물환경조절을 위한 일관된 시스템이므로 세부사업 공종별로 분할발주를 금하고 일괄발주하여야 함.
- 부대장치 및 기기는 농업기계표준계약서에 따라 구입계약 체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농업기계는 계약이행 및 하자이행 보증증권 징구 면제
- 하자보수 보증금 및 하자보증기간 명시등 시설물의 A/S관련 사항을 명확히 할 것.

(마) 사업착공

- 사업대상자 확정후 조속히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사업을 착공하되 사업대상자가 6개월내에 사업착공을 못할 경우 시장·군수는 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반납 조치

(3) 시 공

- 시공업체는 건설공사에 실제 참여한 십장, 기능공, 장비임대업자등의 명단을 공사현장에 게시
-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A/S망」 구축을 위해 철골, 유리, 알루미늄바 등의 시설자재 공동구매 장려
 - 시장·군수는 자재공동구매를 위하여 온실협회의 요청이 있고, 그 내용상 하자가 없을 경우 공사 기성고 지급시에는 해당 시설기자재 대금을 온실협회에 직접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 시설기자재는 규격기준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NT, KT, EM마크) 제품 우선 사용토록 하되,
 - 지원대상 농업기계중 농업기계 “품질보증 대상기종”인 경우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 농업기계만 구입 가능
- 공사현장 기술자중 1인 이상은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온실협회의 시공 전문기술교육을 필한 자로 함.

(4) 공사감리

- 시공업체는 시공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확인을 받음
 - 표준설계도서(건교부 승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체는 시공도서를 작성하여 농어촌진흥공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감리대상 : · 파이프비닐온실,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공정육묘장, 예냉시설, 저온저장고(신규시설에 한함)
· 조직배양실, 집하장, 저온처리실, 관정(암반관정, 중형관정)
- 감리기관 : · 온실[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 저온저장고(시설설계업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 예냉시설(건물 : 설계업체/ 기계설비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기타시설 : 시설설계업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
- 감리계약 : 시장, 군수입회하에 사업시행 생산자조직 대표와 감리기관(단체)간에 계약체결
- 감리수행 : 농림부의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거 감리
 - 채소 51240-61('96. 2. 1)참고
- 감리비 :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건교부 공고 제19930-277호)의 75% 적용 단, 파이프비닐온실은 철골조온실 요율의 60%적용
- 감리비 지급 :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사업대상자의 협조를 얻어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지급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사장등 감리감독 기관장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당해업체에게 공사중지 및 하자보수, 재시공명령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향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 담당

마.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1호 내지 6호에 관한 사무를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 모든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시·군등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이상인 경우는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 단, 이외의 경우는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된 보조금은 교부목적대로, 즉시 생산자조직 대표에게 지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진흥공사 등의 감리자가 확인한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생산자대표가 시공업체에게 지급할 경우 입회하고, 농림부장관이 제정한 표준계약조건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부당사용한 경우, 부당사용한 금액의 회수는 물론,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 1~5년간 사업자금 지원 중단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록을 마친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3항 내지 8항 참조 (농림부 훈령 제948호 : '98. 7. 23)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경영장부 기록비치, 사업진행상황 및 경영성과 분석평가, 재배기술, 시설운영관리 및 경영교육 참가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 감독의 책임을 짐.
 - 농림사업실시규정 별표2의 농림사업 안내문 표지 설치
 - 저온저장고, 선별처리장, 집하장등 공동시설의 토지와 건물, 차량 등을 조직명의로 공동등기하여 사유화 방지
 - 집하장은 지원목적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수기에는 주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동작업, 공동보관, 농산물저장 등 편익시설로 활용토록 함.
 - 연2회이상 시설물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시공업체 또는 온실협회에 통보
 - 사업자의 경영지도 및 경영장부 기록상태 수시 확인
 - 시설물이 지원목적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계획 수립 시행
- 시·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조사, 감독
- 시·도지사는 사업지역에 전담지도사를 배치, 작형·작목선택 지도, 경영실태 파악 및 경영지도
- 시설채소·화훼간 작목전환은 '99.1.1부터 경과규정으로 '98이전 설치 사업을 포함 '99사업부터 자유화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사업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타 필요사항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	· 철골(유리,경질판) 온실 및 그 부속물 · 공정육묘장	완공일로부터 20년	· 사후관리기간중 법인의 파산해산 등 부득이한 사 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는 시· 도지사의 승인 을 받아 실시	- 관리대장을 비치 하고 재산의 증감액과 현재액 및 사후관리 사항등을 기록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제1항제9호 ('98.8.11)
	· 예냉시설, 조 직 배양실, 저온저 장고, 집하장, 선 별처리장, 저온 처리실	완공일로부터 10년	· 보조금의 예 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도 에 교부된 보조금 에 의한 농업용 시설의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의 승인	
	· 파이프비닐온실 및 그 부속물 · 비상발전시설 및 변전시설 · 선별기 · 저온수송차량 · 농기계등	완공일로부터 10년 구입일로부터 4년		

나. 보고,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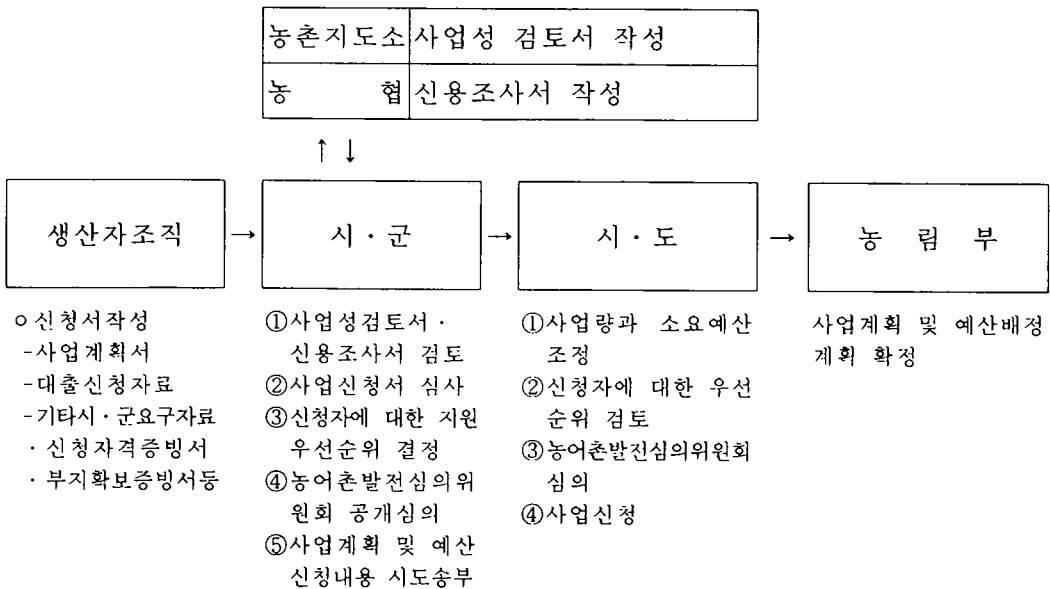
-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2호서식]
-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사업 정산보고[별지제3호서식] : 사업 익년도 3월20일까지
-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사업 대상지 종합검토[별지제4호서식] : 익월15일 이전
-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조직은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10일까지 시·군에 보고(보고하지 않은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온실시공능력 평가서[별지제6호서식]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

나. 신청자격 : 본 사업시행지침 “5.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라.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우선순위, 선정절차 : 5. <추진체계> 다.항 내용과 동일

마. 발기반정비사업과 연계 실시

- 본사업 대상지역이 「발기반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은 시·군 발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건설과등)에 신청하여 사업에 우선 반영되도록 조치
- 「발기반정비사업」을 신청한 대상지역은 본사업 추진기관인 시·군→시·도→중앙에 계통 보고하여 발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

(별지 제1호서식)

심사제외

()사업 지원계획 보고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					농가수 (호)
				계	보조	응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량을, "단위"는 사업내용에 적합한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 나.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 법인, 작목반등)로 지원계획을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 다. 농가수는 사업대상자수를 표기하고 ()에 전체 수혜농가수를 표기

(별지 제2호서식)

심사제외

()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사업지역 또는 시·군수 :
2. 사업자 : ○○○○법인(작목반), 대표 □□□(외 △개 법인 또는 농가)
3. 사업진도(총괄)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별	사업량			사업진도											
	계 획	실 적	비 율	주요추진내역	공정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담	
						계 획	집 행	계 획	집 행	계 획	집 행	계 획	집 행	계 획	집 행
합계			%		%										

- 주) 가. “사업지역”은 번지수까지 기재
 나.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다. “세부사업별”란은 개별사업의 단위사업명을 기재
 라. “주요추진내역”란은 부지확보, 건축허가, 시공업체명,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는 계획대비 보고전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을 기재
 바.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 법인,
 작목반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4. 금후 사업추진일정
5.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6. 기타 참고사항

총공통-9

()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품목별 또는 단지명	대표자 ()외 농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세부 사업명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획			집행실적(정산)				대비 (D/C)	차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액	착공 일	준공 일	
						계	국고 보조 (C)	읍 자	지방 비보 조	자부 담	계	국고 보조 (D)						읍 자
합계				%														

-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 나.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유리온실, 암반관정, 저온저장고 등을 기재
- 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라.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 법인, 작목반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세부정산실적을 별지로 적성, 첨부

(별지 제4호서식)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사업 대상지 종합검토

(○○시·도)

순위	사업 지역 주소	농 가 수	사 업 계 획				사업대상자	부지확보	자담 및 용자능력 (농협장 확인)	지방비 확보 (시장· 군수 확인)	종합 검토의견
			사업명	사업량	총 사업비	입식 작목					
시도계 시군별		계 ○ 생산시설 - - ○ 유통시설 - -			백만원	○ 조직명 ○ 법인설립일 (예정일) ○ 구성인원 ○ 대표자 (TEL)	○ 계 : -논: -밭: -임야: ○ 법적 검토결과			○ 입지조건 -기후,토질,지 형,교통 ○ 사업대상자 -기술수준, 경험,열의 ○ 집단화여부 (필히기록) ○ 기타 특기사항	

II. 노지채소 생산·유통지원

※ 이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과장 홍순기, 농업서기관 김남수, 농업사무관 김재왕)입니다.

1. 목 적

- 노지채소 주산지의 생산·유통시설을 현대화 함으로써 안정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품질 및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조직과 이에 가입한 농업인 및 전업농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노지채소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시설과 산지유통 시설 및 기계화에 필요한 장비등을 종합지원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고랭지채소, 양념채소, 월동채소 구분을 없애고 수요에 따라 자율지원으로 전환
- 농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출하를 조절할수 있는 생산자조직 및 전업농에 중점지원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
사 업 량		90	39	30	25	30	120
사 업 비	계	127,620	46,965	33,596	12,500	15,000	60,000
	보 조	34,011	10,068	4,260	-	-	-
	읍 자	36,882	17,886	18,807	10,000	12,000	48,000
	지 방 비	31,671	9,618	3,810	-	-	-
자 담	25,056	9,393	6,719	2,500	3,000	12,000	

주)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에 포함되지 않음.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사업대상지역

노지채소 주산지로서 동일시군에 재배면적이 5ha이상인 지역

2) 지원대상자

대상지역 해당품목의 법인경영체 또는 작목반등 생산자조직과 이에 가입한 농업인, 전업농

3) 단위사업 내용 및 지원단가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단 위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
계				715
발 정 지	ha	5	30	150
관 수 시 설	ha	5	10	50
반출도로 개설 및 보수	km	2	90	180
비가림 재배시설	ha	3	74	222
육 묘 시 설	개소	1	18	18
수 송 차 량	대	1	17(30)	17(30)
방 제 기	대	1	5	5
관 리 기	대	1	1.5	1.5
기 타	-	-	-	71.5

주 1) 수송차량의 ()내는 저온수송 차량임

2) 지원단가 : 500백만원(표준사업비의 70%)

3) 기타사업 : 제시되지 아니한 생산·유통시설, 생력기계화 장비등

4) 발정지, 관수시설, 반출도로 개설 및 보수사업은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 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질 경우에는 조직에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실제 가격을 적용함

5) 수송차량등 기계류는 실구입 단가를 적용 지원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1) 사업 지원규모

(단위 : 개소,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노지채소	.25	12,500	12,500	-	10,000	-	2,500

2)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융자 80%, 자담 20
- 지원단가 : 500백만원/개소
- 최소 지원단위는 조직 100백만원이상, 전업농 50백만원 이상으로 함
- 융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7년상환

3) 시도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사업량	예산액(농특회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전 국	25개소	12,500	-	10,000	-	2,500
전 북	4	2,000	-	1,600	-	400
전 남	19	9,500	-	7,600	-	1,900
경 북	1	500	-	400	-	100
경 남	1	500	-	400	-	1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특작과 (02-500-2682~4)
- 시·도 : 도청 농산물유통과(농산과, 농산지원과, 특작과, 유통특작과)
- 시·군, 자치구 : 산업과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 우선순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법인경영체중 아래 요건을 갖춘법인 및 전업농
 - 총 출자액이 1억원이상이고,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농지,시설등)로 출자한 법인
 - 운영실적 1년이상,구성원 2/3이상인 해당분야 영농경력 3년이상인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전업농은 노지채소 재배면적 1ha이상 재배하고 있는 자로서 전업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
- 발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생산.유통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직
- 집단화.규모화가 가능하고 사업추진 의욕 및 단결력이 우수한 조직
- 생산기반조성, 유통.기계화사업을 균형있게 시행하고자 하는 조직
- 공동구입, 공동작업, 공동판매 등의 활동이 우수한 조직
- 생산물의 규격상품 출하실적이 우수한 조직
 -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활동기준”에 따라 상위등급 부터 지원
 - 국립농산물검사소의 품질인증 획득 여부
- 공동이용사업 신청비중이 높은 조직(부지, 시설물, 기자재의 소유를 공동명의로 하는 조건)

2) 선정절차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및 전업농은 농림사업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우선순위와 지역여건을 고려해 우선순위 평가표를 작성
- 농림사업실시규정 총칙에 따라 사업신청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사업량이 결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지역)를 확정

라.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1)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

- 논에 본사업과 관련하여 벼이외 타작물재배 및 시설설치시 차등 지원
 - 대구획 재경지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원하여야 할 경우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에 있는 사업장은 선정시 순위를 받이나 산지보다 후순위 부여
- 품목별 주산지에 필요성이 높은 세부사업 및 사업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융자비율 단가는 변경할 수 없으며, 생산.유통분야 균형 개발을 위해 가급적 특정사업 편중 신청 지양
- 품목 또는 지역특성상 필요할 경우 단위사업내용에 예시되지 않은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객관적인 견적서, 원가계산서등 사업단가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가급적이면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시행을 지양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소기의 사업 성과를 얻을수 있도록 추진

○사업대상자 선정시 생산기반시설은 발기반정비사업과의 연계추진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연계 가능한 사업은 발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

- 관정,도로등 기반조성 분야중 발기반정비 지원대상지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는 발기반정비부서(건설과)에 의뢰

※ 작목별 최소 개발규모(발기반정비사업)

- 채소단지 : 5ha이상
- 복합단지 : 15ha이상
- 밭경지정리 : 15ha이상

2) 세부사업별 시설기준

(가) 기본지침

○시설업체는 관련 면허소지자를 선정하고, 시설물은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는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건설 또는 설치

○시설용 기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지원대상 농업기계중 농업기계 품질보증 대상기종인 경우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 농업기계만 구입 가능

○사업별 시설기준은 다음 항에 의하되, 품목 및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시.도지사(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규격 또는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조단가는 변경할 수 없음.

(나) 세부사업 내용 및 시설기준(규격)

(1) 밭정지사업

- 급경사를 완경사로 변경 또는 구배를 정리하는 사업
- 기타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정지하는 사업

(2) 관수시설

- 소형관정, 점적관수, 스프링쿨러, 집수장, 송수호스, 기타 관수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반출도로 개설 및 보수

- 채소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
- 기존의 채소 반출도로를 확장, 정비 또는 포장하는 사업

(4) 비가림재배시설

-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모델을 참고로 현지실정에 맞게 설치
- 측창개폐장치 포함

(5) 망사육묘장 설치

- 해충의 침입방지용 망사가 부착된 비가림육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개소당 100평 기준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설치

(6) 수송차량

- 채소 및 영농자재 수송에 필요한 일반차량 또는 저온수송 차량
- 수송차량등 기계류는 실구입 단가를 적용

(7)기타 : 생력기계화장비등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업 시행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자부담금 조달 및 투입내역등 사업의 실적(금융거래 자료,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함)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자부담 비율 제외)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 융자금은 배정액과 차입액을 농협관계서류와 대조확인하고 미차입액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함)에 따라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여기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경영장부 기록비치, 사업진행상황 및 경영성과 분석평가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 감독의 책임을 짐.
 -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른 관리 : 공동시설, 차량 등을 조직명의로 공동 등기하여 사유화 방지
 - 연2회이상 시설물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또는 자체보수로 기능보강
 - 사업자의 경영지도 및 경영장부 기록상태 수시 확인
 - 시설물이 지원목적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계획 수립 시행
- 시·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조사, 감독

나. 보고, 기타

-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2호서식]
- 노지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정산보고[별지제3호서식] : 사업 익년도 3월20일까지
- 노지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 검토보고[별지제1호서식] : 사업착수시 지정일내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

나. 신청자격

동일시군내 노지채소 재배면적 5ha이상인 주산지의 법인경영체 또는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과 이에 가입한 농업인, 전업농

다. 신청절차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

라. 구비서류

○자율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서식)

○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서

○사업대상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근거(필요시)등

마. 지원대상자 선정

○'99 대상자 선정방법과 같음.

○발기반정비사업과 연계 실시

- 발기반정비사업 완료지구에 대하여 생산.유통지원사업 우선 배정

- 단위사업의 내용이 관정.도로등 발기반정비 지원대상지 선정기준에 부합 될 경우에는 발기반정비 부서(건설과)에 의뢰

※ 작목별 최소개발규모

· 채소단지 : 5ha이상

· 복합단지 : 15ha이상

· 밭경지단지 : 15ha이상

바. 기타사항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사업장은 지원하지 아니함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시되지 않은 기타사업도 신청할 수 있음.

(별지 1호서식)

자체가 26-59

노지채소사업 지원계획 보고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					농가수 (호)
				계	보 조	용자	지방 비	자부 담	
합계									

-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량을, “단위”는 사업내용에 적합한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 나.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법인, 작목반등)로 지원계획을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 다. 농가수는 사업대상자수를 표기하고 ()에 전체 수혜농가수를 표기

(별지 2호서식)

심사제외

노지채소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사업지역 또는 시.군수 :

2. 사업자 : ○○○○ 법인(작목반), 대표 □□□ (외 △ 개 법인 또는 농가), 전업농

3. 사업진도(총괄)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별	사업량			사업진도		사업비집행									
	계 획	실 적	비 율	주요추진내역	공정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담	
						계 획	집 행	계 획	집 행	계 획	집 행	계 획	집 행	계 획	집 행
합 계			%		%										

주). 가. “사업지역”은 번지수까지 기재

나.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 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다. “세부사업별”난은 개별사업의 단위사업명을 기재

라. “주요추진내역”난은 부지확보, 건축허가, 시공업체명,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 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는 계획대비 보고전월말 까지의 집행실적을 기재

바.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법인, 작목 반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4. 금후 사업추진일정

5.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6. 기타 참고사항

(별지 3호서식)

총공통-9

노지채소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품목별 또는 단지명	대표자 ()외 농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획					집행실적(정산)									
		세부 사업 명	계 획 (A)	실 적 (B)	대비 (B/ A)	계	국고 보조 (C)	읍자 (D)	지방 비보 조	자부 담	계	국고 보조 (E)	읍 자 (F)	지방 비보 조	자부 담	대 비 (E/ C)	차년 도 이월 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착공 일	준공 일
합계				%											%					

-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 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 나.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유리온실, 암반관정, 저온저장고, 병절단기, 자동포장기, 무, 배추 등을 기재.
- 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라. 차년도 이월액 및 불용 및 집행잔액도 국고와 읍자로 구분작성
- 마.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법인, 작목반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세부정산실적을 별지로 작성.첨부

Ⅲ. 특용작물생산·유통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과장 홍순기, 농업서기관 장승진, 농업사무관 임현언)입니다.

1. 목 적

- 특용작물(버섯, 생약, 차, 잠엽, 인삼)의 생산·유통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특용작물의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품목별로 재배를 규모화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
- 세부사업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 추진
- 지원의 규모화 및 집단화로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강화로 지원효과 증대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인삼산업법 제3조

4. 연도별 지원계획

< 총 괄 >

(단위 : 개소, 백만원)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 2004
사 업 량		460	386	463	113		
사 업 비	계	335,223	249,025	290,596	71,800		
	보 조	19,281	16,565	7,059	-		
	용 자	111,120	56,170	75,357	57,440		
	지방비	18,373	15,725	7,059	-		
	자부담	186,449	160,565	201,121	14,360		

< 특 작 >

(단위 : 개소, 백만원)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 2004
사 업 량		218	139	128	28		
사 업 비	계	150,031	66,437	63,996	14,000		
	보 조	14,501	13,287	6,399	-		
	용 자	89,980	26,575	38,397	11,200		
	지방비	14,501	13,287	6,399	-		
	자부담	31,049	13,288	12,801	2,800		

< 인 삼 >

(단위 : 개소, 백만원)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 2004
사 업 량		242	247	335	85		
사 업 비	계	185,192	182,588	226,600	57,800		
	보 조	4,780	3,278	660	-		
	용 자	21,140	29,595	36,960	46,240		
	지방비	3,872	2,438	660	-		
	자부담	155,400	147,277	188,320	11,560		

* 인삼은 '96부터 지원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지원방향

- 품목별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유통시설을 종합적(Package방식)으로 지원
- 1개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표준사업의 세부사업(Menu)중에서 농가 희망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
- 1개단지의 재배면적 규모는 표준사업의 기준면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따라 증·감 조정할 수 있음.
- 인삼은 식재사업과 시설기자재 현대화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하던 것을 표준 단위사업으로 묶어 예시된 사업중에서 농가희망에 따라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융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사업

- 특 작

- 버섯 : 종균생산시설,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냉동운반차량, 저온저장고
- 생약 : 공동육묘포 설치, 재배시설, 조제시설, 집하장
- 차 : 다원조성, 생산기반조성, 제다시설
- 잡업 : 병발조성, 생력재배기자재, 양잠산물 가공기자재
- 인삼 : 인삼생산에 소요되는 식재자금 융자지원 및 우량묘삼 생산, 전용 농기계 등의 시설기자재 현대화사업 융자지원

○ 지원비율 : 융자 80%, 자부담 20% (사업단가 기준)

- 융자조건 : 연리6.5%, 3년거치후 7년상환(인삼은 2~6년 거치후 일시상환)

○ 사업기간 : '99. 1. 1 ~ '99. 12. 31

○ 지원대상자

사 업 명	대 상 자
<p>< 버 섯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균생산시설 ○ 첨단재배시설 ○ 균상재배시설 ○ 냉동운반차량 ○ 저온저장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섯종균·배지생산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을 위하여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종균판매가 가능한 종균생산업 등록업체 및 자체소비를 위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또는 농가중 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체 우선 ○ 자체운영자금 조달여력이 있고 버섯재배경력이 있는 자로서 주년생산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또는 농가중 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체 우선 ○ 일반 버섯재배사 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을 희망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또는 농가중 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체 우선 - 최소지원규모를 3동이상으로 함. ○ 버섯종균 생산시설, 버섯첨단재배시설, 버섯균상재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또는 농가중 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체 우선 ○ "
<p>< 생 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약육묘포설치 ○ 생약재배시설 ○ 생약조제시설 ○ 생약집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ha이상 종묘를 생산 공급하는 생산자단체(농협 회원조합, 생약농업협동조합, 한국생약협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또는 농가중 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체 우선 ○ 생약재배농가중 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체 우선 - 최소재배 지원규모를 1ha이상으로 함.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한국생약협회, 농가중 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체 우선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한국생약협회 중 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체 우선
<p>< 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조성 ○ 생산기반시설 ○ 제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 신규조성 및 확대농가중 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체 우선 - 최소재배 지원규모를 1ha이상으로 함. ○ 기존다원과 신규조성 다원의 기반시설 지원희망농가중 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체 우선 ○ 차재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차재배겸 가공업자, 차재배 농가중 영농조합법인 등 경영체 우선
<p>< 잠 업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빙발조성 ○ 생력재배기자재 ○ 양잠산물가공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빙발 신규조성 및 확대농가 ○ 양잠농업협동조합, 생산자단체, 대규모 양잠농가 ○ "

< 인삼 >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자	지 원 조 건
○ 식재사업	- 당년도 인삼경작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용자80%, 자담20 - 연리 6.5%, 3-5년거치 일시상환
○ 시설기자재 현대화사업	- 당년도 인삼경작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 또는 년근별 경작면적을 보유한 자 중에서 동 사업신청을 한자 (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용자80, 자담20 - 연리 6.5% - 2-6년거치 일시상환
- 우량묘삼생산	- 묘삼생산 기술수준이 우수한 생산자	- 2년거치 일시상환
- 재배시설개선	- 당해년도 식재한 자 또는 년근별 경작 면적을 보유한 자	- 2년거치 일시상환
- 토양개량	- 당해년도 식재예정지 관리자	- 4-6년거치 일시상환
- 도난경보시설	- 연근별 경작면적을 보유한자 또는 당해 년도 식재한 자	- 2-5년거치 일시상환
- 관수시설	- 당해년도 식재한자 또는 년근별 경작면적을 보유한 자	- "
- 원종보급종생산	- 신품종(KG101,102,103)을 채종 목적으로 인삼조합과 계약체결을 한 자	- "
- 전용농기계	- 연근별 경작면적을 보유한자 또는 당해년도 식재한 자	- 3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규모(표준사업)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단 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시 설 내 용
1 버섯 (기준면적500평)					
○ 종균·배지 생산시설	50평/동	1	85	85	○ 건축물(전기,수도등 부대시설 포함) ○ 시설기기(탈병기,보일러,살균기,콘베어, 냉동시설,크린룸,배합기,입병기 등)
○ 첨단재배시설	150평/동	1	200	200	○ 건축물(전기,수도,실험실,무균실등 부 대시설 포함) ○ 기기(툽밥제조기,툽밥채,혼합기,콘베어, 입병기,고압살균기,자동접종기,균꺾기, 억제기,탈병기,가습기,냉동기,온습도 자동제어장치,진공포장기 등)
○ 균상재배시설	35평/동	10	15	150	○ 건축물(전기,수도,난방,온습도조절 시설등 부대시설 포함)
○ 냉동운반차량	대	1	20	20	○ 2.5톤이상
○ 저온저장고	20평/동	1	50	50	○ 건축(부대기자재 포함) (개별농가 5평/ 동이상)
2 생약 (기준면적:20ha)					
○ 육묘포설치	ha	1	30	30	○ 종자대,비료대,농약대,토지임차료,고 용노력비 등
○ 재배시설	ha	20	5	100	○ 종묘대,비료대,농약대,시설비 등
○ 조제시설	100평/동	1	200	200	○ 건축물(전기,수도등 부대시설 포함) ○ 기기(선별기,탈피기,세척기,탈수이송 콘베어,절단기,건조기,상승콘베어,계 측기,자동포장기,지게차)
○ 집 하 장	150평/동	1	120	120	○ 철근콘크리트 구조, H빔 판넬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단 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시 설 내 용
③ 차 (기준면적:20ha) ○ 다원조성 ○ 생산기반조성 ○ 제다시설	ha ha 50평/동	1 20 1	14.4 281.0 209.6	14.4 281.0 209.6	○ 개간비, 묘목대, 식재대 등 ○ 관수시설(관정,스프링),방상기,전정기, 자동채엽기 등 ○ 건축(전기,수도등 부대시설 포함) ○ 기기[급엽기,증기,냉각기,증엽기(증엽콘베어,증엽투입,증엽개량), 조유기,유념기,중유기,건조기,포장기 등] ○ 저온저장창고 30평1동
④ 잠엽 (기준면적:20ha) ○ 뽕밭조성 ○ 생력재배기자재 ○ 양잠산물가 공기자재	ha ha 5ha	1 20 4	21.0 1.7 13.0	21.0 34.0 52.0	○ 묘목대, 관정등 ○ 뽕수확기, 뽕가지절단기, 뽕밭관리기, 자동소독기, 자동온풍기 등 ○ 건조기, 냉동저장고, 분쇄기, 포장기등

* 품목별 메뉴사업을 조정하여 품목별로 개소당 500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원(예시1)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품목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각 품목별 세부메뉴사업중 필요사업들을 합하여 개소당 500백만원으로 조정하여 지원(예시2)가능

(예시1) 버섯균상 재배시설+버섯저온저장고=500백만원

(예시2) [버섯균상 재배시설+생약조제시설+생약재배시설=500백만원] 또는 [제다시설+생약조제시설+생약재배시설=500백만원]

** 잠엽은 개소당 107백만원을 기준하여 지원하되, 도별 사업량 1개소이상 지원 불가

세부사업명	단 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산 출 근 거
계			천원	천원	
				928,17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삼(기준면적:40ha)					
<input type="checkbox"/> 인삼식재	개소	40ha	20,000	800,000	○ '96년 인삼표준경영비의 2,779천원 /10a중 식재년도까지 소요되는 사업비 2,000천원 적용
<input type="checkbox"/> 시설기자재현대화			87,600	128,170	
○ 우량묘삼생산	ha	2	40,570	81,140	○ 묘삼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소독대 등
○ 재배시설개선	"	1	10,230	10,230	○ 4각백관 및 코팅지주목 등 신소재자재
○ 토양개량	"	1	3,080	3,080	○ 인삼전용거름, 작물종자 등
○ 도난경보시설	"	1	3,720	3,720	○ 고압경보기, 사이렌 등
○ 관수시설	"	1	7,420	7,420	○ 경질호스, 점적호스 등
○ 전용농기계					
- 다목적운반차량	대	1	3,380	3,380	SC-신형(구입단가의 50%적용)
- 작 반 기	"	1	1,470	1,470	'96-11DHB
- 수 확 기	"	1	5,440	5,440	GH-1300T
- 이 식 기	"	1	3,090	3,090	GT-9000
- 관 리 기	"	1	1,750	1,750	AMC-880S
- 작반정지기	"	1	590	590	BR-900
- 해가림설치기	"	1	2,760	2,760	GC-600
- 해가림철거기	"	1	980	980	SR-600
- 고랑제초기	"	1	150	150	RW-900
- 묘포상광설치기	"	1	560	560	HR-850
- 인삼파종기	"	1	2,410	2,410	GS-900

* 1개소당 지원단가 680백만원(표준사업비 928,170의 73% 수준적용)

○ 우량농기자재 사용

- 지원대상 농업기계중 농업기계 품질보증 대상기종인 경우에는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 농업기계 구입

나. '99 사업비(예산안)내용

□ 품목별 지원내역

(단위 : 개소,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13	71,800	57,440	-	57,440	-	14,360
○ 특작(버섯, 생약, 차, 잠업)	28	14,000	11,200	-	11,200	-	2,800
○ 인 삼	85	57,800	46,240	-	46,240	-	11,560

* 용자조건 : 연리 6.5%, 3년거치후 7년상환(인삼은 2~6년거치후 일시상환)

< 특작 : 버섯, 생약, 차, 잠업 >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28	14,000	11,200	-	11,200	-	2,800
경 기	2	1,000	800	-	800	-	200
강 원	2	1,000	800	-	800	-	200
충 북	2	1,000	800	-	800	-	200
충 남	2	1,000	800	-	800	-	200
전 북	8	4,000	3,200	-	3,200	-	800
전 남	4	2,000	1,600	-	1,600	-	400
경 북	7	3,500	2,800	-	2,800	-	700
경 남	1	500	400	-	400	-	100

* 개소당 사업단가 : 500백만원 (잠업은 107백만원)

< 인 삼 >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개소 85	백만원 57,800	46,240	-	46,240	-	11,560
인 천	1	680	544	-	544	-	136
대 전	1	680	544	-	544	-	136
경 기	10	6,800	5,440	-	5,440	-	1,360
강 원	4	2,720	2,176	-	2,176	-	544
충 북	19	12,920	10,336	-	10,336	-	2,584
충 남	20	13,600	10,880	-	10,880	-	2,720
전 북	21	14,280	11,424	-	11,424	-	2,856
전 남	2	1,360	1,088	-	1,088	-	272
경 북	6	4,080	3,264	-	3,264	-	816
경 남	1	680	544	-	544	-	136

※ 개소당 사업단가 : 680백만원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특작과 (02)504-9422, 9423, 9424
- 시·도 : 농산물유통과(경기, 강원, 경남)
유통특작과(충북, 경북)
농 산 과(충남, 전북, 전남)
- 시·군·자치구 : 산업과 또는 지역특산과

다. 자금 지원대상자

- 선정권자 : 시장·군수(인삼은 인삼협동조합과 협의)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중 차년도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요구, 단, 인삼은 인삼협동조합이 생산농가의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에게 제출 가능
- 우선순위결정
 - 시장·군수는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지원대상자로서의 적정여부, 집단성, 재배경력, 경영능력, 자부담 및 운전자금 확보능력, 조직의 경우 구성원의 적정여부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항목과 배점기준을 설정하고 신청자별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시장·군수는 총사업비 규모가 300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소장에게 별도의 세밀한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여야하며, 농촌지도소장의 정밀검토결과 적격사업자로 판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경영체외의 생산자단체 등에게는 농업인등보다 지원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음.
 - * 인삼사업자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민간수출업체 와 계약재배한 농가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타 지역 거주자 차별대우 금지
- 논에 본사업과 관련하여 벼이외 타작물재배 및 시설설치시 차등지원
 - 대구·확 재경지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농업진흥지역밖의 논은 사업대상순위를 받이나 산지보다 후순위 부여
- 대상자 확정
 -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배정되는 결과에 따라 예산요구시 결정된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로 확정
 - 우선순위자가 사업포기시 포기서 징구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장·군수는 예산과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즉시 품목별 표준사업의 세부사업별(Menu)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인삼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

- 인삼식재
 - 식재사업 당해연도 지원한도는 농가 5ha, 법인은 20ha까지만 인정
- 전용농기계
 - 인삼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기계공급 생산업체와 일정기간 사후봉사이행계약을 체결하여 사후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지원신청 농기계와 동일기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 대하여는 내구연수동안 지원하지 않음.
 - 농기계 지원공급을 한번 받은 농가는 신규신청 농가보다 차순위를 적용

○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 수립후 품목별 세부사업간에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 요청
- 시·도지사는 개소당 사업단가 범위내에서 사업목적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지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자금지원

- 융자취급기관 : (특작)농업협동조합, (인삼)인삼협동조합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이 배정된 때에는 사업자별로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고 시·군의 사업주관과에 통보
- 사업자는 사업진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융자금 취급기관에 융자신청
- 융자취급기관은 시·군의 사업주관과에서 사업추진실적을 확인받아 융자실행
- 사업주관과는 특별한 사유없이 융자금 집행을 지연하여 사업의 부실화나 시행에 지장을 주어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자부담금 조달 및 투입내역등 사업의 실적(금융거래자료,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함)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자부담 비율제외)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함)에 따라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때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에 포함되는 시설은 건축물(관리사 및 작업장, 제어실등 해당사업의 생산·유통에 직접 활용되는 시설물포함), 각종기자재(해당사업의 생산·유통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각종 기계 및 자재), 종자대, 비료대, 식재대, 재배시설 기자재(지주목, 비닐, 철사등 부대시설)와 시·도지사가 해당사업의 생산·유통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과 각종 기자재를 말함.
- 융자금은 배정액과 차입액을 농협관계서류와 대조확인하고 미차입액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농업인 부담금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실부담액을 확인하여 검정한다.
- 기타 여기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 후 관 리 기 간		처 분 제 한 기 준	비 고
	부 터	까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섯종균배지생산시설 ○ 버섯첨단재배시설 ○ 버섯균상재배시설 ○ 버섯저온저장고 ○ 생약조제시설 ○ 생약집하장 ○ 제다시설 	2000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중 임의로 양도·폐지등 처분금지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하여야 할 경우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지원기간을 감안하여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전용농기계 	'99	200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협동조합에서 관리대장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식재포장 	'99	채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중 중도 채굴시에는 지원융자금을 채굴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인삼 조합에 상환 	

* 생약집하장은 지원목적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수기에는 주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동작업, 공동보관 등 농산물 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

나. 보고·기타

- 사업시행계획 [별지 제1호서식] : 1. 31까지
- 사업추진상황 [별지 제2호서식]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별지 제3호서식] : 익년도 3. 20까지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등에 따름.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촌지도소 또는 시·군 산업과(또는 지역특산과)

나. 신청자격 : 제5항 “바”호의 지원대상자로 적합한 자

다. 신청절차

- 신청서제출→사업신청서 검토(시·군)→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심사·선정)→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및 예산요구→농림부 예산요구 및 확보→시·도시달→시·군시달→사업대상자 확정
- 인삼은 생산자단체인 인삼협동조합에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 자체심의후 시·군에 제출 가능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자율사업신청서 1부.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99 지원대상자 선정방법과 같음.
- 우선순위 및 선정절차 : '99지원대상자 선정방법과 같음

바. 기타사항

- 발기반정비사업과 연계 실시
 - 본사업 대상지역이 「발기반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은 시·군 발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건설과등)에 신청하여 사업에 우선 반영되도록 조치
 - 「발기반정비사업」을 신청한 대상지역은 본사업 추진기관인 시·군→시·도→중앙에 계통보고하고 발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
- 2000년도 이후의 융자금 금리와 품목별 사업비 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별지 1호서식)

자체가 26-59

()사업 지원계획 보고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			농가 수(호)
				계	용자	자부담	
합 계							

-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량을,
“단위”는 사업내용에 적합한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나.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 법인, 작목반등)로 지원계획을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 첨부
다. 농가수는 사업대상자수를 표기하고 ()에 전체 수혜농가수를 표기

(별지 2호서식)

심사제외

()사업 추진상황 보고

- 1. 사업지역 또는 시·군수 :
- 2. 사업자 : ○○○법인(작목반), 대표 □□□(외 △개 법인 또는 농가)
- 3. 사업진도(총괄)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별	사업량			사업진도		사업비집행					
	계획	실적	비율	주요추진내역	공정	계		용자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계			%		%						

- 주) 가. “사업지역”은 번지수까지 기재
- 나.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 다. “세부사업별”란은 개별사업의 단위사업명을 기재
- 라. “주요추진내역”란은 부지확보, 건축허가, 시공업체명,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 마. “사업비집행”은 계획대비 보고전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을 기재
- 바.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법인,작목반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 첨부

- 4. 금후 사업추진일정
- 5.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6. 기타 참고사항

()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품목별 또는 단지명	대표 자 ()외 농가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세부 사업 명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획			집행실적(정산)			대비 (D/ C)	차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착공 일	준공 일	
						계	용자 (C)	자부 담	계	용자 (D)	자부 담						
합 계					%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나.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다.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 법인,
 작목반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세부정산실적을 별지로 작성 첨부

IV. 과실생산·유통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박병원, 농업사무관 김석호)입니다.

1. 목 적

- 과실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향상 및 유통개선을 통한 국산과실의 경쟁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과실생산·유통 : 사업대상자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사과왜성대목 및 대묘생산 : 왜성밀식재배용 대목증식 및 대묘생산을 지원하여 생산성이 낮은 과수원의 조기 갱신 유도
- 부적지 감귤과원정비 : 해발 200m이상 고지대 및 동해 상습지 감귤과원을 정비하여 작목 대체 유도

3. 근거법령

- 과실생산유통, 사과왜성대목 및 대묘생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5조
- 부적지 감귤과원정비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18조

4. 연도별 지원계획

- 과실생산유통지원(사과왜성대목 및 대묘사업 포함)

		'92~'96	'97	'98	'99 (예산안)	2000	2001~2004
사업량		개소 300	150	130	95		
사업비	계	백만원 504,231	222,450	192,790	123,500		
	보조	119,986	44,490	19,279	-		
	융자	170,660	88,980	115,674	98,800		
	지방비	103,836	44,490	19,279	-		
	자부담	109,749	44,490	38,558	24,700		

※ 융자조건 : 연리 6.5%, 5년거치후 5년균분상환

○ 부적지 감귤과원정비

		'92~'96	'97	'98	'99 (예산액)	2000	2001~2004
사업량		ha -	30	30	20	-	-
사업비	계	백만원 -	900	900	600	-	-
	보조	-	630	630	420	-	-
	용자	-	-	-	-	-	-
	지방비	-	270	270	180	-	-
	자부담	-	-	-	-	-	-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구분	과실생산유통	사과왜성대목증식	사과왜성대묘생산	부적지감귤과원정비
지원대상자	○ 동일과종재배면적이 20ha이상인 조직경영체(우수작목반포함)및 그 회원농가	○ 종자업등록을필한 법인경영체 또는 종자업자, 전문농협(종자업등록 불필요)	○ 좌 동	○ 해발200m이상 고지대 및 동해상습지 감귤재배농가
사업단가	○ 300백만원이상개소	○ 319백만원/ha (11천주 식재기준)	○ 513백만원/개소 (100천주 생산기준)	○ 30백만원/ha
지원조건	○ 국고용자 80% 자부담 20% -용자조건 : 연리 65% 5년거치 5년상환	○ 좌 동	○ 좌 동	○ 국고보조 70%, 지방비보조 30%
지원내용	○ 세부사업내용: 불임1참조	○ 좌 동	○ 좌 동	○ 부적지감귤과원 폐원비

※ 키낮은 사과원을 조성하는 농가는 조직경영체 회원이 아니더라도 개별 지원 가능 단 1ha이상 조성 농가에 한함

- 법인경영체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농림사업실시규정”의 공통기준에 의함
- 우수작목반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읍·면장이나 관할 농협장이 적격지원대상자로 추천하는 “선진작목반”
 - 구성원이 30인이상이고 그중 2/3이상이 3년이상 과수재배 경력이 있어야 함
 - 총 기금조성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3년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함
 - 최근 3년동안 매년 과실 공동출하실적이 3억 이상되어야 함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백만원 124,100	99,220	420	98,800	180	24,700
과실생산·유통	95개소	125,500	98,800	-	98,800	-	24,700
부적지감귤과원정비지원	20ha	600	420	420	-	180	-

※ 융자조건 : 연리 6.5%, 5년거치후 5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단, 사과왜성대목 및 대표생산사업은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산원예국 과수화훼과 (02-500-2685~6)
- 시·도 : 농정과(시), 농산유통과(경기, 전북, 전남), 원예유통과(충북), 농산과(충남), 유통특작과(강원, 경북), 농수산물유통과(경남), 감귤과(제주)
- 시·군 : 산업과, 농산과, 농정과, 감귤과, 농업기술센터 등

다. 사업시행

1) 과실생산·유통지원

가) 대상자선정

(1) 우선순위

조직 경영체(선진작목반 포함)

○ 1순위

- 농림부 『과실수출단지지정요령』에 의거 지정된 수출단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

○ 2순위

- 도이상 또는 수개 시·도 단위로 조직된 경영체
· 조직경영체 관할 재배면적이 전국재배면적의 20%이상 되어야 함

○ 3순위

- 시·군 단위로 조직된 경영체

○ 기 타

- 읍·면 단위로 조직된 경영체

※ 동일 순위에서는 과수 전업농가 참여비율이 높고 공동퇴비장설치등 환경친화형 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조직경영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개별사업(농가)

- 생산기반조성과 부직포, 비가림시설, 방조망설치등 환경친화형 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

(2) 선정절차

- 사업 타당성 검토 :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전문가가 실시

- 타당성 검토시 고려사항
 - 경영체의 활성화 정도
 - 전업 농가의 참여수, 경영체의 규모 등 사업대상자 적합여부
 - 경영체의 운영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
 - 사업비 조달능력
 - 자부담 능력
 -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경영체의 부지확보 및 운영능력
 -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 경영체의 사업계획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 저온저장고, 선과장등 공동시설은 활용도제고를 위하여 관내 수급 상황을 반드시 판단하여 부족한 경우에만 설치(관내 개별 및 공동 시설 현황 확인)
 - 사업량 및 단가의 적정성
 -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여부
 - 기타 필요한 사항

- 선정방법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
 - 조직경영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개 심의하고 경영체별 우선순위 결정

나)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수립 : 정부가 제시한 메뉴사업을 기초로 해당 조직경영체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

- 사업계획변경 : 사업추진중 부득이 당초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실시

(2)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는 반드시 기성고에 따라 집행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농협(전문농협 포함)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체가 희망하는 용자 취급 기관에 용자금 대여
 - 용자절차
 - 용자대상자 및 기성고 통보 : 시장·군수가 농협장에게 통보
 - 용자실시 : 농협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용자를 실시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름

(3) 유의사항

- 세부지원사업에 제시된 단가는 기준단가이므로 집행과정에서 기준 단가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질 경우에는 실제가격을 적용하되,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획된 사업비내에서 조정하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가 산출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 메뉴사업으로 제시하지 않은 사업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여야 함. 다만,
 - 유통효율이 낮은 소형 저온저장고, 선과기 등 농가용 유통시설은 지원할 수 없음
 - 과실 장기수급안정을 위하여 키낮은사과원외에는 신규과원조성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소모성이거나 1회성인 봉지, 포장상자, 반사필름은 지원할 수 없음
- 논에 본사업과 관련하여 벼이외 타작물재배 및 시설설치시 차등 지원
 - 대구획 재경지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 하게 지원하여야 할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가능
 - 농업진흥지역밖의 논은 사업대상순위를 받이나 산지보다 후순위 부여
- 저온저장고, 선과장, 집하장등 공동사업의 토지와 건물 및 차량'등은 반드시 조직경영체 명의로 등기하여 사유화 방지

- 모든 사업의 토지구입비는 지원할 수 없음.
- 도시계획·세금·환경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상자선정 철저
- 농기계, 시설, 자재는 동일품목이 형식검사합격, KS 규격획득등 정부 공인기관의 인정을 받은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
- SS분무기, 트랙터, 굴삭기 등 농림부에서 지정한 지원대상기종의 용자금은 “농기계구입자금지원요령”과 같이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용자금의 지불위임장, 신청·지급, 판매대금 중앙결제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기계구입자금지원요령”에 준함.
- 저온저장고, 선과장, 집하장 등 공동시설은 비수기에는 타품목도 활용하여 이용을 제고

(4) 사업기간

- 당해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시장·군수는 경영체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부합되며 곧바로 시행토록하고, 사업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시·도지사는 1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2) 사과왜성대목증식 및 대표생산

가) 대상자선정

(1) 우선순위

- 1순위 : 법인경영체
- 2순위 : 종자업자

(2) 선정절차

- 사업타당성 검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원, 학계등 관계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업타당성 검토

- 타당성 검토시 고려사항
 - 왜성대목 확보사항
 - 왜성묘목 생산 기술 여부
 - 왜성묘목 공급처가 분명한지 여부
 - 사업비의 조달능력(부지확보, 자담능력 등)
 - 사업계획의 적정여부(사업목적 부합 등)
 -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여부
 - 기타사항

- 선정방법 : 시·도지사가 결정
 -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공개 심의

나)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 정부가 제시한 묘목생산기준을 기초로 해당경영체 및 종사업자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중 부득이 당초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

(2) 묘목 생산기준

왜성대목 증식

- 대목의 종류 및 규격
 - 왜성사과대목중 계통이 확실하고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는 M9 자근대목 생산 원칙
- 생산기간 : 사업이듬해부터 10년간
- 자근대목기준 : 지제부 10cm부위의 굵기가 0.6cm이상되고, 뿌리는 길이 10cm이상의 부정근이 아닌 충실한 뿌리 10개 이상

□ 왜성대표생산

- 대표용 대목의 종류 및 규격
 - 왜성사과대목중 계통이 확실한 M9으로 자근묘 활용 원칙
- 생산기간 : 2년(자금지원은 1년, 2년차 투자비는 자부담)
- 묘목규격 : 2년 양성묘의 경우 접목부위로부터 10cm위의 굵기가 1.3cm 이상, 잘 발달된 측지가 4~10개

(3)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는 반드시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고 단가 확인 철저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농협(전문농협 포함)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을 실시하는 조직경영체 또는 종자업자가 희망하는 용자 취급기관에 용자금을 대여
 - 용자절차
 - 용자대상자 및 기성고 통보 : 시·도지사가 시장·군수를 통하여 농협장에게 통보
 - 용자조치 : 농협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용자 조치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름

(4) 공 급

- 생산된 대목과 대표는 시·도지사와 협의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보급

(5) 기 타

- 사업 세부추진 요령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시행

3) 부적지 감귤과원정비

가) 대상자선정

(1) 선정기준

- 감귤과원이 해발 200m이상의 고지대 및 동해상습지의 농가로서 감귤과원을 정비하고 대체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

(2) 우선순위

- 1순위 : 행정기관에서 사전조사한 농가
- 2순위 : 행정기관 사전조사 이후 과원정비를 신청한 농가

(3) 선정절차

- 농촌지도소장이 발행한 확인서에 의거, 읍·면장이 현지 확인 조사한 결과를 시장·군수, 도지사가 시·군, 시·도 농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나)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본 지침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세부요령을 작성 시행하고, 대상자 변경시는 도지사가 승인

(2) 사업비 지원방법

○ 지원단가

- 제주도지사 주관하에 지역별, 수령별, 수확량, 감귤가격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농촌진흥원, 감귤연구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 단가 심의회를 거쳐 30백만원/ha이내에서 차등지원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

○ 사업비지원

- 보조금은 반드시 과원정비 확인후 집행하고, 다시 감귤을 식재하지 않도록 조치

○ 기 타

- 제주도지사는 본 지침을 근거로 세부추진 요령을 작성 시달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라. 사업비 집행·정산 및 검정

(1) 사업비 집행·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사무를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함(부적지 감귤과원정비지원사업에 한함)
- 모든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시·군등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 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이상인 경우는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 단, 이외의 경우는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자부담금 조달 및 투입내역등 사업의 실적(금융거래자료, 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함)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 제외)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함)에 따라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부당사용한 경우, 부당 사용한 금액의 회수는 물론, 향후 5년간 사업자금 지원 중단
- 기타 여기에 정하여지지 않는 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지출사항 검정

- 공사비
 - 공종별, 도급계약자별 계약금액과 실형 검정액을 확인하여 공사비의 과불 유무를 확인
 - 공사 실형은 면밀하게 실측하여 설계도서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대조 검정
 - 실형 상태가 불합리 또는 부실하다고 판단될때에는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조치
 - 증거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

- 지급품비
 - 양회, 철근, 전기, 기계류 등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입하량(구입량)과 단가를 검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경영장부 기록비치, 사업진행상황 및 경영성과 분석평가, 재배기술, 시설운영관리 및 경영교육 참가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 감독의 책임을 짐
 - 농림사업실시규정 별표 2의 농림사업 안내문 표지 설치
 - 사업자의 경영지도 및 경영장부 기록상태 수시 확인
- 시·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조사, 감독
- 시·도지사는 사업지역에 전담지도사를 배치, 기술지도, 경영실태 파악 및 경영지도
- 지원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 저온저장고, 선과장 등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	준공일	10년	○ 사후관리기간중 부득이한 사유로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	※ 기타 재산은 시장·군수(시·도지사)가 지역특성에 맞도록 별도 기준을 정하여 관리
○ 농기계, 차량	구입 자 금 집 행 일	4년	○ 사후관리기간중 노후화, 이농 등으로 처분을 요하는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분	

나. 보 고

- 사업계획보고[별지 제4호서식] : 1월말
- 사업추진상황보고[별지제5호서식] : 연2회(6월10일, 11월 10일)
- 사업자금 정산 보고[별지 제6호 서식] : 익년도 3월말

다. 기 타

-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등 관계 규정에 따름.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 또는 시·군

나. 신청자격

- 동일과종 재배면적이 20ha이상인 조직경영체로 사업추진 능력과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99자격요건과 같음
- 선진작목반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읍·면장이나 관할농협장이 적격 지원대상자로 추천하는 “선진작목반”
 - 구성원이 20인 이상이고 그중 2/3이상이 3년이상 과수재배경력이 있어야 함
 - 총기금조성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1년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함
 - 최근 3년동안 매년 과실 공동출하실적이 1억원이상 되어야 함

사과왜성대목 및 대표생산 : '99자격요건과 같음

다. 신청절차

과실생산유통

-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이나 시·군에 신청
 - 회원농가의 개별사업은 조직경영체나 작목반 대표가 발부한 사업 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
 - 저온저장고, 선과장 등 공동시설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관내 수급 상황을 분석하여 부족한 경우에만 신청
- 2개시·군이상을 관할하는 경영체는 전체 사업계획과 별도로 시·군단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각각 신청

사과왜성대목 및 대표생산 : '99와 같음

라. 구비서류

- 과실생산·유통지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과수대목 및 대표생산 :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마. 대상자 선정

- '99대상자 선정방법과 같음

바. 기타 사항

- 발기반정비사업과 연계 실시
 - 본사업 대상지역이 『발기반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은 시·군 발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건설과등)에 신청하여 사업에 우선 반영되도록 조치
 - 『발기반정비사업』을 신청한 대상지역은 본사업 추진기관이 시·군 → 시·도 → 중앙에 계통보고하여 발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
- 동 사업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2000이후의 용자조건 및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

○ 과실생산·유통 세부지원내역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지원기준
<공동시설>				조직경영체에 지원하되 개별농가지원 불가
저온저장고	200평	백만원 2.5	백만원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평 100-200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50평까지 가능하나 시·도지사 확인서 첨부 ○ 저장실은 여건에 맞게 구획 ○ 콤프레서 : 저장실 평당 0.4마력 이상 ○ 에어커튼 설치 ○ 응축기 : 콤프레서와 동일 마력 ○ 가습기 : 저온용(2-3대), 가습기용물 배관1식(시간당 20ℓ 이상) ○ 메인덕트 : 1식 ○ 건물 : 완벽한 단열시공 ○ 전기자동제어시설 1식 ※ 건축에 관한사항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음
선과장	1동	2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평 150평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함기, 테이핑기, 밴딩기, 전자저울각 1대 - 벨트 로라, 무구동 로라, 작업대, 선반, 콘베어 각 1식 - 지역여건상 불가피할 경우는 50평까지 가능하나 시·도지사 확인서 첨부 ○ 선과기 : 3조식 1대 기준(선과능력 : 3만개/시간)으로 설치하되 선과물량을 감안 하여 1조식이나 2조식으로도 조정가능 ○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는 기계시설만 설치가능 ○ 단가는 실구입 가격적용
집하장	200평	1.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평 100~200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여건상 불가피할 경우는 50평까지 가능하나 시·도지사 확인서 첨부 ○ 표준설계도 참고 (건설교통부공고 제1996-209호 : '96. 7)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지원기준
공동퇴비장	200평	1,675	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평 : 200평 ○ 발효조 시설 : 년산 2,500톤 기준 ○ 제품보관 및 관리시설 : 1조 ○ 혼합기 및 스키드로다 : 각 1대 ○ 톱밥 및 왕겨분쇄기 : 1대 ○ 콘베어 시스템 : 1조 ○ 원료투입기 : 1대 ○ 자동포장기 : 1대
수송차량	1대	10	10	○ 차종별 실구입가격 적용, 조직당 1대
지게차	1대	15	15	○ 형식별 실구입가격 적용
콘베어	1대	10	10	○ 형식별 실구입가격 적용
파레트	400개	0.03	12	○ 플라스틱 또는 목재 파레트
운반상자	10천개	2.5	25	○ 20kg들이 플라스틱 제품
<개별사업>		-		조직경영체의 회원농가에 지원
키낮은사과원 조성	5ha	36	180	○ 기반정비, 토양개량, 관·배수시설, 관정, 묘목, 지주설치등
품종갱신	20ha	4	80	○ 우량 신품종으로 개식 또는 고접갱신(접목 개수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수분수 부족포장 수분수 확보 : 주품종의 15%-20%
배수시설	20ha	3	60	○ 암거배수(배수로, 집수로 등) ○ 침수지역 배수로 공사
관정	5공	3	15	○ 지역실정에 따라 소형 또는 중형 선택
점적관수	10ha	2	20	○ 점적관비 1식, 액비혼입기 1식
다목적 스프링클러	10ha	7.5	75	○ 공정식 : 노즐 및 노즐대 1식, 펌프1식, 파이프 시설 1식 상하이동식 : 탱크용량 3톤 이상, 상하 이동거리 80-250cm
모노레일	5ha	10	50	○ 경사 : 30° 이상 ○ 등판능력 : 250kg이상/1회

세부사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지 원 기 준
과원내 운반차량	7대	0.5~7.8	28	○ 형식별 실구입가격 기준
가지절단기	10대	1.2~1.6	20	○ 형식별 실구입가격 기준
전정목분쇄기	5대	1~35	10	○ 파쇄능력 : 나무직경 7cm이상
동력제초기	5대	0.5~3.1	10	○ 형식별 실구입가격 기준
부직포	20ha	3	60	○ 부직포 구입비
덕시설	20ha	4	80	○ 풍수피해가 예상되는 과종 우선 지원
비가림시설	10ha	20	200	○ 하우스형 비가림 시설
서리방제시설	1ha	28	28	○ 쉼 10개이상/ha, 온도감지장치 및 자동콘트롤 설비
인공수분기	1조	4	4	○ 약채취기, 약정전기, 개약기, 약파기, 화분정전기 등 5종 1조 기준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굴삭기	1대	8.2~13.7	13	○ 자체중량 1톤 미만으로 버켓 산적 0.016루베 이상 - 형식별 실구입가격 적용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SS분무기	6대	6.8~38.0	72	○ 형식별 실 구입가격 적용, 원거리 고성능 방제기 포함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트랙타	6대	5.6~21.7	95	○ 50마력이하, 플라워, 로타베이타, 트레일러 등 부속 작업기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승용관리기	6대	9.2~14.9	120	○ SS장치, 적재함, 퇴비살포기, 제초기, 로타리, 잔가지파쇄기, 구굴기, 복토기 등 부속작업기에 따른 실 구입가격 적용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방조망	5	20	100	○ 골조, 피복 등 실제 설치가격 적용 ※ 농촌진흥청 '98과수방조망시설 설계서 참조

- ※ 1. 세부사업별 사업량, 규모, 시설등은 예시기준이므로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
하며, 조정시에는 시장·군수가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
단. 저온저장고, 선과장, 집하장의 규모는 지원기준 적용
2.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질 경우는 실제가격을 적용 하되
초과된 경우는 당해 조직에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3. 농업기계는 생산업체에서 농림부에 신고한 형식별 가격기준 적용 : 한국농기
계공업협동조합발행 “농업기계가격” 참조(선택사양품은 자부담)

○ 사과왜성대목증식포 설치사업 세부내역

(11,000주/ha기준)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계	319,420,000	재식거리 1.5×0.6m기준
유기질비료	1,500,000	○ 300포×5,000원
석회비료	320,000	○ 200포×1,600원
복합비료	300,000	○ 50포×6,000원
농 약	5,400,000	○ 6회×3,000평×300원
기타재료비	3,000,000	
M9대목구입	33,000,000	○ 11,000주×3,000원
점 적 관 수	6,000,000	○ 3,000평×2,000원
스프링클러	5,000,000	○ 단용재
소 농 구 비	300,000	
수 리 비	100,000	
비가림 시설	6,000,000	○ ha당 600평(모수포 격리재배용)
관 리 비	2,000,000	
굴 취 기	3,000,000	
퇴비살포기	5,000,000	
석회살포기	2,500,000	
트 랙 터	24,000,000	○ 관련 부속품 가격 포함
SS기	10,000,000	
트 레 일 러	8,000,000	
톱밥제조기	35,000,000	
농자재보관창고	30,000,000	○ 15평×2,000,000원
작 업 장	20,000,000	○ 10평×2,000,000원
저온저장고	30,000,000	○ 10평×3,000,000원
전기실(모터 등)	6,000,000	○ 3평×2,000,000원
토 지 임 차	6,000,000	○ 3,000평×2,000원
토양개량(상토)	5,000,000	○ 300평 기준(5,000원×10포/20kg)
VF검정실 설치비용	72,000,000	○ 건물 10평×200만원=20,000,000 ○ elisa 관독기 25,000,000 ○ 소형원심분리기 10,000,000 ○ 인큐베이터 5,000,000 ○ 부대소형기계류 2,000,000 ○ 시약 VF검정(4종) 5,000,000 ○ 검정 보조시약 5,000,000

※ 위 기준은 예시이므로 시·도지사가 예시기준을 참고로 원예연구소 또는 농업기술원의 협조를 받아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

○ 사과왜성대목생산사업 세부내역

- 주당 생산비 5,133원

(1.8×0.5m, 100,000주/27,000평 기준)

비 용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계		513,300,000	재식거리 1.8×0.5m기준
재 료 비	유기질비료	10,000,000	2,000포×5,000원
	석회비료	1,000,000	1,000포×1,000
	복합비료	1,200,000	200포×6,000원
	농 약	25,000,000	5회×100,000주×50원
	생장촉진제	20,000,000	100,000주×100원×2회
	지주(철제)	40,000,000	100,000주×400원
자근대목구입	M9대목	300,000,000	100,000주×3,000원
관 수 시 설	점적관수	6,000,000	3,000평×2,000원
	스프링클러	5,000,000	
소 농 구 비		1,000,000	
묘목운송비		3,000,000	30회×100,000원
수 리 비		100,000	
임차료(토지)		54,000,000	27,000평×2,000원
임차료(농기계)		2,000,000	관리기, 굴취기, SS기, 톱밥제조기, 살포기, 트랙터, 톱밥제조기 등
고용노력비		45,000,000	방제, 경운, 정지, 복토, 굴취(분주) 등

※ 위 기준은 예시이므로 시·도지사가 예시기준을 참고로 원예연구소 또는 농업 기술원의 협조를 받아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

[별지 제1호서식]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서

(1) 경영체 현황

경영체명							
소재지	(주소)			(TEL)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설립일			설립법적근거				
회원수	농가		자산규모		백만원		
관할구역							
과수재배 현황		계	사과	배			
	면적 생산량	ha 톤					
시설현황	공동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타
		평	개소 (톤)	Set	대 (톤)	평	
	개별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타
		관정 : ha 점적 : 스프링 : 클러 :		평	평	대 (톤)	
(주) : 1. 선과기()내는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내는 보유대수에 대한 적재량을 기재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2호서식]

회원농가용

사업대상자 추천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과수재배현황

	계	사과	배				
면 적 생산량	ha 톤						

○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								
○○○								

위 사람은 (○○○ 경영체)의 회원농가로서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생산·유통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므로 ()년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경영체) 대표

□ 선진작목반용

선진작목반 추천서

작목반명 :

소재지 :

대표 :

구성원	구성원중 과수재배 경력 3년이상인자	총기금조성액	기금예치일	공동출하실적		
				전년	2년전	3년전
명	명	천원	천원, 일	백만원		

○ 과수재배현황

	계	사과	배				
면적	ha						
생산량	톤						

○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								
○○○								

위 작목반을 ()년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또는 농협장

(2)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조	용자	지방비	자부담
계								
(1) 공동사업 ○○○○								
(2) 개별사업 ○○○○								

- 자부담조달계획
- 건축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3) 향후사업계획

- 조직활성화 방안
- 생산기반시설 확충
- 공동출하 계획
- 기 타

사과왜성대목 및 대표생산사업신청서

생산자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Tel)		
기술자	(성명) (학력)	(주민등록번호) (경력)		
종자업등록	(등록일) (품종등록과종)	(등록번호)		
자산규모	백만원			
묘목생산 계획	과종명			
	생산기간			
	생산지역			
	소요예산	계	응자	자부담
천원				
<p>위와같이 사과왜성대목(대표)생산사업을 신청합니다.</p> <p>붙임 : 사업계획서 1부.</p> <p style="text-align: right;">199</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시 도 지 사 귀하</p>				

[별지 제4호서식]

자체가 26-59

()사업 지원계획 보고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					농가수 (호)
				계	보 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량을, "단위"는 사업내용에 적합한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 나.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법인, 작목반등)로 지원 계획을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 다. 농가수는 사업대상자수를 표기하고 ()에 전체 수혜농가수를 표기

심 사 제 외

()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사업지역 또는 시.군수 :

2. 사업자 : ○○○○ 법인(작목반), 대표 □□□ (외 △ 개 법인 또는 농가)

3. 사업진도(총괄)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별	사업량			사업진도		사업비집행									
	계 획	실 적	비 율	주요추진내역	공정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담	
						계 획	집 행	계 획	집 행	계 획	집 행	계 획	집 행	계 획	집 행
합 계			%		%										

주). 가. “사업지역”은 번지수까지 기재

나.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율, “단위”는 사업 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다. “세부사업별”란은 개별사업의 단위사업명을 기재

라. “주요추진내역”란은 부지확보, 건축허가, 시공업체명,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 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공정율”은 <별표1>의 주요사업별 공정별 진도 참고

바. “사업비집행”은 계획대비 보고전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을 기재

사.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법인, 작목 반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4. 금후 사업추진일정

5.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6. 기타 참고사항

<별표1>

주요사업별 공정별 진도

세부사업별	공정별	진도	비고
저온저장고, 선과장등 기계설치가 수반되는 건축물		%	
	대상자선정	10	
	부지선정	20	
	설계도착	30	
	건축허가	40	
	업체선정	50	
	기초공사	60	
	골조공사	70	
	지붕공사	80	
	내부공사	90	
기준공검	95		
		100	
기계설치가 수반되지 않는 건축물	대상자선정	10	
	부지선정	20	
	설계도착	30	
	건축허가	40	
	업체선정	50	
	기초공사	60	
	골조공사	70	
	지붕공사	80	
	내부공사	90	
	기준공검	100	
관수시설	대상자선정	25	
	업체선정	50	
	착공	75	
	완공	100	
농기계구입	대상자선정	30	
	구입계약체결	70	
	기계인수	100	

주) 1. 기타사업은 상기유사한 사업에 준함.

2. 공정별 진도는 사업추진실적 보고용으로 자금집행시는 실제 진도
확인후 집행

()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품목별 또는 단지명	대표 자 ()외 농가	사업량				사업비										비고			
		세부 사업 명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 A)	계 획				집행(정산)실적				대 비		차 년 도 이 월 액	불 용 또 는 집 행 잔 액	작 공 일	준 공 일
						국 고 보 조 (C)	읍 자 (D)	지 방 비 보 조	자 부 담	국 고 보 조 (E)	읍 자 (F)	지 방 비 보 조	자 부 담	국 고 보 조 (C- E)	읍 자 (D- F)				
합 계				%															

-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 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평 등으로 기재
- 나.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유리온실, 암반관정, 저온저장고, 병절단기, 자동포장기, 무, 배추 등을 기재.
- 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 라. 차년도이월액 및 불용 또는 집행잔액도 국고와 읍자로 구분작성
- 마.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법인, 작목반등)로 위양식에 맞추어 세부정산실적을 별지로 작성.첨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김영만, 농업사무관 박백화)입니다.

I. 포장자재비 지원

1. 목 적

- 농산물을 산지에서 표준출하규격으로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대량유통, 건본·통명거래, 직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
- 포장출하로 소비자의 쓰레기발생 억제 및 도매시장 환경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물의 품질에 따른 규격화, 상표개발을 통한 브랜드화 촉진
-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조직 단위로 평가 및 지원
- 규격출하 활동정도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고 지원을 차등화
- 우수 생산자조직에 집중지원하여 조직의 상향발전 유도

3. 근거법령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제12조(농수산물의 표준출하규격화등)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8조 (규격화의 촉진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	'97	'98	'99예산(안)
사업량(백만매)	364	135	140	179
사업비	121,800	65,610	71,820	125,300
국 고	24,360	13,122	14,364	37,590
지방비	24,360	13,122	14,364	12,530
자부담	73,080	39,366	43,092	75,180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1) 배경

- 농산물 규격상품화를 통하여 물류이동의 최소화와 규모화로 유통비용 절감
- 농산물의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로 신용·공정거래를 촉진
-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선별·규격 출하함으로써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소비지에서의 쓰레기처리 비용의 절감과 환경보호

(2) 지원대상

- 농산물을 규격출하하는 생산자 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 ※ 농협은 포장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선과장 등 선별포장시설을 보유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3) 사업내용

- 규격출하를 위한 골판지상자, 그물망, P.E대, P.P대 등 포장자재비 일부 보조(국고보조30%, 지방비보조10%, 자부담 60%)

(4) 대상품목

-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이 제정된 품목으로 하되, 포장출하율이 낮은 아래 5개 품목에 대해 우선지원

종 류	품 목
과 채 류 (1)	수박
엽·근채류(4)	무(알타리무, 열무포함), 배추(얼갈이배추 포함), 파, 마늘

- 위 우선지원품목(5개) 지원후 사업비가 남고, 지역특성상 지원이 불가피한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시·군과 농검출장소장, 농협시·군지부장이 합의하여 7개 품목이내에서 추가선정 지원이 가능하며, 쌀·보리쌀·콩·팥·울무 등 곡류는 제외

(5) 지원기준 및 조건

- 아래 조직등급별 활동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되, 사업량은 사업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며, 과다 신청한 경우는 사업량을 차감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등 급	활 동 기 준	지 원 내 용
최 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으로 등급별 품질이 균일 (선과장, 포장센타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 견본거래, 통명거래의 실시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등급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은 같은 가격을 받음) ○ 공동계산제 실시 ○ 조직원의 총출하량 중 공동규격출하비율이 7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을 신청량의 90%이상 반영
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고, 자체품질관리 요원이 출하품 점검을 하여 등급별 품질의 균일화는 이룩했으나, 농가간 약간의 품위 차이로 인한 가격차가 발생하여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선과장, 포장센타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선별)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농가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도 농가별 가격차 발생) ○ 공동수송, 개별경매 체계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규격출하 비율이 5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조직에 우선지원 후 잔여자금이 있을 경우 사업량을 신청량의 70%~50%내에서 차등 반영
일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은 하고 있으나, 자체 품질 관리 활동이 미흡하고,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하는 등 조직활동이 우수조직에 미달하는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조직 및 우수 조직에 우선 지원후 잔여자금이 있을 경우 30%이하 지원

나. '99 지원계획(안)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포장재비 지원	백만매 179	백만원 125,300	37,590	12,530	75,18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 ☎ (02)504-9411~2

국립농산물검사소 품질관리과 ☎ (0343) 446-0126

- 시·도 : 농산물유통과, 국립농산물검사소 시·도지사 품질관리과
- 시·군 : 산업과(유통과), 국립농산물검사소 시·군출장소
- 농 협 : 농협중앙회(유통지원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5. <사업개요>. “가”항의 (5) “지원기준 및 조건”에 의함

(2) 우선순위

- ① 포장출하율이 낮은 무, 배추 등 우선지원품목(5개) 출하조직과 포장센타를 운영하는 조직은 평가결과 차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② 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농검과 농협이 선정기준에 따라 조직별 규격 출하활동 평가를 통해 분류한 상위등급 조직부터 차등 지원

(3) 선정 절차

- 생산자조직은 규격출하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읍·면을 경유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사업신청내역을 농검에 통보
- 농검과 농협은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점검결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분류하여 시·군에 통보
 - 특히,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부당하게 과다 신청하여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시·군은 농검, 농협시·군지부장과 협의하여 사업대상품목·사업량 확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

라. 사업 시행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시·군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대상품목별 사업량을 농검과 합의결정
- 지원기준
 - 5. <사업개요>. “가”항의 (5) “지원기준 및 조건”에 의하되, 같은 조직내에서도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조직별 지원최저액 : 보조금(국고+지방비)은 조직당 1백만원 이상
- 조직평가 분류 : 전년도 실적, 조직활동 등을 감안하여 조직분류(농검,농협)
- 시·군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품목 또는 사업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검 출장소장, 농협 시·군지부장과 협의하여 변경 시행

(2) 사업비 지원 방법

- 사업대상자는 포장재 제작실적(제작수량등)에 대한 농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자금요청
 - 사업대상자가 농검의 포장재 제작실적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포장재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대금청구서 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를 제시
 -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이 고시 또는 승인한 농산물표준출하 규격에 한하여 자금 지원
 - 다만, 유통능률 향상, 직거래 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장·군수, 농검 출장소장과 , 농협 시·군지부장이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시장·군수는 농검의 포장재 제작확인서를 확인한 후 자금집행
- 생산자조직은 포장재 제작전에 농검과 협의하여 포장재크기, 표시사항 등이 표준출하규격에 맞도록 제작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규격출하사업 지원대장 비치

- 시장·군수는 조직별 포장재비 보조금 지원상황을 기록하여 대장으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농검·농협에 통보
 - 기록사항 : 조직명, 품목명, 조직등급, 재배면적, 생산량, 포장재 제작 및 지원수량, 지원금액, 규격출하계획량, 규격출하 실적 등

(2) 사업대상자 교육·홍보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교육 실시
 - 협조 : 농검, 농협
 - 교육내용 : 지원대상자의 의무, 규격출하의 필요성, 자율검사방법, 사업추진체계 등
- 시장·군수는 규격출하사업 내용을 생산자조직에 적극 홍보

(3) 규격출하 지도·점검 및 평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조직별 지원상황을 보고 받아 사업지도에 활용
- 농검 출장소장과 농협시·군지부장은 지원대상 조직에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규격출하를 지도하고 출하품에 대해 점검 실시
- 농검 출장소장은 소비지 품질평가 결과를 시·군, 농협, 출하조직에 수시 통보
 - 시·군, 농협 시·군부장은 소비지 품질평가를 읍·면 또는 지역농협에 통보하여 사업지도에 활용토록 조치
- 농검 출장소장과 농협 시·군지부장은 지원대상 조직을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관리
- 규격출하실적, 점검·평가결과 및 조직의 활동상황은 차년도 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결정시 반영

(4) 제재사항

- 시장·군수가 생산자조직별 사업량 결정시 농검의 평가분류에 의한 차등지원 반영이 미흡하거나, 반영치 않았을 경우 차년도 지원예산에서 감액 조치하고, 이를 우수 시·도, 시·군에 추가 배정조치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상품목 또는 사업량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장·군수가 농검출장소장과 농협 시·군지부장이 합의하여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영농조합법인은 개별농가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나. 보 고

- (1)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확정결과 및 지원계획을 당년 1월 31일까지 농검 출장소에 통보
- (2) 시·도지사는 반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 보조금 정산실적을 익년 1월 20일까지 농검 본소에 제출

다. 기 타

- (1)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도지사(시장·군수)가 농검지소장(출장 소장), 농협지역본부장(시·군지부장)과 합의하여 시행
- (2) 시장·군수는 각종 특산품전, 기획전 등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에 표준규격품이 출품되도록 최대한 노력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

나. 신청자격

- 농산물을 규격출하하는 생산자조직(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 ※ 농협은 포장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선과장 등 선별포장시설을 보유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다. 신청절차

- 규격출하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은 관할 시·군이 선정한 지원대상품목 (12개) 범위내에서 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규격출하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 ※곡류는 지원대상 품목이 아님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 지원신청서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규격출하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마.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99 대상자 선정방법과 같음

○ 우선순위

- ① 포장화율이 낮은 무, 배추,마늘,파 등 우선지원품목(5개 품목) 출하 조직과 포장센타를 운영하는 조직은 평가결과 차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② 위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농검과 농협이 선정기준에 따라 조직의 규격 출하 활동을 평가하여 분류한 상위등급 조직부터 차등 지원

○ 선정절차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농검에 통보
- 농검은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평가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분류, 시·군에 통보
- 시·군은 농검, 농협과 합의하여 사업량결정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
시·군은 농검·농협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음

규격출하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 조직명) :

2. 현 황

조직 현 황	조직명		전화번호			
	대표자주소·성명	(인)				
	조직 결성 일시		조직원수(농가)			
재 배 현 황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출하시기	
		ha	톤			
전 년 도 지 원 · 출 하 실 적	지원실적	포장재비보조	천원	용 자	천원	
	출 하 실 적					
	계	규격출하량	품질인증량		일반출하량	
	톤	톤	톤		톤	
	상 표 명					
	주요출하처					
공동 유통 시설 보유 현황	집 하 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공동 시설및장비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

※ 유통시설은 처리능력(저장능력, 1일처리능력 등)을 () 내서

3. 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사업신청)

구 분	품 목	포장재 종 류	단 량	단 가	사업량	포장재비 보조 사업비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kg	원	매	원			

○ 출하계획

품 목	생산량	출 하 량				주출하처	출하시기
		계	규격출하	품질인증	일반출하		
	톤						

○ 출하방법별 계획량

- 선별·포장방법

품 목	농가별 포장	공동작업장에서 선별포장	선과(별)장 이용
	톤	톤	톤

- 수송방법별

품 목	농가별 수송	조직공동 수송	농협계통 수송
	톤	톤	톤

4.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지원년도, 사업비 등

○ 기타 특기사항

확인자 : 시·군·구 읍면동사무소 성명 : (인)

II. 포장개선 시범사업

1. 목 적

- 대부분 비포장으로 출하되고 있는 무·배추·수박 등의 규격포장출하를 유도하여 소비지 쓰레기발생 방지 및 도매시장 환경개선
- 상품성 향상으로 유통마진 축소 및 공정거래 실현
- 하역기계화 실현으로 물류비 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비포장형태로 주로 거래되고 있는 배추, 무 등에 대한 포장재비 및 파렛트 풀 이용료 보조지원
- 플라스틱 포장시범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사업 실시
- 포장출하뿐만 아니라, 파렛트 적재출하를 유도하여 물류비용 절감

3. 근거법령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농수산물 표준출하규격화)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8조(규격화의 촉진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 포장재비·파렛트 풀 이용료 지원 >

		'92-'96	'97	'98	'99 예산(안)
사업량		천매 -	31,500	7,500	12,000
사업비	계	백만원 -	18,900	4,500	8,400
	보조 용자	-	6,300	1,500	6,000
	지방비	-	4,725	1,125	1,200
	자부담	-	7,875	1,875	1,200

< 플라스틱 상자 구입지원 >

		'92-'96	'97	'98	'99 예산(안)
사업량		만개 20	20	20	40
사업비	계	백만원 1,100	1,100	1,100	2,200
	보조 용자	660	660	550	1,100
	지방비	-	-	-	-
	자부담	440	440	550	1,100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지원배경

-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산지생산자조직에 대해 포장재비를 지원함으로써 규격출하를 촉진하고 있으나, '97년부터 배추, 수박 등 포장화율이 저조한 품목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등에서 포장재비 지원을 통해 포장개선을 도모하고, 기계화 하역을 촉진
- '98까지는 가락·구리·안양 도매시장에 국한하여 시행하였으나, '99년부터는 전국의 공영도매시장 및 물류센타로 확대
- 플라스틱상자 포장시범사업은 배추, 무 등을 산지에서 선별, 플라스틱 규격상자에 포장하여 출하토록 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당초 '96~'98 기간중 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었으나, 농산물 직거래 물량 및 사업 수요증가로 '99년까지 연장 추진

○ 지원대상자

- 포장재비 지원 : 도매시장 및 물류센타에 배추(얼갈이배추 제외), 무(열무 제외), 양배추, 파, 수박(조롱수박 제외), 마늘을 표준 규격에 포장(골판지상자) 출하하는 자
- 파렛트풀 이용료지원 : 표준파렛트(다단식 목재박스, 매쉬파렛트)에 적재 출하하는 자
- 플라스틱상자 구입지원 : 무, 배추, 참외, 오이, 사과, 화훼 등 농산물을 표준규격 플라스틱 상자에 포장하여 대량 수요자와 직거래하는 농협 및 회원조합

○ 지원조건

- 포장재비 및 파렛트풀 이용료 지원(사업단가의 일부를 정액 지원)
 - 골판지(8-10kg용) : 600원/매(국고 500, 지방비 100)
 - 다단식 목재박스(110×110×20cm) : 534원/매(국고 445, 지방비 89)
 - 매쉬파렛트(110×110cm) : 3,000원/매(국고 2,500, 지방비 500)
 - ※ 품목별, 규격별 지원단가는 별도 시행
- 플라스틱상자 구입지원(농검이 고시한 표준규격에 한하여 지원)
 - 사업단가 : 5,500원/매
 -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나. '99 지원계획(안)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천매 12,400	백만원 10,600	7,100	7,100	-	1,200	2,300
○ 포장재비·파렛트풀 이용료 지원	12,000	8,400	6,000	6,000	-	1,200	1,200
○ 플라스틱상자 구입지원	400	2,200	1,100	1,100	-	-	1,100

※ 포장재비·파렛트 풀 이용료 지원사업비 배정내역(시·도별, 품목별) : 별첨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 (Tel) 02) 504-9411~2, 500-2671~2
- 시·도 : 농산물유통과(광역시는 농정과)
- 시·군 : 산업과(유통특작과, 지역경제과)
- 농협중앙회 : 유통조성과(02-397-5713)

다. 사업시행

- 사업시행 계획의 작성 및 변경
 - 포장재비·파렛트 풀 이용료 지원
 - 해당 도매시장관리공사(사무소)와 농협중앙회장은 각 도매시장 및 물류센타에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품목별, 분기별 출하물량과 예산액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각 도매시장의 관할시에 제출
 - 각 도매시장 및 물류센타 관할시는 도매시장관리공사(또는 사무소), 농협중앙회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거 분기별 소요자금 배정
 - 각 도매시장 및 물류센타 관할시는 사업계획 수립후 품목간 지원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 승인요청
 - 시·도지사는 시·도별 사업비 총액 범위내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

- 플라스틱 상자 구입지원

- 농협중앙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보고후 사업시행
- 당초 사업계획중 수량과 사업비의 변경은 농림부와 협의하고, 기타 사항은 자체변경 시행

○ 사업비 집행방법

- 포장재비 지원

< 공영도매시장 >

- 출하자가 배추 등을 포장출하하여 도매시장 해당법인에 상장하면 해당 법인은 품목별, 규격별 포장재 수량을 확인한 후 포장재비 지원 금액을 경락대금과 같이 지급한 후 해당법인은 확인서(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도매시장관리공사(또는 사무소)에 지급요청
- 관할 도매시장관리공사(또는 사무소)는 도매법인의 포장재비 및 파렛트폴 이용료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에 자금 집행
- 도매시장관리공사(또는 사무소)는 포장재비 지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집행하여야 함
- 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포장재비를 우선 지불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음

< 물류센터 >

- 출하자(산지농협)는 규격상자 조제의뢰서, 견적서 등 규격출하 증빙 서류와 포장재비 및 파렛트폴 이용료 청구서(별지제2호서식)를 물류센터에 제출
- 물류센터는 입하분에 대해 증빙서류와 현품을 대사확인
- 출하자는 출하물량 확인서(대금정산서)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장에게 포장재비 지급 요청
- 농협중앙회는 출하자(산지농협)의 포장재비 청구서에 의거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에 자금 집행(환취결)
- 농협중앙회는 포장재비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함

- 플라스틱 상자 구입지원

-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제작 공급하고 농림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추진일정

- 포장재비 지원

- '98.12.15까지 : 관할시·도에 사업계획서 제출
- '99. 1. 1부터 : 사업시행

- 플라스틱 상자

- '99. 1월말까지 : 농협중앙회는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
- '99. 2월말까지 : 입찰공고 등 플라스틱상자 제작
- '99. 4월말까지 : 플라스틱상자 회원조합에 공급 완료

라. 기타사항

- 수박은 포장출하가 안되고 있는 기간(5. 1-9.30까지)만 시행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 실시
 - 포장재 자금집행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고, 출하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며, 해당법인 및 물류센타는 책임을 규명하여 농림사업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
-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플 라 스틱 상자	구입일로부터 3년	사후관리기간중 사업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는 농협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	관 리 대 장 비치

나. 보고사항

- 사업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 1.31까지
- 사업추진상황(별지 제3호서식)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 보조금 정산실적 : 익년 1월 20일까지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포장재비 및 파렛트 풀 이용료 지원 : '99년과 동일하게 시행

나. 플라스틱 포장사업 : 2000년부터 지원중단

【 별 첨 】

포장재비·파렛트 폴 이용료 지원사업비 배정내역(안)

(단위 : 백만원)

		계	배추	무	양배추	파	마늘	수박
서울	가락도매시장	3,674	1,714	596	383	601	311	69
	양재물류센터	427	227	79	19	46	14	42
	창동물류센터	165	70	13	7	19	7	49
	소 계	4,266	2,011	688	409	666	332	160
부산	임궁동도매시장	269	129	41	16	26	48	9
대구	북부도매시장	307	157	54	25	31	26	14
인천	구월동도매시장	177	77	30	7	41	17	5
광주	각화동도매시장	157	54	31	9	38	17	8
대전	오정동도매시장	195	74	30	11	48	27	5
울산	울산도매시장	66	22	9	1	7	23	4
경기	수원도매시장	67	27	9	2	15	11	3
	안양도매시장	71	21	11	3	19	12	5
	구리도매시장	103	35	12	3	10	35	8
	안산도매시장	31	7	4	1	4	14	1
	소 계	272	90	36	9	48	72	17

		계	배추	무	양배추	파	마늘	수박
강원	춘천 도매시장	4	2	1	-	-	-	1
충북	청주 도매시장	64	22	8	2	16	9	7
	충주 도매시장	8	2	1	1	2	1	1
	청주 물류센터	63	22	8	2	15	9	7
	소계	135	46	17	5	33	19	15
충남	천안 도매시장	30	11	10	1	4	1	3
전북	전주 도매시장	39	15	5	2	7	6	4
	익산 도매시장	36	20	5	1	4	3	3
	소계	75	35	10	3	11	9	7
경남	창원 도매시장	47	22	9	2	7	3	4
합계		6,000	2,730	966	498	960	594	252

【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개선 시범사업 지원계획 보고

시장별	세부사업별	단가	사업량	사업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담
	1. 포장재비지원 ○ 배추 ○ 무 ○ 양배추 ○ 파 ○ 마늘 ○ 수박 소 계						
	2. 파렛트폴 이용료 지원 ○ 배추 ○ 무 ○ 파 ○ 마늘 ○ 수박 소 계						
	계						

주) 단가는 제5항. <사업개요>. “가”호 「지원조건」의 기준단가 적용

【 별지 제2호 서식 】

포장재비(파렛트풀 이용료) 청구서

□ 청구자

○ 성명(법인 또는 조합명) :

○ 주소 : (전화번호)

□ 출하현황

○ 품목 :

○ 출하일자 :

○ 포장형태 :

□ 청구내역

(단위 : 원)

일련번호	운송차량 (차량번호)	생산자 (출하자)	중량규격	수 량	지원단가	청구금액
계						

※ 청구자가 법인인 경우 생산자란에 출하자 성명을 기재

위와 같이 포장재비(파렛트풀 이용료)를 청구합니다.

청구자 성명 (인)

【 별지 제3호 서식 】

포장개선 시범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사업진도

품목별	사업량(톤)			사업비 집행 (천원)					
	계획	실적	진도 (%)	계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 시장명 >									
·									
·									
·									
·									
·									
소 계									
< 시장명 >									
·									
·									
·									
·									
·									
계									

2.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3. 기타 참고사항

24 생산자조직 육성(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 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김영만, 농업 사무관 박백화)입니다.

1. 목 적

-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산지에서의 규격화·등급화를 통한 공동규격 출하를 촉진하고, 생산·출하 자율조정을 통한 수급안정을 기함으로써 산지유통개선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산지 생산·유통 전문화 체제 구축
- 생산 및 수급조절의 자율적인 추진
- 규격화 및 공동출하 촉진으로 유통효율 증진
-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 강화로 사업성과 확보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7조(기금의 운용)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8조(규격화의 촉진 등)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농수산물의표준규격화 등)

4. 연도별 지원 계획

(단위: 백만원)

	계	'97까지	'98	'99예산(안)
○ 사업비	1,164,115	427,590	350,450	386,075
- 융자	923,702	322,450	292,192	309,060
- 자부담	240,413	105,140	58,258	77,015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경

- '98년까지는 농산물 규격출하 촉진자금지원, 생산자 유통지원사업 및 품목별 생산자조직육성지원 실시를 통해 산지유통개선을 도모
- '99년부터는 각종 산지유통관련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주산지 중심, 전략품목에 대해 집중지원함으로써 투자효율성을 제고

2) 대상품목

○ 농협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취급품목(31개 품목)

- 전국협의회 품목(15개 품목)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유자, 감귤, 약용, 단감, 참다래, 화훼, 밤, 버섯, 대과, 생강, 시설원예

- 전국협의회 미결성품목(표준출하규격 제정품목 : 16개 품목)

· 무, 배추, 당근, 오이, 토마토, 참외, 호박, 수박, 딸기, 상추, 풋고추, 감자, 고구마

※ 지역특성상 위 13개 품목(전국협의회 미결성품목)외에 지역특화 품목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 농검 및 농협이 합의하여 시·군별로 3개 품목이내에서 추가선정 가능

○ 삼협중앙회 취급품목(1개 품목) : 인삼

3) '99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지원계획(안)

4)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준	지원기간	지원금리		비 고
			대여금리	대출금리	
○ 전국조직 (농협중앙회 회원 조직, 삼협중앙회 회원조직)	용 자 80% 자부담 20%	12월이내	4.5%	5.0%	○ 차등금리 적용 (전국협의회 회원조직) - 최우수 : 1.0%p이하 - 우 수 : 0.5%p이하
○ 단위조직 등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인)	용 자 80% 자부담 20%	12월이내	3.0%	5.0%	

5) 사업별 지원대상

< 인삼외 품목 >

구 분	사 업 내 용	지 원 대 상
○ 전국협의회 품목	○ 구매지원 자금 ○ 규격출하 선도금, 출하조절자금, 유통 설비 및 자재구입비 - 단, 시설원예는 에너지 절약형 생산시설 설치비에 한함 ※ 당해년도 전국생산자조직 중점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지정된 용도에서 ±20%를 사업 자가 자율적으로 조정가능	○ 품목별 전국협의회 ○ 협의회 회원조직 및 소속 기초 생산자조직
○ 전국 협 의 회 미결성품목	○ 공동규격출하촉진 자금	○ 전국협의회 비회원소속 작목반(회)·영농조합법인

< 인 삼 >

사업내용	지 원 대 상
○ 수매지원사업	○ 제조·저장시설을 보유한 삼협회원조합, 인삼재배농가, 인삼영농조합법인, 인삼제조업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자로서 인삼류의 수출실적이 있거나, 당해년도 수출계획이 있는 인삼가공수출업체
○ 생산장려사업	○ 인삼산업법에 의거 경작지정을 받거나, 경작신고를 한 농가로서 4-5년근 삼포에서 수확을 하지 않고 5-6년까지 재배하는 경작농가

나. '99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기금대출 취급기관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용자	자부담	
계	32품목	386,075	309,060	77,015	
○ 농협중앙회	30	345,875	276,700	69,175	
○ 삼협중앙회	1	35,450	28,360	7,090	
○ 농수산물유통공사	1	3,750	3,000	750	
○ 인센티브	1	1,000	1,0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유통정책과 (02-504-9411~2)

나.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02-397-5724)
- 삼협중앙회 (02-201-3304)
- 농수산물유통공사 (02-794-5087)

다. 대상자 선정

< 인삼의 품목 >

구 분	선 정 권 자	선 정 절 차
○ 전국협의회 품목 ○ 전국협의회 미결성품목	기금대출 취급기관장 기금대출 취급기관장	○ 품목별 전국협의회 회장과 협의선정 ○ 작목반 등 기초생산자 조직은 농협에 사업신청 ○ 농협주관으로 농검과 합동 평가한 결과에 따라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신청내역 및 평가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농림부와 농협이 협의하여 품목별, 조직별 자금배정 - 산지유통 시범농협 소속 기초생산자조직은 평가결과 차상위 등급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자금배정 결과에 의하여 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

< 인 삼 >

선정권자	선 정 절 차
기금대출취급 기관장	○ 사업대상자는 삼협중앙회(회원조합)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 삼협중앙회장은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 순위에 의거 사업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 - 회원조합은 인삼 가공수출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라. 선정기준

1) 전국협의회 구성 품목

< 과실, 채소 >

- ① 품목별 생산자조직 평가결과 우수 조직
※ 산지유통 시범농협은 대상품목별 단위조직평가결과 차상위등급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 ② 재배면적 비중이 높거나, 우수사례가 있는 조직
- ③ 저장고, 선과장 등의 유통시설 또는 가공시설을 갖춘 규모화된 조직

< 화 훼 >

- ① 품목별 생산자조직 평가결과 우수 조직
- ※ 산지유통 시범농협은 대상품목별 단위조직평가결과 차상위등급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 ② 공영도매시장 출하실적이 있는 조직
- ③ 재배면적 비율이 높거나 우수사례가 있는 조직

< 약 용 >

- ① 품목별 생산자조직 평가결과 우수 조직
- ② 한약재 공동생산·공동출하가 우수 조직
- ③ 생약조제 시설운영 및 저장고 보유조직
- ④ 재배면적 비율이 높거나 우수사례가 있는 조직

< 버 섯 >

- ① 품목별 생산자조직 평가결과 우수 조직
- ※ 산지유통 시범농협은 대상품목별 단위조직평가결과 차상위등급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 ② 공영도매시장 출하실적이 있는 조직
- ③ 재배면적 비율이 높거나 우수사례가 있는 조직

2) 전국협의회 미결성 품목

- 농협의 작목반 육성 및 지도·지원 준칙에 의해 평가하고, 우수조직 위주로 차등 지원

< 조직 등급별 지원내용 >

등 급		지 원 내 용
최우수조직	85점 이상	○ 신청금액의 90%이상 반영
우수조직	70-84점	○ 최우수조직에 우선 지원후 잔여자금이 있을 경우 신청금액의 70%-50%이내에서 차등반영
일반조직	69점 이하	○ 최우수조직 및 우수조직에 우선 지원후 잔여자금이 있을 경우 지원

3) 인 삼

- ① 삼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 ② 인삼류 수출실적이 있거나, 당해년도 수출계획이 있는 인삼생산자조직 또는 법인
- ③ 인삼산업법에 의거 5년근 이상 생산장려사업 추진 조직

마.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실시 기관은 본 요령 및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대상사업별·지원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사업지원 기관에 보고하고 사업실시 안내

2) 시행절차

- 농림부는 회계년도 개시 6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품목별 사업지원 기관 및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에 시달
-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실시 30일전까지 사업실시 계획과 대상자선정 결과를 개별 품목과에 보고하고, 개별 품목과는 품목별 운영 계획(수매지원, 출하조절 등)을 첨부 사업지원기관에 사업지원 요청
- 사업실시기관은 사업별 사업자 확정후 세부사업 지침서를 작성하여 사업지원기관 및 개별품목 담당과에 보고
-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과에 예산한도액 배정요청
-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은 예산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도액을 배정하고(사업지원기관에 배정결과 보고), 사업자금과에 자금대여 신청
-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실행 및 사업시행
 - 지원금액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및 물량에 대하여 기금대출취급기관과 사업자간에 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지원
 - ※ 영농조합법인은 개별농가별로 지원금 사용불가
 -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의 경우 최우수조직은 농가당 300만원이상, 우수조직은 1백만원이상 지원하되, 농가간 배분은 조직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단, 자율검사원은 3백만원 우선용자 가능
 -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정부 차입일로부터 40일이내에 농가에 지원 완료

3) 사업계획 변경

-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의 경우는 조직별 자금배정 이후 조직의 사업포기 등으로 대상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역농협별로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변경지원 가능
 - 대상자 변경시에는 변경내역을 농검출장소장에게 통보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수행여부 확인 및 지도·감독
- 규격출하 지도·점검 및 평가
 - 농검출장소장은 지원대상 조직에 전담 검사원을 지정하여 자율검사를 지도하고 출하품에 대해 점검 실시
 - 농검 출장소장은 소비자 품질평가 결과를 시·군 및 출하조직에 수시 통보
 - 농검 출장소장은 지원대상 조직을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 규격출하실적, 점검·평가결과 및 조직의 활동상황은 차년도 대상자 선정 및 조직별 지원규모 책정시 반영

나. 제 재

- 제재대상
 - 대출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의 실적이 사업의무액에 미달한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제재내용
 - 대출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는 대출금을 지체없이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 및 규격출하선도금의 경우 사업자가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고시한 규격이 아닌 포장규격을 사용한 경우 자금지원 중단
 - 단, 유통능률향상, 직거래 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로 농검출장소장과 농협 시·군지부장이 합의한 경우와 농산물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약정 불이행시는 소정의 위약금을 징수하고 그 결과를 계통보고 하여야 하며,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의 경우는 농검출장소장에게 통보
- ※ 약정 물량과 금액중 한가지가 이행될 경우에는 약정이행으로 간주

-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 및 규격출하선도금을 지원받는 사업자가 재해 발생 및 수확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약정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농협 시·군 지부장이 농검출장소장과 협의하여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음

다. 보고 기타

- 사업자(매분기 익월 5일) → 기금대출 취급기관(매분기 익월 25일) → 사업지원 기관
- 단,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은 자금지원 및 사업완료후 30일 이내에 농림부에 보고

라. 평 가

1) 전국협의회사업 운영평가

- 품목별 생산자조직육성사업 수행조직의 농안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평가 실시
- 평가주관 : 농림부
- 평가시기 : 매년 상반기
- 평 가 반 : 농림부, 농협중앙회, 삼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 평가결과 반영
 - 품목별 우수조직으로 선정시 지원규모 확대, 지원금리 인하
 - 품목 부류별 최상위조직으로 선정시 인센티브로 1억원 2년간 무이자 융자(용도 : 농안사업 지원)
 - 자금의 미운용이나 목적외 사용 등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한 조직에 대해서는 지원규모 축소, 인센티브 지원대상에서 배제

2) 작목반 운영평가

- 평가주관 : 농협중앙회
- 평가시기 : 매년 10월중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 3-5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장 : 시군지부 담당차장
 - 평가위원 : 위원장, 시·군지부 담당과장, 농검관계관(이상 필수위원)
행정 및 지도소 관계관(이상 위촉위원)
- 평가결과 반영
 -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조직등급별로 차등 지원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실시기관장

나. 신청자격 : 전국협의회 회원조직,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삼협회원조합,인삼영농조합법인, 인삼재배농가

다. 신청절차

- 전국협의회 회원조직, 삼협회원조합 → 기금대출취급기관(농협중앙회, 삼협중앙회, 유통공사) → 사업지원기관(유통정책과)
- 작목반, 인삼재배농가, 영농조합법인, 인삼가공수출업체 → 관할 농·삼협회원 조합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

라. 구비서류 : '98년 사업실적 및 2000년 계획

마. 대상자선정

- 선정권자 : 사업실시 기관장
- 우선순위

< 전국협의회 품목 >

① '98년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평가 결과 우수조직

※ 산지유통 시범농협은 대상품목별 단위조직평가결과 차상위등급의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② 품목별 전문조합, 영농조합법인

③ 전국생산자조직 신규 회원

④ 기타 품목별 전국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조직

※ 단, 농협중앙회 지원조직은 품목별 전국협의회 가입조직에 한함

< 전국협의회 미결성품목 >

- 작목반 운영평가에 의해 분류한 상위등급부터 우선지원

【 별첨 】

'99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품목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품목(기금대출취급기관)	용자 지원액(안)	비 고
1. 전국협의회 구성품목	159,700	
○ 농협중앙회	155,700	
- 사 과	43,000	
- 배	16,000	
- 복 송 아	7,000	
- 포 도	12,000	
- 유 자	2,700	
- 감 굴	10,000	
- 단 감	7,000	
- 참 다 래	1,000	
- 약 용	5,000	
- 버 섯	6,000	
- 화 훼	28,000	
- 밤	7,000	
- 대 파	4,000	
- 생 강	2,000	
- 시설원예	5,000	
○ 유통공사	3,000	
- 참 다 래	3,000	
○ 인센티브	1,000	
2. 전국협의회 미결성품목 (농협중앙회)	121,000	
3. 인삼(삼협중앙회)	28,360	
합 계	309,060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 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김영만, 행정 사무관 박명수)입니다.

I.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 및 집하장 시설보완

1. 목 적

-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 촉진을 위해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및 운영지원을 통해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포장센터의 역할을 선별포장에서 벗어나 공동규격출하, 유통정보수집전파, 계약재배, 브랜드개발 등 산지의 종합적인 농산물 유통거점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
 - 농산물포장센터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 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 평가하여 익년도 정책사업 지원에 반영
- 생산자 조직의 유통사업 능력을 배양하여 이들을 통한 산지 유통 개선 도모
- 산지유통센터 건설방식의 다양화로 활용도 제고
 - 대규모 포장센터건설 촉진을 위해 생산자조직 연합출하 포장센터 건립을 유도하고 사업비 지원 우대
 - “공공소유, 민간운영”의 포장센터방식 도입
- 산지유통인 등 민간전문 유통업체에게도 포장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민간 유통업체에 의한 규격농산물 출하촉진
- 기설집하장을 소규모 포장센터로 육성하여 시설활용도 제고
- 점진적으로 보조를 용자로 전환, 책임경영의식 고취 및 자생력 배양
 - 2001년 이후 보조지원은 전액 용자로 전환 : ('98) 보조50, 용자30 → ('99-2000) 보조40, 용자40 → (01-02) 용자80, 자부담20%)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4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41조의2 제1항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97까지	'98	'99	'00	'01~'02
산지 유통 센터 건설	사업량	220	78	34	39	35	34
	(사업비)	(202,211)	(60,011)	(23,800)	(34,000)	(38,200)	(46,200)
	- 국 고	121,109	26,249	14,280	21,300	24,720	34,560
	· 보조	66,969	22,289	7,140	7,700	13,040	16,800
	· 용자	54,140	3,960	7,140	13,600	11,680	17,760
	- 지방비	41,438	14,738	4,760	6,500	8,240	7,200
- 자부담	39,664	19,024	4,760	6,200	5,240	4,440	
생 산자 조직	사업량	200	78	34	35	29	24
	(사업비)	(154,211)	(60,011)	(23,800)	(2,800)	(23,200)	(19,200)
	- 국 고	86,609	26,249	14,280	16,800	13,920	15,360
	· 보조	39,669	22,289	7,140	5,600	4,640	-
	· 용자	49,640	3,960	7,140	11,200	9,280	15,360
	- 지방비	29,738	14,738	4,760	5,600	4,640	-
- 자부담	37,864	19,024	4,760	5,600	4,640	3,840	
지자 체	사업량	14	(-)	(-)	2	4	8
	(사업비)	(39,000)	-	-	(3,000)	(12,000)	(24,000)
	- 국고보조	27,300	-	-	2,100	8,400	16,800
	- 지방비	11,700	-	-	900	3,600	7,200
민간 업체	사업량	6	(-)	(-)	2	2	2
	(사업비)	(9,000)	-	-	(3,000)	(3,000)	(3,000)
	- 국고용자	7,200	-	-	2,400	2,400	2,400
	- 자부담	1,800	-	-	600	600	6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7까지	'98	'99 (예산안)	2000	2001~ 2004
집하장 시설보완	사 업 량	100개소	269	50	30	160	491
	계	87,766	14,666	5,000	3,000	16,000	49,100
	국고보조	11,167	5,867	1,500	600	3,200	-
	국고융자	51,313	2,933	1,500	1,200	6,400	39,280
	지방교부금	7,733	2,933	1,000	600	3,200	-
	자 담	17,553	2,933	1,000	600	3,200	9,820
포장센타 원료매취 자금	사 업 량	646개소	-	103	132	166	245
	계	219,508	-	27,883	37,500	62,250	91,875
	국고보조	-	-	-	-	-	-
	국고융자	175,606	-	22,306	30,000	49,800	73,500
	지방교부금	-	-	-	-	-	-
	자 담	43,902	-	5,577	7,500	12,450	18,375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설명

1) 추진경위

- '94년 수립한 유통개혁 대책중 산지유통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으로 추진
- 시설간이집하장이 계절적요인 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함에 따라 '97부터 시설을 보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 창출 및 유통현대화 촉진
- 기 지원된 시설(청과물종합유통시설, 청과물종합처리장, 농산물포장센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농안기금을 재원으로 '98년부터 원료매취자금 융자 지원
- '98년 수립한 유통개혁대책의 일환으로 포장센타 건설방식 다양화
 - '99부터 공공소유민간운영, 산지유통인등 민간전문 유통업체에도 포장센타 설치지원

2) 지원대상자

(가) 농산물포장센터

- 생산자조직 : 농협지역조합, 전문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법인화된 생산자 조직
- ※ 미곡생산자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공공소유, 민간운영) : 시·도 또는 시·군
- 민간유통업체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이하 농안법) 제17조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 2년이상 농산물산지유통업에 종사한 농안법에 의거 등록된 수집상
 - 농안법 27조의2에 의하여 등록된 수집상이 설립한 상법 제170조의 회사(합명, 합자, 주식, 유한)
 - 포장센터 사업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영점형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10억원이상의 법인
 - 물류센터 사업자, 저온저장업체

(나) 집하장시설보완

- 국고보조로 설치된 시설 집하장 및 지자체, 농협자체로 설치한 집하장 중 100평 규모 이상으로서 소규모 포장센터로 발전이 가능한 시설운영 생산자 조직
- 조직의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규격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 인근지역에 포장센터, 청과물종합유통시설 등 청과물종합처리장이 있어도 물량확보에 애로가 없는 조직
- 미곡생산자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수산물 집하장은 농림부지원 수산물 집하장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다) 포장센터 원료매취자금

- '92-'93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설된 청과물종합유통시설운영 조직
- '95-'96년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건설된 청과물종합처리장 운영조직
- '95년 이후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설된 농산물포장센터 운영조직

3) 시설별 지원규모 및 지원단가

(가) 농산물포장센터

시 설 명	단가	비 고
< 건물 > 선별(과)시설	백만원 1/평	○ 수송차량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설계 ○ 선과시설의 1면은 수송차량의 적재함과 창고바닥의 높이가 같도록 Deck 시설 설치
집하시설	1/평	○ 수송차량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설계하고, 1면은 Deck 시설
저온저장	2.7/평	○ 예냉시설과 저온저장시설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준설계도에 근거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설계
예냉시설	3.5/평	○ 예냉시설은 차압통풍식으로 하되 저온저장고 면적의 25% 이상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조절
관리사무소 일반창고등	1/평	
< 기계류 > 선별기, 포장기, 콘베어등	-	○ 기종별 구입가격 기준
< 장비류 > 팔레트,지게차,수송차량, 운반상자 등	-	○ 기종별 구입가격 기준

주) · 시설별 규모는 실정에 맞게 조정

- 지원기준단가를 초과할 경우 객관적인 단가 산출내역 첨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예시되지 않는 시설장비도 가능(객관적인 단가 산출내역 첨부)
- 예냉시설과 저온저장시설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준설계도에 근거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역여건에 맞도록 작성
- 사업비한도액(없음) : 사업자가 사업능력 및 입지조건에 따라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 생산자조직의 부지구입은 자부담으로 하되 사업비에는 포함하지 않음
 - 지자체 및 민간유통업체는 1,000평까지만 지원,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
- 지원조건
 - 생산자조직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교부금 20%, 자부담 20%
 - 민간유통업체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지방자치단체 : 국고보조 70, 지방비(순수지방비) 30%

※ 지방 재정여건이 열악하거나 지역농협 또는 민간유통업체가 적극적 관심이 있을 경우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 허용

- 국비 70%, 농협 또는 민간유통업체가 30%를 지자체에 임차보증금 또는 선납금을 납부하고 일정기간 사용권(무상) 획득
- 국비 70%, 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민간유통업체 등이 콘소시움을 결성하고 일정액을 분담한 후 일정기간 사용권 허용 등

※ 예산상 단가 (총사업비 기준)

- 생산자조직 : 개소당 800백만원
- 지자체 및 민간유통업체 1,500백만원

○ 지원시설의 종류

- 선별시설, 집하시설,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선과기, 세척기, 자동운반기 등 부대시설비 지원

(나) 집하장시설 보완

○ 시설·기계·장비류 지원기준

구 분	단위	단가(원)	성능수준	비 고
○저온시설	평	2,700,000	-	집하장박설치(동일부지)
○예냉시설	“	3,500,000	-	“ (”)
○선별기	대	4,000,000	10,000개/시간	중량선별기
○제함기	“	4,500,000	10상자/분	
○봉합기	“	2,000,000	20상자/분	
○결속기	“	1,500,000	18밴딩/분	
○콘베이어	개	2,500,000	600mm×6m	상하차용
○운반상자	“	2,300	48 l /용량	
○파렛트	“	27,000	1100×1100×140mm	PE재질

- 주) 1. 농가보급형 국산제품으로 반자동 기기(규모는 중규모)를 기준으로 가격 설정
 2. 예시되지 않은 기계·장비는 예시된 기기를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
 3. 집하장 건물내에 예냉 및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도별로 단가산출 적용

○ 집하장 건물내 예냉,저온저장시설을 할 경우 집하장 규모가 100평이하는 20평이내, 200평이하는 30평이내로 제한

※ 간이집하장 외부에 별도 건립시는 100평 이하는 30평, 200평이하는 50평까지 가능

- 예냉시설과 저온저장 시설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준설계도에 근거 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역여건에 맞도록 작성
- 농산물 생산량, 전년도 규격출하량 등을 감안할 때 제시된 기준표상의 기계·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후 사업추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교부금 20, 자부담 20%

나. '99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세)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 농산물포장센터건설	39	34,000	21,300	7,700	13,600	6,500	6,200
- 생산자조직	35	28,000	16,800	5,600	11,200	5,600	5,600
- 지방자치단체 ¹⁾	2	3,000	2,100	2,100	-	900	-
- 민간유통업체	2	3,000	2,400	-	2,400	-	600
○ 집하장시설보완	30	3,000	1,800	600	1,200	600	600
○ 포장센터원료자금	132	37,500	30,000	-	30,000	-	7,500
- 농 협	70	19,880	15,904		15,904		3,976
- 영농조합법인	62	17,620	14,096		14,096		3,524

- ※ 1, 농산물 포장센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는 순수 지방비임
 2, 용자금은 연리 6.5% 3년거치 7년상환
 3, 포장센터 원료매취자금은 연리 6.5% 1년이내 상환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농산물포장센터

- '99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은 “제6항” 2000년도 사업안내 참조
- '99 사업신청기간(추가신청)
 - 생산자조직, 지방자치단체 : '98.11.30까지(읍·면·동→시·군), '98.12.10까지(시·군→시·도), '98.12.20까지(시·도→농림부)
 - 민간유통업체 : '98. 11.30까지(민간유통업체→농수산물유통공사), '98.12.10까지(농수산물유통공사→농림부)

□ 농산물포장센터 원료매취자금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협시군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나. 신청자격

-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설된 농산물포장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청과물종합유통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사업신청일 현재 개장되어 사업당해년도에 운영할 조직

다.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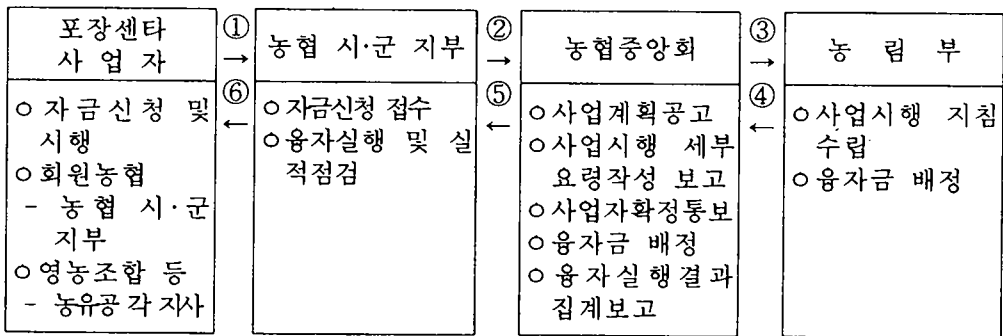
- 포장센터 원료매취 자금지원을 받고자하는 조직은 농협, 농유공의 사업시행 세부요령에 의거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농유공 지사 또는 농협 시·군지부에 신청
 - 회원조합→농협시·군지부, 영농조합법인 등 → 농유공 각 지사
 - * 농협, 농유공의 사업시행 세부요령은 사업시행전 사업대상자에게 별도 통지

라. 구비서류

- 사업담당기관(농협, 농유공)의 사업시행 세부요령에 의함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설된 포장센터·청과물종합처리장·청과물종합유통 시설로서 운영실적이 있거나 당해연도에 운영될 시설보유 조직
 - *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운영조직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규운영조직 예외)
- 우선순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수
- 선정절차



- ① 사업자금 신청
 - 회원농협 : 농협 각 시·군지부 - 영농조합법인 등 : 농유공 각 지사
- ② 자금신청접수
- ③ 사업시행세부요령 작성보고, 사업공고, 사업자 확정통보, 용자실행결과 집계보고
- ④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자금배정
- ⑤ 사업실시계획 시달, 용자금 배정, 사업자확정통보
- ⑥ 용자실행 및 실적 점검

<자금지원기준>

등 급	등 급 구 분	지 원 기 준	지 원 한 도
우 수	평점 80점 이상	신청금액의 80% 이내	15억원
양 호	평점 50점 이상 80점 미만	신청금액의 70% 이내	7억원
보 통 (신규사업자포함)	평점 50점 미만	신청금액의 60% 이내	3억원

※ 조직의 규모, 취급물량 다과에 따라 최고 한도액 조정지원 가능

※ 종합평가표 (별표 4)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 농산물포장센터 : 농림부
- 집하장시설보완 : 시·군·구(자치구)
- 사업기간 : 1년간 (1월~12월)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국 유통정책과(02-500-2671~2)

(시설자금)

- 시·도 : 농산물유통과(광역시는 농정과)
- 시·군·자치구 : 산업과 (유통특작과, 지역경제과)

(원료매취자금)

- 농협중앙회 : 유통종합지원부, 원예특작부
 - 도지역본부 : 유통가공과
- 농수산물유통공사 : 금융사업부, 투자지도부
 - 시·도지사 : 수출유통부

다. 사업시행

(1) 농산물포장센터 건설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생산자조직, 지방자치단체

- 사업자로 확정되면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도지사를 경유하여 사업당해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제출한다.

*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서 중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

└	지원 금액의 변동을 요하는 계획변경, 사업자 변경	: 장관 승인
└	지원 금액 범위내에서의 계획변경, 사업장 변경	: 시·도지사 승인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

- 민간유통업체

- 사업자로 확정되면 농림부장관이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는 반드시 기성고에 따라 재원별 부담비율에 맞춰 집행(정산시에는 보조금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선정 및 자금관리 철저)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농협(전문농협 포함)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경영체가 희망하는 용자 취급기관에 용자금 대여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도 관련규정에 따름

(2) 집하장시설보완

○ 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

- 지원금액범위 내에서의 계획변경, 사업자변경 : 시·도지사 승인
- 대표자변경, 기타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 사업비집행방법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대출 취급기관 또는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훈령 제875호) 제14조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부담액 집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조치

(3) 공통사항(포장센터 및 집하장 시설보완)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교부된 보조금은 조직 대표의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시공업체에 지급한다.
 - 기계 및 장비구입시에는 물품 구입 영수증 확인으로 정산가능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자로 확정 통보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착수를 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 사업자로서 자격을 취소하고, 사업자금지원을 회수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세부지원사업에 제시된 단가는 기준단가이므로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질 경우는 실제가격을 적용하되 초과된 경우는 계획사업비내에서 조정하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가 산출내역을 첨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회의비, 유인비, 출장비 등)를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여 집행토록 하여야 한다.

(4) 포장센터 원료 매취자금

- 지원대상품목 : 농산물포장센터에서 선별·포장출하하기 위하여 원료로 매취하는 농산물(곡물류 제외)
- 개소당 융자한도액 : 우수 1,500백만원, 양호 700, 보통이하 300
- 지원대상조직 등급구분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한 '97년도 운영실적과 운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
- 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125% 이상 출하
- 농협, 농유공은 본 지침 및 농안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세부요령을 작성하여 농림부에 보고
- 농협, 농유공은 예산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도액을 배정·통보(사업자확정통보)하고 농림부에 결과 보고(자체보고서식)

- 농협은 농림부에서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때에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대출 실행
 -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이 운영하는 포장센터, 청과물종합유통시설, 청과물종합처리장과 농협회원조합이 아닌 기타 조직에서 운영하는 포장센터도 농협 시·군 지부를 통하여 집행

라. 기타사항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 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 ※ 지원시설물이 법인의 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나 감리업체(관계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한다
- 예냉시설과 저온저장시설의 경우 건물은 설계감리업체, 기계설비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시행한다.
- 과잉 시설투자방지를 위한 상담 및 문의는 농산물유통공사 또는 농협에 공사 감리감독, 기술적인 문제 등은 농어촌진흥공사나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지원을 요청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건축)이 직접 담당하고, 저온저장고 및 예냉시설에 대한 검수확인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담당
 - 단,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감리업체의 감리를 받을 경우 시·군 공무원의 준공 검사는 전문기관의 감리로 가름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농산물포장센터건설, 집하장시설보완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의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
- 사업자가 본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고보조로 설치된 포장센타, 청과물종합유통시설, 청과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유통공사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과 공동으로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7년간		

※ 단, 포장센타 원료매취자금 용자에 한하여 동 포장센타의 담보제공은 가능

(2) 포장센타 원료매취자금

- 사업자는 일일매취실적을 기록관리하는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대금지급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나. 보고·기타

-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건설사업 추진실적(별지 제2-1호, 제2-2호서식)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98년도 반기별 시설 운영상황(별지 제3-1호, 제3-2호 서식)을 반기종료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대상 : '94년 이후 국고보조로 지원한 간이집하장 및 농산물포장센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별지 제5호 서식)를 시·도를 경유하여 익년 1월 20일 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승인사항이 있을시 그 처리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사항은 시도지사까지만 보고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설자금
 - 생산자조직, 지방자치단체 : 읍·면·동사무소
 - '99. 1. 31까지(신청자→읍·면→시·군), '99. 2. 28까지(시·군→시·도), '99. 3. 31까지(시도→농림부)
 - 민간유통업체(국고용자) : 농수산물유통공사(용자금신청관련 확인서 발부), 농협시·군지부(용자금교부)
- 매취자금 : 농협시군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나. 신청자격

(1) 농산물포장센터 건설

- 농협지역조합, 전문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산물포장센터를 건설하여 조직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하고자 하는 조직

< 신청불가(지원대상에서 제외) >

- 미곡생산자조직, 화훼생산자조직
- 품목별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공동시설, 산지유통시설, 산지종합처리시설을 지원 받았거나 2000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조직
 - 단 지역농협의 경우 품목의 경합이 없거나 이용조합원의 경제권역이 다르고 원료확보가 충분한 경우는 지원가능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신청자격
 - 총출자액이 1억 원 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출자액이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농지, 시설등)로 출자한 법인
 - 영농조합인 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민간유통업체
 - 농안법 제17조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 2년이상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한 농안법 제27조의2에 의거 등록된 수집상
 - 농안법 제27조의2에 의하여 등록된 수집상이 설립한 상법 제170조의 회사(합명, 합자, 주식, 유한)

- 포장센터 사업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사업발전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영점형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10억원이상의 법인
- 물류센터 운영업체, 저온저장업체

- 지방자치단체 : 시·군 및 자치구
- 품목(미·잡곡 등 곡류 및 화훼류는 제외)
토마토, 방울토마토, 복숭아, 사과, 오이, 참외, 양배추, 배추, 사과, 배, 단감, 감귤, 감자, 고구마, 당근, 무, 마늘, 양파, 밤, 버섯류 등

(2) 집하장시설보완

- '94~'97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치된 100평이상의 간이집하장운영조직
-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자체사업으로 설치된 100평이상의 집하장 운영조직
- 기존의 건물(집하장)이 조직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국립품질정보관리원에서 우수출하조직 이상으로 평가된 생산자 조직
- 인근지역에 포장센터 또는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이 있어도 물량확보에 애로가 없는 조직

(3) 포장센터 원료매취자금

-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설된 농산물포장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청과물종합유통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사업신청일 현재 개장되어 사업당해 년도에 운영할 조직

다. 지원기준 :

- 포장센터
 - 생산자조직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교부금 20, 자부담 20%, 부지는 자부담 총사업비에 불포함
 - 지방자치단체 : 국고보조 70, 지방비(순수지방비) 30%, 부지대 포함(단 1,000평이내) 총사업비 기준 개소당 1,500백만원
 - 민간유통인 : 국고융자 80, 자담 20% 총사업비 기준 개소당 1,500백만원 부지대 포함(단 1,000평 이내)
- ※ 개소당 지원한도는 철폐(사업자의 능력에 따라 신청하면 심사하여 지원)
-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교부금 20, 자담 20%
- ※ 융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7년상환

< 구비서류 >

(1) 농산물 포장센터

□ 공통사항

-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공통)
- 사업예정 부지의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1/5,000축적) (공통)
- 법인등기부등본, 증빙서류(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정관(사본)(법인공통)
-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경영체 공통)
- 총회 의사록 사본 (법인경영체 공통)
 - 포장센터 건설의제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 자부담 조달계획서 (법인경영체 공통)
 - 조달형태(출자, 융자, 기타)
 - ※ 제시 : 재력명세(예금 및 적금잔액 증명, 보증기관의견, 부동산 등)
- 대표자 이력서 (법인경영체 공통)

< 영농조합법인 >

- 조합원별 출자내역서
- 조직구성원의 2/3이상 공동사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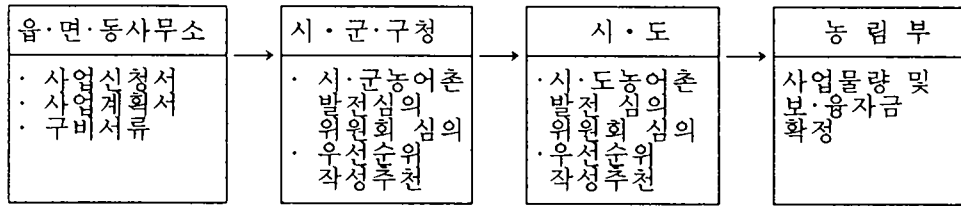
< 민간유통업체 >

-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및 농산물 취급실적 입증자료
- 직영점 및 가맹점 현황

< 지방자치단체 >

- 관할지방의회의 사업추진 동의서

라. 신청절차



※ 민간유통업체는 농유공에 바로 신청

- 포장센타원료매취 자금지원을 받고자하는 조직은 농협, 농유공의 사업시행 세부요령에 의거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농유공 지사 또는 농협 시·군지부에 신청

- 회원조합 → 농협 시·군지부, 영농조합법인 등 → 농유공 각 지사

※ 농협, 농유공의 사업시행 세부요령은 사업시행전 사업대상자에게 별도 통지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9조제1항의 별지 제3호 서식인 “자율사업신청서”에 의한다.

(1) 농산물포장센타건설

-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법인등기부등본, 증빙서류(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정관, 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포장센타건설 의제), 사업예정부지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1/5,000축적), 자부담조달계획서(조달형태: 출자, 융자등, 제시재력명세: 예적금잔액증명,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등), 대표자 이력서, 지원대상자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일반사업자에 한함)
- 조합원 출자내역서, 조직구성원의 2/3이상 공동사업실적(영농조합법인에 한함)
-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및 농산물 취급실적 입증자료, 직영점·가맹점 현황(민간유통업체에 한함)
- 관할지방의회의 사업추진 동의서(지방자치단체)

(2) 집하장시설보완

-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 조직공동명명의 건물(집하장) 등기부 등본
- 농협자체사업설치 확인서(농협군지부장 확인)
- 농산물검사소의 생산자조직 평가 확인서
- 사업추진에 대한 총회 또는 이사회(지역농협에 한함) 회의록 사본

(3) 포장센타 원료매취자금

- 사업담당기관(농협, 농유공)의 사업시행 세부요령에 의함

바. 지원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가) 농산물포장센터건설

- 생산자조직
 - 「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 의거 선정
 - * 농산물포장센터 사업신청자 평가표 (별표1)
 - 간이집하장을 지원받은 생산자조직은 시설운동을 충분히 활용하고도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지원
 - 농협의 경우 산지시범농협을 우선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유통업체
 - 별도로 농림부에서 심사선정(별표 2)

<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와 관련 >

- 법인경영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주산지에 위치하고 운영실적이 3년이상 경과된 법인으로서[별표1] 사업자평가서상 평점 70점이상 법인
 - 적격법인의 사업신청량이 정부계획물량에 부족할 시, 법인설립후 3년이 안된 법인에 대해서도 사업자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지원가능
(단, '98.1.1이후 설립한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구성원의 자질 : 구성원 2/3이상이 집하·공동출하 등의 실적 3년 이상
 - 조합원(농업인)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부적격자 발견시 사·도 추천시 배제
- 당해 법인경영체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하는 조직에 대해서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 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은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판매, 수출, 농작업대행 등
- 지원대상자 선정시 시군에서 실시하는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경영 및 정보화교육을 3일이상 가급적 이수토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는 사업자 선정시 우대

(나) 집하장 시설보완

- 국고보조로 설치된 기설 간이집하장 및 지자체, 농협자체로 설치한 집하장 중 100평규모 이상으로서 소규모 포장센타로 발전이 가능한 시설운영 생산자 조직
- 조직의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규격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 인근지역에 포장센타, 청과물종합유통시설이 있어도 물량확보에 애로가 없는 조직
- 미곡생산자조직은 제외
- 수산물 집하장은 농림부지원 수산물 간이집하장으로 제한하여 지원 가능

(다) 포장센타 원료매취자금

-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설된 포장센타, 청과물종합처리장, 청과물종합유통 시설로서 운영실적이 있거나 당해연도에 운영할 시설보유 조직
- *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운영조직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규운영조직 예외)

(2) 우선순위

(가) 농산물포장센타건설(생산자조직)

- ① 사업자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하되 평가후에 평가내용의 외적요인으로 지원이 불가할시는 자체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
 - 지목이 논이 아닌 사업장 부지를 선정할 시 우선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을 사업장 부지로 선정할 경우는 밭, 산지등 보다 후 순위
- ② 대규모 포장센타건설 촉진을 위해 생산자조직 연합출자 포장센타 우선 지원(사업비 제한우대)
- ③ 산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면서 수집상 영업을 겸업하는 농업인과 전문 수집상이 연대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결성하여 무, 배추, 대파, 양파 등 규격출하가 부진한 품목을 주종으로 포장센타를 설립하고자 하는 조직
- ④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를 기록하고 있는 조직

⑤ 농협의 경우 산지시범농협을 최우선지원

< 논의 잠식을 수반하는 사업장 부지 >

- 대구획 재경지정리 지역은 정책자금 지원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농업진흥지역에 정책자금 지원을 허용할 경우에는 보조부분을 용자로 전환. 2000년 예산 신청시 반영되도록 사전 조치
 - 2000년 : 보조부분 전액을 용자로 전환

(나) 집하장 시설보완

- ① 지원대상 농산물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시범농협
- ② '94~'97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치된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운영조직
- ③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설치된 농산물집하장 운영조직
- ④ 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자체사업으로 설치된 농산물집하장 운영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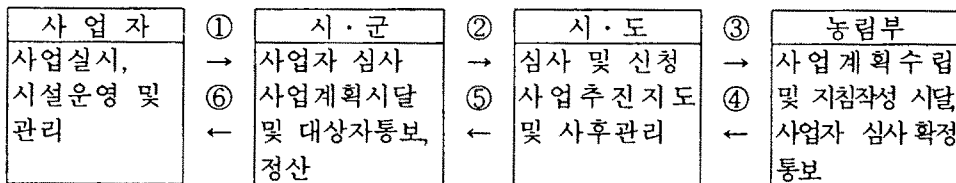
(다) 포장센터 원료매취자금

-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한 '98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평점이 높은 등급 순
- ※ 재해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약정불이행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선정절차

(가) 농산물포장센터건설

- 생산자조직, 지방자치단체



- ①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보조금 신청
- ② 사업자 심사 및 추천, 사업추진 실적보고, 정산실행결과보고
- ③ 사업자 심사 및 추천, 사업추진실적 보고, 정산결과보고
- ④ 사업지침 시달, 사업자 확정통보, 보조금 배정
- ⑤ 사업자 통보, 보조금 배정, 추진상황 지도점검
- ⑥ 사업자 통보, 보조금 지원, 추진상황 지도점검, 사후관리

○ 민간유통업체

사업자	① →	농유공 각 지사 농협 사·군 지부	② →	농 유 공 농협중앙회	③ →	농 립 부
○사업실시, 시설운영 및 관리 ○자금신청 및 시행	← ⑥	<농유공각지사> ○자금신청관련 확인서 발부 ○용자실행 실적점검 ○사업자심사, 사업계획시달 및 대상자통보, 정산 ○사업추진지도 및 사후관리 <농협 사·군지부> ○용자금 교부	← ⑤	<농유공> ○사업자심사 ○사업계획시달 및 대상자 통보 ○용자금 배정결과 통보 ○용자금 정산보고 <농협> ○용자금 배정결과 통보	← ④	○사업계획수립 및 지침작성 시달, 사업자 심사확정 통보 ○용자금배정

- ①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용자금 신청
 - ② 사업자 심사 및 추천, 사업추진 실적보고, 정산실행결과보고
 - ③ 사업자 심사 및 추천, 사업추진실적 보고, 정산결과보고
 - ④ 사업지침 시달, 사업자 확정통보, 용자금 배정
 - ⑤ 사업자 통보, 용자금 배정, 추진상황 지도점검
 - ⑥ 사업자 통보, 용자금 집행, 추진상황 지도점검, 사후관리
- 농림부에서는 사업신청자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뢰하고, 유통공사에서는 농협중앙회와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현지평가를 실시한후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생산자조직의 경우)
 - 농림부에서는 평가결과를 참고로 사업자를 최종 확정 통보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절차(별표 3)

(나) 집하장 시설보완

사업자	① →	시·군·구	② →	시·도	③ →	농 립 부
사업계획작성 및 실시, 시설운영 및 관리	← ⑥	사업자심사, 선정 사업지도 및 보조결정, 정산	← ⑤	사업자선정 결과보고 사업추진지도 및 사후관리	← ④	사업계획수립 및 지침작성 시달,

- ① 사업신청, 보조금신청
- ② 사업신청보고, 사업자선정보고, 사업추진실적보고, 정산실행결과보고
- ③ 사업자보고, 사업추진실적보고, 정산결과보고
- ④ 사업계획 확정 (사업물량 및 보·용자금)시달
- ⑤ 사업자 변경승인, 사업계획변경, 보조금 배분
- ⑥ 사업자 확정통보, 사업장 변경, 보조금 지원

(다) 포장센타 원료매취자금

포장센타 사업자	① →	농유공 각 지사 농협 시·군 지부	② →	농 유 공 농협중앙회	③ →	농 립 부
○자금신청 및 시행 ○회원농협 - 농협 시·군지부 ○영농조합 등 - 농유공 각 지사	⑥ ←	○자금신청 접수 ○용자실행 및 실적점검	⑤ ←	○사업계획공고 ○사업시행 세부요령작성 보고 ○사업자확정통보 ○용자금 배정 ○용자실행결과집계 보고	④ ←	○ 사업 시 행 지침수립 ○용자금배정

① 사업자금 신청

- 회원농협 : 농협 각 시·군지부
- 영농조합법인 등 : 농유공(본사)

② 자금신청접수

③ 사업시행세부요령 작성보고, 사업공고, 용자실행결과 집계보고

④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자금배정

⑤ 사업실시계획 시달, 용자금 배정, 사업자확정통보

⑥ 용자실행 및 실적 점검

<자금지원기준>

등 급	등 급 구 분	지 원 기 준	지 원 한 도
우 수	평점 80점 이상	신청금액의 80% 이내	15억원
양 호	평점 50점 이상 80점 미만	신청금액의 70% 이내	7억원
보 통 (신규사업자포함)	평점 50점 미만	신청금액의 60% 이내	3억원

※ 농산물 포장센타 원료매취자금지원 종합평가표(별표 4)

사. 기타사항

(1) 농산물포장센터 건설

- 각 시군에서는 물량 및 금액에 대한 사업신청 총괄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시도를 경유 농림부(유통정책과)에 제출 (농림부 기획예산 담당부서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와는 별도)
- 100평이상 간이집하장을 기지원 받았거나 포장센터를 지원 받은 법인 경영체가 추가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연구기관 또는 지도기관의 추가지원의 타당성 검증을 받은 후 신청할 것
- 신청규모(총사업비 기준)
 - 생산자단체 : 10~15억원
 - 농업법인경영체 등 : 5~10억원
 - 민간인 유통업체 : 15억원
 - 지방자치단체 : 15억원

※ 단 생산자단체가 연합하거나 민간전문 유통업체가 콘소시움결성 참여 시는 제한 없음

(2) 공통

- 농산물의 세척, 선별, 포장, 공동출하 등 규격상품화를 위한 시설·기계·장비는 본지침에 제시되지 않았어도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건물부지 밖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 참고 】

생산자조직 분류 기준

등 급	활 동 기 준
최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 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으로 등급내 품질이 균일 (선과장, 포장센타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 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견본거래, 통명거래의 실시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등급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은 같은 가격을 받음)
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계산제 실시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70%이상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 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고, 자체 품질관리 요원이 출하품 점검을 하여 등급별 품질의 균일화는 이룩했으나, 농가간 약간의 품위차이가 있어, 가격차 발생으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선과장, 포장센타 등 공동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일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농가별, 등급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도 농가별 가격차 발생) ○공동수송, 개별경매 체계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50%이상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으나, 자체 품질관리 활동이 없고,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하는 등 조직활동이 우수조직에 미달하는 조직

【별표1】

농산물 포장센터 사업신청자 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평점	등급기준
		A	B	C	D		
1. 규격상품화 추진여건성숙도 (40점)	(1) 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15)	15	10	7	5		A : 조직의 상표가 개발되어 있고, 도매 시장에서 단일 상표로 알아주고 있으며 공통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음 B : 조직의 상표개발은 되어있으나, 공통기준에 의한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 농가단위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음 C : 현재는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으나, 규격상품화를 인식하고 조직상표를 개발중에 있음 D : 조직의 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
	(2) 규격상품화에의 참여 정도(5)	5	4	3	2		A: 조직구성원 200명이상 또는 연간규격출하량 10,000톤이상 B: 조직구성원 100명이상 - 200명미만 또는 연간규격출하 7,000-10,000톤미만 C: 조직구성원 20명이상 - 100명미만 또는 연간규격출하 3,000-7,000톤미만 D: 조직구성원 20명미만 또는 연간 규격출하 3,000톤미만 ※ 출자조직원 이외의 조직원도 포함
	(3) 공동사업 실적(20) (규격상품화 조직평가)	20	15	10	5		○ 공동사업실적 A : 20점이상 B : 16-20점미만 C : 12-16점미만 D : 12점미만
		농검조직분류		평점	조직분류점수	평점	
		최우수조직		10	90점이상	10	
		우수조직		8	80-90점미만	8	
		일반조직		6	70-80점미만	6	
		미분류조직		4	70점미만	4	

평가항목	등급				평점	등급기준			
	A	B	C	D					
2. 사업자 수행능력 (25점)	(1)사업동기, 의지 및 사업자 경영능력	10	8	6	4	A : 평점 20점이상 B : 평점 16-20점미만 C : 평점 12-16점미만 D : 평점 12점미만			
		사업동기	평점	경영관리	평점				
		사업동기와 의지가 매우 높음,	10	회계 및 내부 관리장부정리 상태 우수	10				
		사업동기와 의지가 높음	8	회계 및 내부 관리장부 중 한가지만 우수	8				
		사업동기와 의지가 보통	6	회계 및 내부 관리장부미흡	6				
사업동기와 의지 미약	4	회계 및 내부 관리장부불량	4						
(2) 대표자 및 경영 진의 경력	5	4	3	2	○ 대표자및 경영진중 1인의 경력을 합산 A : 관련분야 10년이상 종사 B : 관련분야 5년이상 - 10년미만 종사 C : 관련분야 3년이상 - 5년미만 종사 D : 관련분야 3년미만 종사 ※ 관련분야 : 협동조합 임원, 생산자 임의 조직대표, 유통분야 종사자				
					(3) 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4억원이상	10	150%이상	10
						3-4억원미만	8	100-150%미만	8
						2-3억원미만	6	50-100%미만	6
						2억원미만	4	50%미만	4
						(4) 자부담 조달능력	5	4	3

평가항목		등급				평점	등급기준			
		A	B	C	D					
3. 사업 계획의 적정성 (35점)	(1) 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이상 B : 투자효율성 10%이상 - 15%미만 C : 투자효율성 5%이상 - 10%미만 D : 투자효율성 5%미만 $\text{※ 투자의 효율성(\%)} = \frac{\text{매출총이익}}{\text{투자비}} \times 100$				
	(2) 부지확 보계획	10	8	6	4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 12점 미만 D : 평점 9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10	제한 없음	5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8	약간 제한	4							
타인명의, 사용 승락	6	상당한 제한	3							
타인명의, 사용 미승락	4	제한이 많음	2							
(3) 입지조건	5	4	3	2	A : 평점 15 이상 B : 평점 13-15점 미만 C : 평점 10-13점 미만 D : 평점 10점 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여건	평점		
					상호보완성	10	양호	8		
경합, 보완성 없음	7	보통	6							
경합성 있음	4	미흡	4							

< 평가자의 종합의견 >

지 원 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원 가 : ○ 평가결과 D항목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 : ○ 평가결과 D항목이 4개이상인 사업자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평가결과 70점이상 득점은 하였으나 평가자가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사유명기) 		
평가자	소 속	성 명	서 명	

【별지 제1-1호서식】

농산물포장센터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조직명) :

2. 현 황

가. 조직현황

조직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균	최고	최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 (주) - 상표명 : ○○ 딸기, ○○ 사과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등 납품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조	
()	()	()	()	()	()	()

(주) 유통시설은 처리능력 (저장능력, 1일처리능력 등)을 ()안에 기재

3.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20%)
사업비(계)					
- 건 물					
- 장 비 등					

(주) 부지 구입비는 제외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 목
○ 부 지	평	천원	백만원			
○ 건 물	평					
- 집하시설	평					
- 선별시설	평					
- 저온저장및 예냉시설	평			- 저장능력 /일		
- 사무실 및 일반창고	평					
○ 기 계						
- 선별기	조			- 처리능력 /시간		
- 포장기	대			"		
- 콘베어	대					
.						
.						
○ 장 비						
- 팔레트	개					
- 수송차량	대					
- 운반상자	개					
.						
.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 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4.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			
	면적	물량	조직 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탁 (A)	매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업 품목	사업 물량	사업 기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 평균보관 물량/일
			시장 출하	직공급 (납품)	기타	기계 선별	수작업	

-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합 계		합 계	
○ 부 지		○ 자체자금	
○ 자부담금		○ 신규출자	
○ 운 영 비		○ 외부차입	
- 매취자금		○ 기 타	
- 관리비등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출원가		
-매취판매액		- 매입원가		
-선별, 포장 수입		- 선별, 포장 제비용		
○ 기타		○ 관리비		

마. 사업기반강화 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4.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년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역	규모	처리능력	비고

- 기타 특기사항

【 별지 제1-2호 서식 】

집하장 시설보완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조직명) :

2. 현 황

조직 현황	조직명				전화번호			
	주 소							
	조직결성일							
전년 재배 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출하시기	
	.	ha			톤			
전년 시설 운영 상황	총출하량	일반출하량		공동출하량	규격출하량	품질인증량	선별(과)량	
	톤	톤	톤	톤	톤	톤	톤	
	(100%)	(%)	(%)					
	상 표 명							
	활 용 일 수							
	주요 출하처							
공동 유통 시설 보유 현황	집하장	직판장	선별 (과)장	저 온 저장고	일반 창고	예냉고	선별 (과)기	기타공동 시설및장비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 ※ ○ 상 표 명 :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납품 등
- 유통시설은 처리능력 (저장능력, 1일처리능력 등)을 () 내서

3. 사업계획

- 사업명(년도표기) :
- 집하장 위치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m' (평)
-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계획

	사업량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국고 보조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평							
<시설설치> · · · 계								
<장비구입> · 선 별 기 · 포 장 기 · 세 척 기 · 보 냉 차 · · · 계								

- ※ ○ 사업비는 시설 및 기종·장비별로 재원비율에 따라 사업비 산정
 ○ 비고란에는 시설·장비의 제원(처리능력, 제작회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시설운영계획
 - 원료확보 방안
 - 판매방안

4. 기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
 - 사업명
 - 사업년도
 -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지원액 등)
-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2-1호서식】

심사제외

년도,분기 포장센터건설 사업 추진실적 보고

사업자명	지역(시·군·면)	사업계획							사업추진내역					사업비집행내역				
		사업량			사업비				부지확보	건축허가	착공일	공정	준공예정일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	자담
		부지	건물	시설및장비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										
		m'	m'	종	천원				월	월	월	%	월	천원				

※ 부지, 건물면적은 ()내에 평으로 환산 기입.

※ 사업자별 추진실적에 대한 부진 및 문제점 발생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월별추진내용과 함께 첨부

【 별지 제2-2호 서식 】

심 사 제 외

년도, 분기 집하장 시설보완 사업 추진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사업 자명	지역 (시 군읍 면)	사 업 추 진 계 획					사 업 추 진 내 역														
		시설 및 장비					사업비 집행계획					시설 및 장비					사업비 집행내역				
							계	국고 보조	국고 융자	지방 비	자부 담						계	국고 보조	국고 융자	지방 비	자부 담

※ 시설명 및 규모, 장비명 및 수량 기입.

※ 사업자별 추진실적에 대한 부진 및 문제점 발생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

○ 기설 간이집하장

- 사업년도 :

- 사업규모 (평형별, 유형별) :

- 사업비(정산결과)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별지 제3-2호 서식 】

심 사 제 외

‘98년도 반기 간이집하장 시설운영 상황 보고

○ 시설설치 및 성수기 활용 상황

사 업 자			시 설 설 치 내 역				사 업 비 (백만원)				운 영 상 황 (성수기)					활 용 일 수	
			사 업 년 도	부 지	건 물	(유 형)	시 설 장 비	계	국 고 보 조	지 방 비	자 부 담	품 목	생 산 량	집 하 량	선과량 (선별량)		공동 출하

○ 비수기 활용상황

○ 기타

【별지 제5호서식】

총 공통 - 9

사업 정산실적 보고

□ 구분 : 간이집하장(신규설치, 시설보완), 포장센터

시·군·구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비율 (B/A)
				사업계획			사업실적			
				부지	건물 (A)	기계· 장비별 수량	부지	건물 (B)	기계· 장비별 수량	
					평			평		%

사 업 비 (천원)										비율 (B/A)	착공일	준공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계	국고 보조 (A)	국고 용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국고 용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		

사 업 세 부 내 역																	
건물설치내역(평)						기계·장비류 설치내역(개소수)											
계	선별 (과) 시설	집하 시설	저온 저장 시설	예냉 시설	기타	계	선별 기	포장 기	콘베 이어	테핑 기·밴 딩기	제함 기	지게 차	냉장 차	파렛 트	운반 상자	

주) 사업세부내역은 농산물포장센터건설 사업에 한함

【별표 2】

민간유통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심사선정 사항

구 분	민간유통업체	지방자치단체
1.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계획서(지침에 기재된 사업계획서 준용 작성)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④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⑤ 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⑥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⑦ 농산물취급실적 입증자료(2개년) ⑧ 직영점 및 가맹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계획서(지침에 기재된 사업계획서 준용 작성) ② 사업예정부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2. 사업계획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접수 ○ 농림부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를 경우 농림부 제출
3. 사업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능력을 종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능력을 평가
4. 사업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에서 심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에서 사업승인
5. 보조(융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체제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체제와 같음

【별표 3】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절차

구 분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지방자치단체	민간유통업체
○ 사업신청 및 실행계획 제출	○ 시·군→시·군→ 시·도→농림부	○ 시·군→시·도→농림부	○ 농유평 각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부
○ 국 고 보조금 집행	○ 농림부→시·도→ 시·군→사업자	○ 농림부→시·도→시·군	
○ 국 고 융 자 금 집행	○ 농림부→시·도/농협 중앙회→시·군/농협 중앙회 시·군지부 →사업자	○ 농림부→시·도→시·군	○ 농림부→농협중앙 회→농협중앙회 시·군지부→사업자
○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 보고	○ 사업자→시·군→ 시·도→농림부	○ 시·군→시·도→농림부	○ 사업자→농수산물 유통공사→농림부
○ 사업실적보고	○ 사업자→시·군→ 시·도→농림부	○ 시·군→시·도→농림부	○ 사업자→농유평 각지사→농수산물 유통공사→농림부

【별표 4】

농산물 포장센터 원료매취자금지원 평가표

1. 자금지원 평가표

평가항목	평점지표					등급기준			
	A	B	C	D	E				
1. 전년도 사업실적 종합평가	50	40	30	20	10	A :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 우수 B : " 양호 C : " 보통 D : " 미흡 E : " 부진			
2. 출자조합원 및 출자액	20	15	10	7	5	A : 평점 20점 이상 B : 평점 16~20점 미만 C : 평점 12~16점 미만 D : 평점 10~12점 미만 E : 평점 10점 미만			
						출자조합원수	평점	출자액	평점
						100명 이상	10	10억원 이상	10
						50~100명 미만	8	5~10억 미만	8
						30~50명 미만	6	3~5억 미만	6
						5~30명 미만	4	1~3억 미만	4
5명 미만	0	1억원 미만	0						
3. 전년도 사업실적 (매출액)	20	15	10	7	5	A : 70억원 이상 B : 50억원이상 70억원 미만 C : 30억원이상 50억원 미만 D :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 E : 10억원 미만			
4. 저온저장고 규모	10	8	6	4	2	A : 1,000평 이상 B : 500이상 1,000평 미만 C : 300평이상 500평 미만 D : 100평이상 300평 미만 E : 100평 미만			

2. 지원기준

등급	등급구분	지원기준	지원한도
우수	평점 80점 이상	신청금액의 80% 이내	15억원
양호	평점 50점 이상 80점 미만	신청금액의 70% 이내	7억원
보통 (신규사업자포함)	평점 50점 미만	신청금액의 60% 이내	3억원

※ 농협과 영농조합법인으로 구분 평가하여 지원

II. 농산물 저온유통 기반확충

1. 목 적

- 선진화된 저온유통체계(Cold Chain System)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증대효과를 거양하는 동시에 고급화 되어 가는 소비패턴에 부응하는 농산물유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 및 출하단계부터 소비자 구매단계까지에 종사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 유통인 및 유통관련법인을 대상으로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지원
- 지원시설이나 장비는 농산물의 생산·출하·판매실적과 향후 계획물량을 감안하여 활용도가 극대화 되도록 지원규모를 결정
- 지원시설이나 장비의 운영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익년도 정책사업에 반영
- 저온유통에 부적합한 품목(예 양곡 등)취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지구입은 자부담으로 하되 사업비에는 포함하지 않음
-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재산가액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에 포함되지 않음

3. 근 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 '98 농산물 유통개혁대책(과제 4항 라호)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98까지	'99	2000	2001	2002년
합 계	사 업 량	720	-	180	180	180	180
	계	52,500	-	13,125	13,125	13,125	13,125
	국고보조	10,500	-	2,625	2,625	2,625	2,625
	국고융자	31,500	-	7,875	7,875	7,875	7,875
	자 담	10,500	-	2,625	2,625	2,625	2,625
농어가 저온 저장 시설	사 업 량	400대	-	100	100	100	100
	계	6,800	-	1,700	1,700	1,700	1,700
	국고보조	1,360	-	340	340	340	340
	국고융자	4,080	-	1,020	1,020	1,020	1,020
	자담	1,360	-	340	340	340	340
냉 장 차 탑	사 업 량	200대	-	50	50	50	50
	계	6,600	-	1,650	1,650	1,650	1,650
	국고보조	1,320	-	330	330	330	330
	국고융자	3,960	-	990	990	990	990
	자 담	1,320	-	330	330	330	330
저 온 창 고	사 업 량	40동	-	10	10	10	10
	계	21,600	-	5,400	5,400	5,400	5,400
	국고보조	4,320	-	1,080	1,080	1,080	1,080
	국고융자	12,960	-	3,240	3,240	3,240	3,240
	자 담	4,320	-	1,080	1,080	1,080	1,080
예 냉 시 설	사 업 량	80기	-	20	20	20	20
	계	17,500	-	4,375	4,375	4,375	4,375
	국고보조	3,500	-	875	875	875	875
	국고융자	10,500	-	2,625	2,625	2,625	2,625
	자 담	3,500	-	875	875	875	875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설명

1) 추진배경

- 농산물의 유통선진화를 위해서는 저온유통체계(Cold Chain System) 구축이 필수과제이며, 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됨
- 저온유통체계는 생산·출하단계에서 소매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유통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및 유통인 등이 함께 참여하여 순환체계를 이루어야 효과적임
- 따라서 '98 유통개혁대책의 일환으로 '99년부터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생산·출하단계에서 소매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 조직과 유통인 및 유통법인을 대상으로 지원

2) 지원대상자

- 주산지 생산자조직 : 농협지역조합, 전문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법인화된 생산자 조직
 - ※ 미곡생산자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전업농, 후계자)
- 민간유통업체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 제17조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 2년이상 농산물산지유통업에 종사한 농안법에 의거 등록된 수집상
 - 농안법 27조의2에 의하여 등록된 수집상이 설립한 상법 제170조의 회사(합명, 합자, 주식, 유한)
 - 포장센터 사업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영점형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10억원이상의 법인(대도시 중·대형수퍼마켓)
 - 물류센터 운영업체

3) 시설별 지원규모 및 지원단가

(가) 농어가 저온저장시설(이동식 컨테이너식 저온저장고)

- 5평형 50대(12백만원/대)
- 10평형 50대(22백만원/대)

(나) 냉장탑차 : 50대 (33백만원/대)

(다) 저온저장고 10동(200평/동)(540백만원/동)

(라) 예냉시설

- 수냉식 10기(100백만원/기)
- 진공식 5기(500백만원/기)
- 차압통풍식 5동(175백만원/50평/동)

4) 지원조건 및 기준

- 예냉시설과 저온저장고는 반드시 산지에 설치
- 냉장탑차는 주산지 생산자단체 및 전업농 후계자만 해당
- 보조율 : 국고보조 20, 용자 60, 자담 20%
 - 용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7년상환

나. '99년 사업비 예산내역

	사업량	사업비 합 계	사 업 비 (백만원)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보조	용 자		
계	180	13,125	10,500	2,625	7,875	-	2,625
○ 농어가저온저장 시설(컨테이너식)	100대	1,700	1,360	340	1,020	-	340
- 5평형	50	600	480	120	360	-	120
- 10평형	50	1,100	880	220	660	-	220
○ 저온창고 (200평형)	10동	5,400	4,320	1,080	3,240	-	1,080
○ 냉장탑차	50대	1,650	1,320	330	990	-	330
○ 예냉시설	20기	4,375	3,500	875	2,625	-	875
- 수냉식	10기	1,000	800	200	600	-	200
- 진공식	5기	2,500	2,000	500	1,500	-	500
- 차압통풍식	5동	875	700	175	525	-	175

※ 용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7년상환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농산물 저온유통 기반확충 사업

○ '99 사업신청기간(추가신청)

- '98.10.31까지(읍·면·동→시·군), '98.11.15까지(시·군→시·도), '98.11.31까지(시·도→농림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설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지원대상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증명서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국 유통정책과(02-500-2671~2)
- 시·도 : 농산유통과(농산지원과, 유통특작과)
- 시·군·자치구 : 산업과(유통특작과, 지역경제과)

다. 지원대상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가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농산물 생산, 출하, 판매, 실적과 향후 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시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에 우선 지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시설이나 장비를 지원받은 개인이나 조직 및 법인은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배제
- 저온저장고는 기존의 저온저장고 또는 방열창고를 개축을 하는 사업자를 우선 고려

-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농업인에 한하여 지원하며, 예냉시설은 산지에 설치할 사업자를 선정
-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 중도 포기하므로써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자를 엄선
- 선정절차
 - 정부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시·군·자치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 시장, 군수, 자치구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계획을 확정
- 사업시행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장에게 사업계획변경 요청
 - 시장, 군수, 자치구의 장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사유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 요청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시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예냉시설과 저온저장시설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준 설계도에 근거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역여건에 맞도록 작성
- 공사감리
 - 예냉시설과 저온저장 시설의 경우 건물은 설계감리업체, 기계설비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시행한다.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장은 활용일지 등을 작성토록 지도·감독
- 사업자는 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
- 사업자가 본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자치구의 장은 본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 이행 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 공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주요기계, 장비	구입일	7년간	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나. 보고 및 기타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실적(서식 : 별표 I)은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설물 활용실적을 사업실시 익년도부터 3년차까지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서식 : 별표 II)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 군수, 자치구의 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는 시·도를 경유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농림부에 제출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설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
 - '99. 1. 31까지(신청자→읍·면→시·군), '99. 2. 28까지(시·군→시·도), '99. 3. 31까지(시도→농림부)

나. 신청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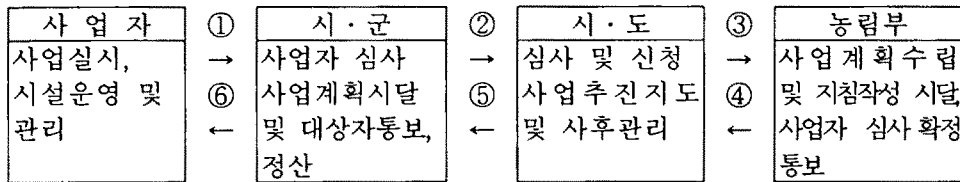
- 주산지 생산자조직 : 농협지역조합, 전문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법인화된 생산자 조직
 - ※ 미곡생산자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공공소유, 민간운영) : 시·도 또는 시·군
- 민간유통업체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 제17조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 2년이상 농산물산지유통업에 종사한 농안법에 의거 등록된 수집상
 - 농안법 27조의2에 의하여 등록된 수집상이 설립한 상법 제170조의 회사(합명, 합자, 주식, 유한)
 - 포장센터 사업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영점형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10억원이상의 법인(대도시 중·대형수퍼마켓)

다. 지원기준

- 예냉시설과 저온저장고는 반드시 산지에 설치
- 냉장탑차는 주산지 생산자단체 및 전업농 후계자만 해당
- 보조율 : 국고보조 20, 용자 60, 자담 20%
 - 용자조건 : 연리 6.5%, 3년거치 7년상환

라. 신청절차

- 정부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시·군·자치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 시장, 군수, 자치구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제출
- 생산자조직, 지방자치단체, 민간유통업체



- ①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보조금 신청
- ② 사업자 심사 및 추천, 사업추진 실적보고, 정산실행결과보고
- ③ 사업자 심사 및 추천, 사업추진실적 보고, 정산결과보고
- ④ 사업지침 시달, 사업자 확정통보, 보조금 배정
- ⑤ 사업자 통보, 보조금 배정, 추진상황 지도점검
- ⑥ 사업자 통보, 보조금 지원, 추진상황 지도점검, 사후관리

마.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법인등기부등본, 증빙서류(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정관, 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포장센타건설 의제), 사업예정부지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1/5,000축적), 자부담조달계획서(조달형태: 출자, 용자등, 제시재력명세: 예적금잔액증명,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등), 대표자 이력서, 지원대상자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일반사업자에 한함)
- 최근 2개년 결산재무제표 및 농산물 취급실적 입증자료, 직영점·가맹점 현황(민간유통업체에 한함)

※ 이 사업은 '99년부터 시행예정인 신규사업으로 추후 예산이 조정되거나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추후 그 내용을 별도 시달할 계획임

【별지 제1-1호서식】

농산물저온유통 기반확충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조직명) :

2. 현 황

가. 조직현황

조직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조직결성일		조직원수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균	최고	최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다.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 (주) - 상표명 : ○○ 딸기, ○○ 사과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등 납품

라.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시 설	저온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시설 및장비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조 ()	()

(주) 유통시설은 처리능력 (저장능력, 1일처리능력 등)을 ()안에 기재

3.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20%)
사업비(계)					
- 건 물					
- 장 비 등					

(주) 부지 구입비는 제외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제작회사	처리대상 품 목
○ 저온저장고		천원	백만원			
- 컨테이너식 저온저장고				- 저장능력 /일		
· 5평형	동			- “		
· 10평형	동			- “		
- 저온저장고				- “		
· 200평형	동			- “		
○ 예냉시설						
- 차압통풍식 (50평형)	동			- “		
- 수냉식	기			- “		
- 공냉식	기			- “		
○ 냉장탑차	대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 별표 I 】

연도/분기 저온유통 기반확충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사업자명	지역 (시·군·읍·면)	사업비 추진계획						사업추진실적						비고	
		지원내역		사업비 집행계획				지원내역		사업비 집행실적					
		시설명	규모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자부담	시설명	규모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자부담		

- 주) 1. 시설명과 규모는 지원시설과 수량을 기재
 2. 추진 실적부진 및 문제점 발생사업자는 그 사유와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첨부

【 별표 II 】

연도, 반기 저온유통 기반확충시설·장비 활용실적 보고

사업지 현황			지원내역			사업비(백만원)				활용실적				비고
사업자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년도	지원시서	지원규모	계	국고보조	국고용자	자부담	품목	처리량(톤)	활용기간	활용일수	

주) 활용기간은 연도 월 월로 기재하고, 활용일수는 기간동안 실제 활용일수를 기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장과(과장 하영효, 행정사무관 윤달상)입니다.

I.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건설

1. 목 적

- 전국 주요도시에 도매시장을 건설하여 대량·신속한 농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 수급을 반영하는 정확한 가격형성으로 생산 및 소비조절에 기여
- 공영도매시장이 없는 중소도시지역의 농산물유통량 증가에 따른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판장을 건설
 - 산지공판장을 통한 유통비용절감으로 농민 소득 증대
- 공개경쟁적인 공정한 가격형성으로 공정거래를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농수산물도매시장

- 전액 공공투자로 건설하여 운영의 공익성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
- 전국 대도시 및 주요 중소도시에 2001년까지 34개소 건설

나. 농산물공판장

- 공영도매시장이 없는 중소도시의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도모
- 중소도시 및 산지의 농산물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2년까지 47개소 건설
<'98까지 34개소 + 추가건설 물량 13개소(화훼공판장 1개소 포함)>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97까지	'98	'99예산(안)	2000 ~ 2002	계	
도 매 시 장	사 업 량	18	(16)	(12)	(8)	34	
	사 업 비	계	1,110,825	211,616	113,580	135,550	1,571,571
		국고보조	371,107	86,251	76,672	60,188	594,218
		지방비	739,718	125,365	36,908	75,362	977,353
공 관 장	사 업 량	21	(13)	¹⁾ 5	8	47	
	사 업 비	계	83,841	20,764	9,600	32,400	146,605
		국고보조	24,826	7,948	3,840	12,960	49,574
		국고융자	12,719	3,975	2,880	9,720	29,294
		지 방 비	12,119	3,975	960	3,240	20,294
		자 부 담	34,177	4,866	1,920	6,480	47,443

(주) ① 사업량 중 ()는 계속사업 개소수이며, ¹⁾에는 화훼공판장 1개소 포함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공판장
○ 지원대상	○ 도매시장건설을 추진하는 시 (특별시, 광역시, 시)	○ 공판장건설을 추진하는 농협회원조합
○ 지원내용	○ 도매시장 및 공판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건물 건축비(세부집행범위는 아래참조)	
○ 지원기준 및 조건	○ 국고보조70%, 지방비30%	○ 국고보조40%, 지방비보조10%, 국고융자30%, 자부담20% ○ 융자조건 등 - 조건 : 연리6.5%, 3년거치7년 균분상환 - 채권보전 : 농협의 여신관계 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함

* "99부터 적용되는 지원기준 및 조건은 '98까지 편성된 국고예산액만큼 지방비도 종전 부담율에 따라 '98까지 확보(집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만 적용됨.

<세부집행범위>

○ 부지매입비

- ① 도매시장 및 공판장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
- ② 도매시장 및 공판장건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비(경영권, 광업권, 이전비, 이농비 등)
- ③ ①~②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 건물건축비

- ①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기계장치(보일러실 등)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 ② 토지정리공사비
- ③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 경비
- ④ 전신전화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 ⑤ 감리비
- ⑥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등)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내용은 『정부예산편성기준』의 세출과목 『토지 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참조

나. '99 사업비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안(재원명)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2	백만원 113,580	76,672	76,672	-	36,908	-	
도 매 시 장	서울서남	1	10,450	7,315	7,315	-	3,135	-
	부산제2	1	14,770	10,339	10,339	-	4,431	-
	광주제2	1	13,383	9,368	9,368	-	4,015	-
	인천제2	1	8,921	6,245	6,245	-	2,676	-
	포항	1	5,271	3,690	3,690	-	1,581	-
	원주	1	5,468	1,331	1,331	-	4,137	-
	강릉	1	3,835	2,346	2,346	-	1,489	-
	대전제2	1	15,854	11,098	11,098	-	4,756	-
	순천	1	13,134	9,194	9,194	-	3,940	-
	구미	1	10,177	7,124	7,124	-	3,053	-
	마산	1	4,211	2,948	2,948	-	1,263	-
진주	1	8,106	5,674	5,674	-	2,432	-	
계	5	9,600	6,720	3,840	2,880	960	1,920	
공 판 장	농산물	4	6,000	4,200	2,400	1,800	600	1,200
	화훼	1	3,600	2,520	1,440	1,080	360	720

* 도매시장 건설추진지역중 물류센터로 전환추진 중인 성남 고양은 물류센터 사업예산에 편성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 시(특별시, 광역시, 시)
- 농산물공판장건설 : 농협회원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국 시장과(02-500-2675~6)
 - * 화훼공판장은 농산원예국 과수화훼과(02-500-2685~6)
- 특별·광역시, 도 : 농림분야 농산물유통담당과
- 시·군 : 농림분야 농산물유통담당계

다. 대상자 선정

- 농수산물도매시장 : 정부의 유통개혁대책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2001년까지 34개소를 건설 목표로 18개소는 이미 개장되어 운영중에 있고 나머지 16개소도 대상지역이 모두 선정되어 건설추진 중에 있어 신규선정계획은 없음(* 성남·고양 등 2개소는 물류센타로 전환 추진 중)
- 공판장 : 산지의 농산물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산지공판장을 건설 하되 경매식집하장(81개소)을 공판장으로 전환희망지역 우선선정 지원 (* 화훼공판장은 농산원예국에서 별도 선정 추진)
 - * '99년도에 신규로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지역은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의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참고하여 '98.11.30까지 신청하시기 바람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 도매시장건설 및 개장업무편람참조]

① 사전 조사평가 및 사업계획 수립

- 기존 유통체계 조사·분석
 - 반출입 현황, 기존 도매시장 현황, 소매시장 현황 등

-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조사 연구
 - 사업조사연구 : 인구, 교통계획, 주요 도로망, 입지, 자연환경 등
 - 규모, 위치 및 투자비 추정
- 사업계획에 대한 정책결정
- 관계기관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보조사업 결정 등)
 - 국고예산 편성으로 사업계획 확정

② 기본계획 수립

- 실무작성반 편성 : 시청 담당과
 - 건설에 따른 적정 상근인원 확보 (도시계획, 건설기술직 포함)
- 추진위원회 구성
 -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지역 관련 단체장, 기타 농수산물 유통 분야 전문가, 시장관계자 등으로 구성
- 전문기관 용역의뢰 :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 확정
- 도시계획 시설 결정,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 및 용지확보

③ 도매시장 건설 추진 전담기구 발족

- 시장 건설추진반과 관리운영추진반으로 구분
- 건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실시
 - 시설물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 교통 및 환경 영향 평가
- 공사 발주 및 추진
- 시장건설 및 개장

④ 도매시장 개장준비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추진)

- 도매시장 관리운영계획서 및 업무규정 작성
 - 도매시장 관리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포함하되, 특히 도매시장법인(또는 도매인)이 하역료를 부담토록 조치(보조금교부 조건 참조)
 - 도매시장 개설 허가권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쳐 승인을 득한 후 확정
-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작성 및 모집
 - 도매시장개설구역내 유사시장 흡수방안 등 정비계획 병행 추진
 - 투명한 공개모집 절차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마련
- 입주대상 도매시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 도매시장 홍보 추진

⑤ 도매시장 개장 운영

- 공사준공
 - 관리부서에 시설인계 및 시장개설 허가
- 도매시장 관리조직 입주
- 도매시장 관련조직 입주 및 업무수행 준비
- 개장운영 초기 지도
 - 공정거래질서 확립
 -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농산물공판장건설]

- '99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은 '99. 2. 15까지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 및 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99.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도매시장 및 공판장건설사업의 대상지역 및 예산액변경, 주요시설물변경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도매시장·공판장은 주요기능이 도매거래이므로 도매기능 수행에 저해되는 관련 상품동이나 직판시설 등은 최대한 억제될수 있도록 계획변경 등 조치
 - 관련상품동은 경매동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청과부류만 취급하는 도매시장의 경우 수산, 축산, 양곡, 화훼 등)을 소매상인이 구색을 갖추어 도매로 구입(판매) 할 수 있도록 설치
 - 부득이 직판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도매시장과 구역을 완전히 분리하여 순수지방비로 추진
 - 공판장의 경우 주요기능을 수행하는 경매장 면적이 커야 하므로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의 면적은 가급적 축소 조정하기 바람

(3) 사업비(보조금)신청 및 지원방법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소요액을 고려하여 배정하므로 보조금의 소요가 있을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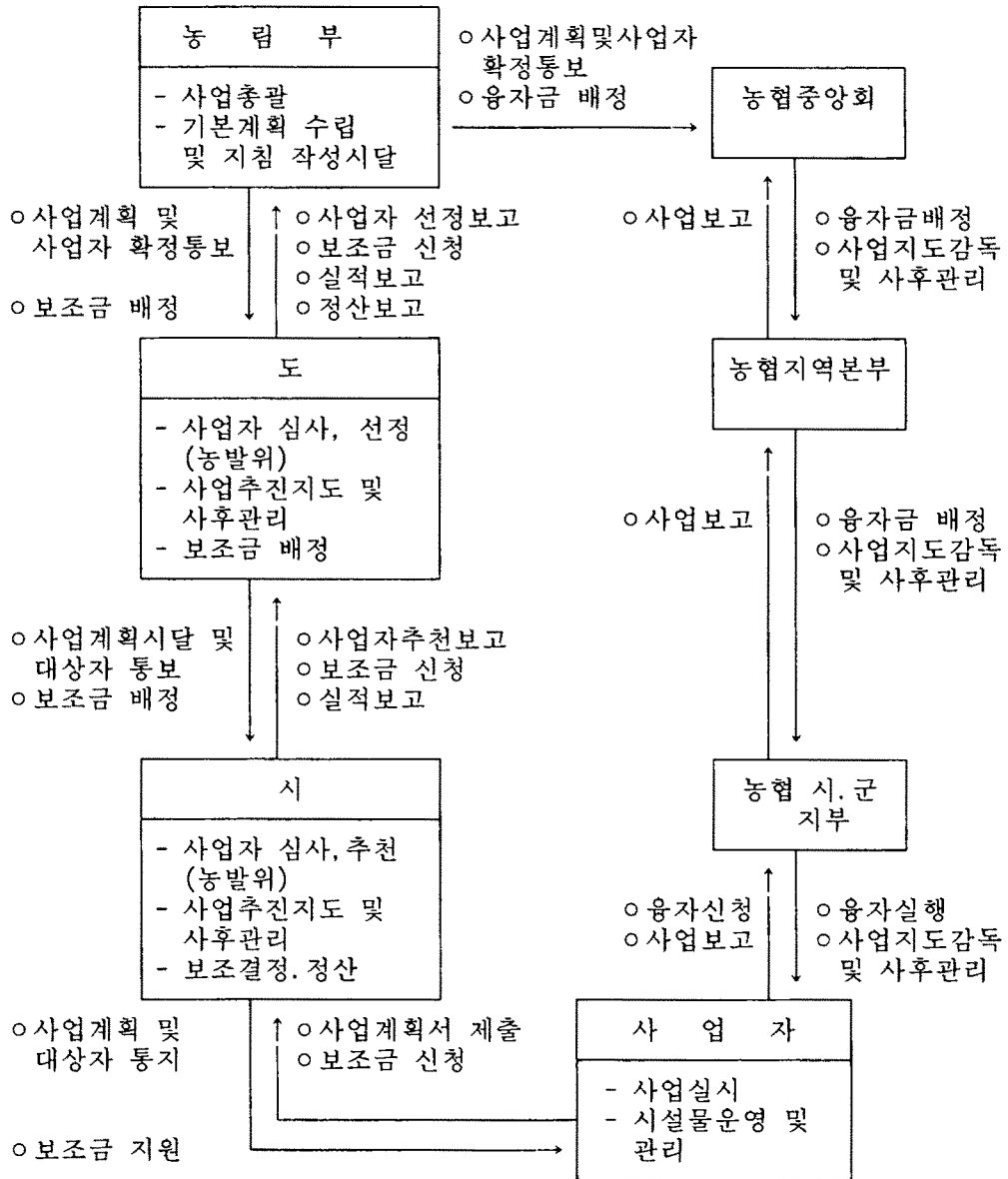
- 보조금의 내시 및 자금배정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 →시장

[농산물 공판장건설]

- 보조금의 내시 및 자금배정 : 농림부장관
- 보조금 교부결정 : 도지사(시장·군수)
- 보조금 배정 : 농림부장관 → 도지사 → 시장·군수

* 보조금은 당해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배정권자는 이미 지출한 증빙서류나 기성고 등의 사업실적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배정하므로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해야 한다.

(4) 사업시행 체계도(공판장)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공통사항>

- 보조사업자(시장 또는 해당조합장)는 법령의 규정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구 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도매시장	건물 및 부속설비	개설	폐쇄		
공 판 장	“	“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공판장>

-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는 해당조합이 하고, 도지사 및 농협 지역본부장은 감독책임을 진다
- 도지사와 농협중앙회장은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등을 할 수 있다
- 공판장은 도지사의 승인없이 처분 및 기타목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 사업기간 : '99. 1. 1 ~ 2000. 12. 31

나. 보고·기타

○ 보고체계

- 도매시장 : 시 → 시·도 → 농림부
- 공판장 : 사업조합 → 시·군 → 시·도 → 농림부

○ 보고내용 및 기한

- 분기별 건설 추진실적 : 분기별 건설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5일
까지 보고
- 당해년도 정산보고 : 당해년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지역은 익년도 2월말
까지 기일엄수하여 정산보고
- 최종 정산보고 : 시설물이 완공되어 개장하는 지역은 사업완료 즉시
연도별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사업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

* 최종정산보고는 최종 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자체 지방비를 투입하여 추가 공사를 하므로써 추가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국고보조금정산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보고서식 : 전년도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사업개요, 연도별(분기보고의 경우는 분기별) 집행액(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사유 등으로 구분 작성), 비목별 연도별 집행내역, 연말까지 집행계획 등을 포함 작성
- 화훼공판장사업은 사업담당부서인 농산원예국 과수화훼과에서 본 지침에 따라 추진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 시(특별시, 광역시, 시)
- 농산물공판장건설 : 농협회원조합

나. 신청자격

-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 '99년 현재 국고예산을 지원받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 중에서 '99까지 국고예산이 종료되지 않은 시(市)
- 농산물공판장 : '99년도에 신규로 국고예산을 지원받아 건설을 추진중에 있거나 2000년도에 신규로 건설을 희망하고 있는 농협회원 조합

다. 신청절차

- 도매시장 건설사업비신청(시) → 대상지역 선정 및 지원(농림부)
- 공판장 건설사업비신청(농협회원조합) → 시·군 → 시·도 → 대상지역 선정 및 지원(농림부)

라. 구비서류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건설보조금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공판장건설 세부사업시행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마. 기타사항

- 농산물공판장사업은 2개년에 걸쳐 예산을 편성하되 1차년도에는 부지 매입비+건축공사비30% 해당액을, 2차년도에는 건축공사비 잔액을 계상

【별지 제1호 서식】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건설보조금 신청서

1. 사업개요

- 위치 :
- 사업규모 : 부지 평, 건물 평
- 총사업비 : 백만원 (국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 ○○년도 사업비 : 백만원 (국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 사업기간 :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	
							○ 지방비에 대한 차입계획이 있을 경우에 기재

3. 지역별 장기유통시설 확보 및 배치계획

- 장기 유통시설 확보계획
 - 도매시장, 공판장 확보계획
- 장기유통시설 배치 및 물량처리계획

4. 지역 유통시설 현황

부류별	시 장 별	시 설		거래실적(〇〇년)	
		대 지	건 물	물 량	금 액
		m ²		톤	백만원

※ 시장 : 도매시장, 공판장, 경매식집하장, 유사시장별로 작성

5. 예산소요액 산출근거

가.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예산확보액					집 행 액					미 집 행 액				
	계	국고	지방비	국고용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용자	자부담	계	국고	지방비	국고용자	자부담
'96까지															
'97															
'98															
'99															
계															

나. 당해연도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99)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 요 사 업 내 용	사업비집행액	비 고
계			

다. 예산요구년도 소요사업비 추정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 요 사 업 내 용	소요액	비 고

6. 기타

- 도매시장 건설 연구용역 추진상황
 -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곳은 연구보고서 및 내용 (용역기관, 용역비 등)
- 총사업비 증가사유 작성
 - 건설중인 지역의 총사업비 증가시 구체적인 설명자료(3페이지내외)를 작성할 것

7. 총사업비 소요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금 액	산 출 내 역
계		

3. 지역별 유통시설 및 생산현황

가. 지역유통시설 현황

부류별	시 장 별	시 설		거래실적(년)	
		부 지	건 물	물 량	금·액
		평		톤	백만원
계					

※ 시장별 : 도매시장, 공판장, 경매식집하장, 유사시장 별로 작성

나. 주요품목별 생산 현황 (5개년)

(단위: 톤)

품 목					
계					

※ 품목은 청과물(과일, 채소)을 대상으로 함

4. 농산물공판장 건설사업 시행계획

가. 공판장 건설사업의 필요성

※ 신청당시의 인구수등 지역 유통여건을 포함한다

나. 총사업비 산출

	규 모	단 가	소요액	비 고
부 지 건 물	평			
계				

※ 건물에 따라 구체적인 시설명과 규모를 별지로 작성

다. 취급물량 추정

	1 일 평 균		연 평 균		비 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과일 채소					
계					

라. 연차별 수지전망 (개장후 5년간 손익 추정)

수 익 비 용 순손익					

마. 일정별 추진 계획(구체적으로)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소요예산 등)

바. 사업예정지의 타당성 검토

(1) 입지선정 사유

(2) 입지 형태별 면적 현황

(3) 부지구입여건 및 관련 법령상 설치 가능성 검토

(4) 대체입지 선정 가능성 검토

※ 사업예정지의 지적도면 첨부

5. 기타 참고자료

II. 농산물 도매유통 시설보완

1. 목 적

- 기존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부족시설 확장 및 노후시설 정비로 시장 본래기능 강화
-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유통환경에 적응
- 도매상제 도입에 대비한 도매시장내 시설 보완

2. 시책 및 추진방향

- 기존 도매시장과 공판장 중 시설부족 및 노후화로 확장이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 농안법개정으로 도매상제 도입시의 시설보완
- 개장당시는 시외곽에 위치하였으나 도심지로 발전 및 거래량 증가로 시설이 부족하여 이전 확장시 부족 예산 지원
- 농안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도매시장 정비계획을 수립 시장개설을 허가한 지역에 대한 시설보완 지원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개소,백만원)

구 분		'97까지	'98	'99예산(안)	2000~2004	계
도매시장 시설보완	사업량	-	-	6	30	36
	사업비	-	-	20,000	100,000	120,000
	국 고	-	-	14,000	70,000	84,000
	지방비	-	-	6,000	30,000	36,000
공 판 장 시설보완	사업량	-	-	10	50	60
	사업비	-	-	5,570	27,850	33,420
	국 고	-	-	3,900	19,500	23,400
	(보 조)	-	-	2,230	11,150	13,380
	(용 자)	-	-	1,670	8,350	10,020
	지방비	-	-	557	2,785	3,342
	자부담	-	-	1,113	5,565	6,678
총 사업비		-	-	25,570	127,850	153,420
국고(국고용자포함)		-	-	17,900	89,500	107,400
지 방 비		-	-	6,557	32,785	39,342
자 부 담		-	-	1,113	5,565	6,678

* 사업량은 확장사업과 보완사업을 합한 숫자임으로 중복지원 될 수도 있음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구 분	도매시장 시설보완	공판장 시설보완
○ 지원대상	○ 국고지원으로 개설한 공영 도매시장의 시설을 정비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시(市)	○ 공판장을 개설한 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청과부류 공판장에 한함)
○ 지원내용	○ 기존시설의 개보수, 시설설치비(저온저장시설, 주차시설, 전산관련 부착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 이전·확장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등 기존유통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 *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의 세부 집행범위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건설사업편을 준용하고 전동차, 지게차 등 기계장비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공공)」에서 지원	
○ 지원기준 및 조건	○ 국고보조70%, 지방비30%	○ 국고보조40%, 지방비보조10%, 국고융자30%, 자부담20% ○ 융자조건 등 - 조건 : 연리6.5%, 3년거치7년 균분상환 - 채권보전 : 농협의 여신관계 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함

나. '99 사업비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안(재원명)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개소 16	백만원 25,570	17,900	16,230	1,670	6,557	1,113
도매시장 시설보완	6	20,000	14,000	14,000	-	6,000	-
공 판 장 시설보완	10	5,570	3,900	2,230	1,670	557	1,113

* 공판장시설보완은 청과부류에 한함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99년도부터 신규사업이므로 '99년도에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지역은 다음의 “<추진체계>, 다. 사업시행” 요령에 따라 '98. 11.30까지 신청하시기 바람.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 : 시(특별시, 광역시, 시)
- 농산물공판장 시설보완 : 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국 시장과(02-500-2675~6)
- 특별·광역시, 도 : 농림분야 농산물유통담당과
- 시·군 : 농림분야 농산물유통담당계

다. 사업시행

(1) 사업신청절차

- 도매시장 시설보완 : 시 → 시·도 → 농림부
- 공판장 시설보완
 - 농협회원조합 → 시·군 → 시·도 → 농림부
 - 농협중앙회 → 시·도 → 농림부

(2)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포함내용)

- 기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개요
 - 위치, 규모(부지, 건물), 개장일(사업기간), 사업비(재원별)
- 시설보완 대상 사업 개요
 - 시설보완 주요내용, 시설보완사유 및 필요성
 - 세부사업별 소요사업비 산출근거
 - 시설보완후의 효과
- 사업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공통사항>

- 보조사업자(시장 또는 해당조합장)는 법령의 규정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으로 취득 또는 정비한 중요재산 관리

구 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도매시장	건물 및 부속설비	개설	폐쇄		
공 판 장	“	“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공판장시설보완>

-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는 해당 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이 하고, 시·도지사 및 농협 지역본부장은 감독책임을 진다
- 시·도지사와 농협중앙회장은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등을 할 수 있다
- 공판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처분 및 기타목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나. 보고·기타

○ 보고체계

- 도매시장 시설보완 : 시 → 시·도 → 농림부
- 공판장 시설보완
 - 농협회원조합 → 시·군 → 시·도 → 농림부
 - 농협중앙회 → 시·도 → 농림부

○ 보고내용 및 기한

- 분기별 추진실적 : 분기별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보고
- 최종 정산보고 :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하여 보고. 단, 이전·확장 사업등으로 2개년 이상 계속사업지역은 매년도 마다 익년도 2월말까지 보고하고 최종정산보고는 사업완료 즉시 사업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

○ 보고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 최종정산보고는 최종 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승인된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자체 지방비를 투입하여 추가 공사를 하므로써 추가공사가 완료 될 때까지 국고보조금 정산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 : 시(특별시, 광역시, 시)
- 농산물공판장 시설보완 : 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나. 신청자격

-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 : 국고지원으로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의 시설을 정비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시(市)
- 농산물공판장 시설보완 : 공판장을 개설한 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청과 부류에 한함)

다. 신청절차

- 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비신청(시) → 대상지역 선정 및 지원(농림부)
- 공판장 시설보완사업비 신청
 - 농협회원조합 → 시·군 → 시·도 → 대상지역선정 및 지원(농림부)
 - 농협중앙회 → 시·도 → 대상지역선정 및 지원(농림부)

라.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포함내용)

- 기존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개요
 - 위치, 규모(부지, 건물), 개장일(사업기간), 사업비(재원별)
- 시설보완 대상 사업 개요
 - 시설보완 주요내용, 시설보완사유 및 필요성
 - 세부사업별 소요사업비 산출근거
 - 시설보완후의 효과
- 사업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도매시장, 공판장) 시설보완 사업비 집행실적

1. 시설보완 사업개요

2. 일정별 주요사업추진 실적

3. 보조금 집행실적

가. 연도별(분기 보고시는 분기별로 작성), 재원별

(단위:천원)

연도별 (분기별)	예 산 액					집 행 액					미 집 행 액				
	계	국고	지방 비	국고 융자	자담	계	국고	지방 비	국고 융자	자담	계	국고	지방 비	국고 융자	자담

나. 세부내역별 집행액

(단위:천원)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미집행사유

다. 연말까지 집행계획 : 시기별, 비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4. 기타 참고자료

- 최종 정산 보고시에는 세부내역별 집행조서와 증빙자료, 착공전·후 시설물별 사진 제출

'99농림사업시행지침(안)

□ 대상사업 :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건설(공공)

- ①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건설
- ② 농산물 도매유통 시설보완(신규)

□ 주요내용 및 변경사항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 건설>

'98(현행)	'99(안)
<p>2. 시책 및 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건설목표 : 2001년까지 34개소 건설 ○ 농산물 공판장 목표 : '98까지 34개소 건설 <p>5. '98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 국고보조30~50% 지방비70~50% - 공판장 : 국고보조40, 지방비20, 국고융자20, 자부담20% * 융자조건 : 연리5%, 3년거치7년 균분상환 	<p>2. 시책 및 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2002년까지 추가건설 13개소(화훼 공판장 1개소 포함) * 총 국고지원건설 목표 : 47개소 <p>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 국고보조70% 지방비 30% * 보조율적용은 '98까지 편성된 국고예산액 만큼 지방비도 종전부담율에 따라 '98 까지 확보(집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만 적용됨 - 공판장 : 국고보조40, 지방비10 국고융자30, 자부담20% * 융자조건 : 연리6.5%, 3년거치7년 균분상환

'98(현행)	'99(안)
<p>○ '98사업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 12개소, 국고보조58,652백만원 * 4개지역 미반영 : 진주,원주,강릉,고양 - 공판장 : 11개소('97사업7, '98신규3·확장1) · 국고11,923(보조7,948, 융자3,975) <p><추진체계></p> <p>다. 대상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공판장 : 신규선정 계획 없음 <p>라. 사업시행</p> <p><추가></p> <p><행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식 : 전년도 서식에 준하여 작성 제출 	<p>○ '99사업비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 12개소, 76,672백만원 * 성남, 고양은 물류센터 예산에 편성 - 공판장 : 5개소, 6,720백만원 · 농산물(4개소)4,200, 화훼(1)2,520 <p><추진체계></p> <p>다. 대상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 신규선정 계획 없음 ○ 공판장 : 산지공판장을 건설하되 경매식 집하장을 공판장으로 전환 희망지역 우선 선정 지원 (화훼공판장은 본지침에 따라 농산 원예국에서 별도선정 추진) * '99년도에 신규 공판장건설 지역은 '98.11.30까지 신청 <p>라. 사업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법인(또는 도매인)이 하역료를 부담토록 조치(보조금교부 조건 참조) ○ 도매시장 개설구역내 유사시장 흡수 방안 등 정비계획 병행 추진 <p>○ 보고서식 : 전년도 서식에 준하여 작성화되, 사업개요, 연도별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사유등으로 구분), 비목별 연도별 집행내역, 연말 까지 집행계획 등 포함 작성</p>

<농산물 도매유통 시설보완>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구 분	도매시장 시설보완	공판장 시설보완
○ 지원대상	○ 국고지원으로 개설한 공영 도매시장의 시설을 정비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시(市)	○ 공판장을 개설한 농협회원 조합(청과부류공판장에 한함)
○ 지원내용	○ 기존시설의 개보수, 시설설치비(저온저장시설, 주차시설, 전산관련 부착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 이전·확장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등 기존유통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 *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의 세부 집행범위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건설사업편을 준용하고 전동차, 지게차 등 기계 장비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공공)」에서 지원	
○ 지원기준 및 조건	○ 국고보조70%, 지방비30%	○ 국고보조40%, 지방비보조10%, 국고융자30%, 자부담20% ○ 융자조건 등 - 조건 : 연리6.5%, 3년거치7년 균분상환 - 채권보전 : 농협의 여신관계 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함

나. '99 사업비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안(재원명)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개소 16	백만원 25,570	17,900	16,230	1,670	6,557	1,113
도매시장 시설보완	6	20,000	14,000	14,000	-	6,000	-
공 판 장 시설보완	10	5,570	3,900	2,230	1,670	557	1,113

* 공판장시설보완은 청과부류에 한함

2.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99 신규사업 희망지역은 '98. 11. 30까지 신청

※ 이 사업은 '99년부터 시행예정인 신규사업으로 추후 예산이 조정되거나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추후 그 내용을 별도 시달할 계획임

27 **농산물 물류표준화(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과장 김영만, 농업 사무관 박백화)입니다.

1. 목 적

-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물류표준화, 하역 기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와 관련된 기기, 용기, 설비를 규격화·기계화
-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Unit Load System)에 맞는 장비·시설을 보급하여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적재, 하역기계화 할 수 있는 일관 수송체계 구축
- 농산물뿐만 아니라 비료, 사료, 농자재 등에 다용도로 사용토록 연계 추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농산물의 표준출하규격화)
-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 제6조, 제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92-'97까지	'98 실적	'99 예산(안)
사업량(개소)				292
사업비 1)	계(백만원)	8,750	7,225	17,500
	보조	-	-	8,750
	용자	7,000	5,780	5,250
	지방비	-	-	-
	자부담	1,750	1,445	3,500

1)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에 포함되지 않음.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농산물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포장 및 시설·장비 규격을 표준규격으로 정비하고, 관련시설·장비 등을 지원
 - 현행 “표준출하규격”을 ULS통칙에 맞도록 정비하고, 규격상품화 시책과 연계 추진하여 “고유상표단위유통” 진전
 - 농산물 유통시설·장비를 ULS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
 - 파렛트를 이용한 출하체계(Pallet pool system)와 냉장유통체계(Cold chain system)구축

나. 대상사업 : 파렛트·지게차·전동차·광폭차량구입비, 유통시설 개·보수 자금

다. 지원대상자

- 생산자조직(농협 및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법인화된 조직 등)
- 공영도매시장·농산물공판장(도매시장법인·공판장포함, 하역회사 또는 하역노조, 수집상 등), 농산물 물류센터, 농협유통(주), 정부지원 가공공장저온 저장업체 등
 - 단, 공영도매시장·농산물 공판장의 유통시설 개·보수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개소(조직)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 200백만원

- 한도액 범위내에서 생산자조직(업체)이 대상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시설장비의 운용효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지원

마. 세부 사업별 지원단가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사업단가	비 고
○ 파렛트 (PE재질, 1.1×1.1m)	30	○ 나무 및 상자(철재) 파렛트 단가는 실거래 가격 적용
○ 지게차	20,000	○ 핸드잭 단가는 실거래 가격 적용
○ 전동차	7,000	○ 실거래가격 적용
○ 광폭차량	25,000	○ 표준파렛트 2열적재가능5톤이상광폭차량
○ 유통시설·개보수 (100평기준)	100,000	○ 선별(과)시설, 포장시설, 저온저장시설, Deck 시설, 선반시설 설치 등

바.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사업비 단가 기준 50%보조, 30%융자, 자부담 20%
 - 나무 및 상자(철재)파렛트, 핸드잭 등 기기·장비는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실거래가격 기준(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
- 융자조건 : 연 6.5%, 3년거치 7년상환

사. '99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비			
	계	보조	융자	자부담
물류표준화사업	17,500	8,750	5,250	3,500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나. 신청자격

- <사업개요> “다”항의 지원대상자

다. 신청절차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라.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 기준에 따라 선정
- 공영도매시장 등은 취급물량,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유통 시설에 대한 물류진단 실시기관(유통공사, 농협)의 물류진단 결과 제출시 우선권 부여

○ 우선 순위

- ① 물류진단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등)으로부터 물류진단을 받은 생산자 조직 또는 업체
- ② 시범농협,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 ③ 생산자단체, 작목반(회) 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 평가(농검)에 따라 상위등급 조직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 ④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 선정절차

- 사업자는 농림사업 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별지제1호서식) 및 물류진단표(별지제2호서식)를 시·군에 제출
 - 서울시 소재 사업자는 서울시에 제출
- 시장·군수는 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사업자의 능력, 추진의지 등을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지원우선순위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부장관은 사업추진계획서를 검토하여 분야별 지원규모를 조정·배정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유통정책과 (02 - 504-9412)
- 시·도 : 농정과 또는 농산물유통과
- 시·군 : 농산과, 유통과 또는 산업과

다. 사업시행

1)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비는 개소당 사업비 지원한도액 및 개별기기·시설개보수 기준단가 범위내에서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
-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업비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대출 취급기관 또는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대출실행 또는 보조금 지급
 - ※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훈령 제948호, '98. 7.23) 제13조 및 제14조 참조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비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교부된 보조금은 조직대표의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시공업체에 지급
 - 기계 및 장비구입시에는 물품구입 영수증 확인으로 정산가능

- 시설개보수 자금은 기존 시설을 ULS 통칙에 맞게 개보수하거나, 저온 저장고 설치, 포장기, 선별기 등 유통관련 기기구입 자금으로 사용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변경 가능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지원받은 장비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당해연도에 지원된 장비를 확인하고 규격이 다르거나,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지원자금 회수 조치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원장비·시설의 선량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물류표준화 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지원된 시설·장비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나. 보 고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는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다음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종료시 완료보고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시·군

나. 대상사업 : 파렛트·지게차·전동차·광폭차량구입비, 유통시설개·보수 자금

다. 지원대상자

- 생산자조직(농협 및 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법인화된 조직 등)
- 공영도매시장·농산물공판장(도매시장법인·공판장포함, 하역회사 또는 하역노조 수집상 등), 농산물 물류센터, 농협유통(주), 정부지원 가공공장저온 저장업체 등
 - 단, 공영도매시장·농산물 공판장의 유통시설 개·보수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신청절차

-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농림사업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사업대상자 → 시·군 → 시·도 → 농림부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준용) 1부.

바.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평가에 따라 선정
 - 공영도매시장 등은 취급물량,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우선 순위
 - 물류진단을 받은 조직(업체)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시 최우선권 부여
 - 시범농협,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우선지원
 - 생산자단체, 작목반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 평가(농검)에 따라 상위등급 조직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 선정절차

- 사업자는 농림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 서울시 소재 사업자는 서울시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추진의지 등을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지원우선순위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부장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분야별 지원규모를 조정·배정

【 별첨 】

생산자조직 분류기준

등 급	활 동 기 준
최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으로 등급내 품질이 균일 (선과장, 포장센타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선별) ○ 견본거래, 통명거래의 실시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등급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은 같은 가격을 받음) ○ 공동계산제 실시 ○ 조직원의 총 출하량중 공동출하 비율이 70% 이상
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고, 자체 품질관리요원이 출하품 점검을하여 등급별 품질의 균일화는 이룩했으나, 농가간 약간의 품위차이가 있어, 가격차 발생으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선과장, 포장센타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농가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도 농가별 가격차 발생) ○ 공동수송, 개별경매 체계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50%이상
일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은 하고 있으나, 자체 품질관리 활동이 적고,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하며 조직활동이 우수조직에 미달하는 조직

(별지제1호서식)

물류표준화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 조직명) :

2. 현 황

조직 현황	조직명				전화번호			
	주 소							
	조직결성일							
전년 재배 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출하시기	
	· · · ·	ha			톤			
전년 시설 운영 상황	총출하량				규격출하량	품질인증량	선별(과)량	
	톤	일반출하량	공동출하량			톤	톤	톤
	(100%)	(%)	(%)					
	상 표 명	※ 포장상자 표시						
	활 용 일 수							
주요 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 등							
공 동 유 통 시 설 보 유 현 황	집하장	직판장	선별 (과)장	저 온 저장고	일 반 창고	예냉고	선별 (과)기	기타공 동 시 설 및 장 비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물 류 기 기 보 유 현 황	파렛트	지게차	전동차	운송차량		핸드잭	컨베이어	
	매	대	대	○톤 : ○대 ○톤 : ○대 계 : ○대		대	대	

3. 기기구입 및 시설보완 계획

가. 기기구입 계획

(단위 : 천원)

기기명	수 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	융자	자부담	
○ 파렛트 ○ 지게차 ○ 전동차 ○ 운송차량 · · ·							
계							

나. 시설개보수

(단위 : 천원)

시설명	평	단 가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	융자	자부담	
· · · ·							
계							

(별지 제2호서식)

물 류 진 단 표

- 주요취급품목 :
- 물류진단 실시내역
 - 기 간 :
 - 진단기관 :
 - ※ 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 또는 자체
- 물류시설·장비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항 목	운 용 실 태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 하(입하)○ 상 차○ 운 송○ 하 차○ 입고·적재○ 출 고○ 선별·포장○ 시설운영		

※ 물류표준화 관점에서 진단을 실시하되,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과장 박병원, 농업사무관 심재규), 채소특작과(과장 홍순기, 농업사무관 이재욱), 가공산업과(과장 정병학, 서기관 이능완), 축산경영과(과장 김남철, 행정사무관 정병규)입니다.

1. 목 적

- 경쟁 가능성이 있는 과실, 화훼, 김치, 채소, 축산물(생축포함)에 대하여 WTO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 확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현재 수출이 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수출확대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
- 품목별, 국가별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을 차등 지원

3.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11조(협정이 허용하는 수출지원 확충)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6조(농수산물의 수출 촉진)
 WTO/농업협정 제9조(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 허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0~'97	'98	'99	2000~2004
사업량	과실(톤)	21,205	11,640	11,640	75,000
	화훼(천상자)	276	524	397	1,778
	김치(톤)	18,390	12,857	11,600	69,000
	채소(톤)	11,250	27,660	16,000	107,000
	축산물(천상자)	-	-	5,010	35,330
사업비	계	13,751	9,925	13,659	91,774
	○ 보 조	13,751	9,925	10,152	74,109
	- 과 실	10,310	3,492	3,492	30,000
	- 화 훼	923	2,465	2,065	9,600
	- 김 치	1,357	1,381	1,584	6,831
	- 채 소	1,161	2,587	1,508	10,013
	- 축산물	-	-	1,503	17,665
	○ 용 자	-	-	-	-
	○ 지 방 비	-	-	-	-
	○ 자 부 담	-	-	3,507	17,665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목 적

- 경쟁가능성이 있는 과실, 화훼, 김치, 채소, 축산물류에 대해 수출잠재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물류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촉진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과실류(사과, 배, 단감등), 화훼류(백합, 선인장 등), 김치·채소류, 축산물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축 등) 수출에 필요한 포장, 선별, 운송비 등 수출물류비용 지원(축산물류는 포장 상자만 지원)
- 추진경위 : 과실류 '90년부터, 화훼류 '94, 김치·채소 '96, 축산물 신규
- 사업시행 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대상 : 과실·화훼·김치·채소류 수출업체, 수출육가공업체, 종돈 수출농가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단, 축산물은 30%)

나. '99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백만원 13,659	10,152	10,152	-	-	3,507
○ 과 실	11,640톤	3,492	3,492	3,492	-	-	-
○ 화 훼	397천상자	2,065	2,065	2,065	-	-	-
○ 김 치	11,600톤	1,584	1,584	1,584	-	-	-
○ 채 소	16,000톤	1,508	1,508	1,508	-	-	-
○ 축산물	5,010천상자	5,010	1,503	1,503	-	-	3,507

라.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99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9. 1월까지 농림부에 보고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실시

마. 사업시행(추진일정)

- (1) 사업계획 수립(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부 승인 : '98. 12~'99. 1월
- (2) 사업추진 : '99. 1. 1~'99. 12. 31
- (3) 사업정산실적 보고[연 2회, 별지 1호 서식]
 - 상반기 정산실적 보고 : 7. 15까지
 - 최종 정산실적 보고 : 익년 1. 30까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 추진상황 현지확인 및 평가분석

나. 보 고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 및 평가분석 결과를 농림부에 보고
 - 상반기 보고 : 7. 15까지
 - 최종 보고 : 익년 1. 30까지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기에 보고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 과실, 화훼, 김치, 채소, 생축 및 축산물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자(생축의 경우 수출과정에서 물류비를 실제로 부담하는 자)

()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품목별 또는 단지명	대표 자 (1)외 농가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세부 사업 명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회				집행(정산)실적				대 비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착 공 일	준 공 일
						국고 보조 (C)	읍 차 보조 (D)	지방 비 보조	자 부 담	국고 보조 (E)	읍 자 보조 (F)	지방 비 보조	자 부 담	국고 (C- E)	읍 자 (D-F)				
합 계				%															

주). 가.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구입 또는 지원하는 계획대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kg, 톤, 상자 등으로 기재

나.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구입 또는 지원하는 품목 등을 기재.

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라. 차년도이월액 및 불용 또는 집행잔액도 국고와 읍자로 구분작성

마.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사업주체별(농가,법인, 작목반등)로 위 양식에 맞추어 세부정산실적을 별지로 작성.첨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장과(과장 하영효, 행정사무관 이재성)입니다.

I.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

1. 목 적

- 기존 도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농어민의 출하선택의 폭을 확대
-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소매상 또는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의 가격안정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물류활동 및 상류활동을 종합 수행하는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2004년까지 소비지 유통권을 중심으로 24개소 설치하여 전국적인 직거래망 형성
 - '99년도 신규 6개소는 공공유형으로 추진(지방자치단체소유,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 운영)
 - 2000년이후에는 3년동안 매년 2개소씩 추진예정(공공유형 또는 민간소유형)
- 도·소매가 가능하면서도 부지구입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입지에 우선 설치
 - 도심에서 10~20km 이내의 도시외곽 고속도로 I·C 인접지역
 - 토목공사비 절약이 가능하고, 필요시설의 단층배치가 가능한 지역
-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비절감형 구조로 설치 권장
 - 집배송장, 소매매장, 포장·가공실 및 저온창고 등 현대적 경향에 적합하게 설치
 - 사무실, 편의시설 등 영업활동에 직접 공하지 않는 시설은 최소 설치
- 운영주체에 의한 시설관리 및 운영을 일원화(임대 및 전대금지)하고 새로운 유통경로 구축
 - 청과, 축산(정육), 수산(생선)등 주요 농수산물의 산지직거래 형태 운영
 - 가공식품, 특산식품 및 생필품 등도 일정비율 취급하여 농산물 수요창출 및 쇼핑 편의 제공

3.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4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2004년
사 업 량		8	2	2	6	2	4
사 업 비	계	백만원 282,650	139,296	56,056	119,837	234,782	410,541
	보 조	92,500	40,004	16,858	69,218	156,900	287,379
	용 자	109,900	31,500	11,170	10,690	5,117	-
	지방비	-	-	-	17,767	59,263	123,162
	자부담	80,250	67,792	28,028	22,162	13,502	-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 경

- '94. 5 농안법과동에 따라 마련된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의 핵심과제로서 2004년까지 대도시외곽에 16개소의 물류센타 건설 결정
 - '98년까지 12개소 선정('98년말까지 4개소 개장)
- '98 수립 「농산물 유통개혁대책」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하여 지원기준 조정 및 신규사업 확대 추진(2004년까지 24개소 설치)
 - '99 신규사업 6개소 추진 및 2000년이후 3년동안 매년 2개소 추진예정

□ 자금지원 대상자

- 단독추진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
 - * 단,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지방공사, 공단이외에 출자출연법인(상법상회사)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 컨소시엄추진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가 공동출자하여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법인

□ 지원기준

- 단독추진

유 형	기 준		'99부터 적용
	'95~'96 신정지역	'97~'98 선정지역	
<공공유형> ·지방자치단체 단독 소유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 유통업체 운영(분할 운영금지)	부지구입비 : 70% 용자 건설공사비 : 70% 보조	50% 용자	총사업비 : 70% 국고보조 지방비 : 30%
		50% 보조	부지제공 : 지방자치단체 (부지평가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인 경우) 시설비 : 국고보조
<생산자단체유형> ·생산자단체가 소유 및 운영	“	“	부지매입비 : 50% 용자 시설비 : 50% 보조
<전문유통업체유형> ·전문유통업체가 소유 및 운영	건설공사비 60% 용자		총사업비 : 80% 용자 (기존사업의 잔여사업비에도 적 용)

* 총사업비(부지매입비+시설비) 제외 : 국공유지, 자기소유토지나 건물

* 용자조건 : 연리 4.5%(민간 6.5%), 5년거치 10년상환

- 컨소시엄추진

- 각주체의 출자액을 그 주체의 총사업비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전문유통업체가 단독 추진시의 지원조건을 각각 적용

□ 지원조건

- 농수산물 물류센터 시설기준 및 운영지침 준수
- 농수산물 물류센터 평가협조 및 평가결과 수용
- 기타 농림부장관의 운영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지시준수

□ 지원범위

[부지매입비]

- 집배송장, 소매매장, 지원시설 등 설치용 부지매입비

[시설비]

1) 집배송장

- 농산물(청과, 축수산물, 양곡) 취급용도로만 인정
 - 비농산물(가공식품, 일반식품, 특산식품, 생필품 등) 취급을 위한 집배송장 설치 금지
- 집배송장과 소매매장의 합계가 연면적의 60% 이상일 것
 - * 연면적계산 : 옥내주차장, 별도으로된 쓰레기처리시설·수위실, 예외적으로 인정한 시설 제외

2) 소매매장

- 설치기준
 - 소매매장 면적이 전체매장(집배송장+소매매장) 면적의 50% 이하일 것
 - 비농산물 부류에 제공되는 면적이 소매매장 면적의 40% 이하일 것
 - 비식품(생필품) 매장면적이 소매매장 면적의 15% 이하일 것
- 계산방법
 - 집배송장과 소매매장 면적은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소포장·가공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제 매장으로 제공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3) 필수지원시설

- 규모 : 연면적의 15% 이하(기타 지원시설을 필수지원시설로 전용하여 초과하는 것은 가능)
- 종류 : 소포장·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 및 일반창고

4) 기타 지원시설

- 규모 : 연면적의 25% 이하
 - 종류 : 물류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사무실, 편의시설 및 기타공간
 - 직원용 : 사무실, 전산실, 출하주 및 거래처상담실, 식당, 강당, 회의실, 쉐어링실, 샤워실,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등
 - 고객용 : 간이휴게실, 간이식당, 간이금융점포, 주차장 등
 - 기 타 : 품질관리실,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시설, 용역업체사무실, 공용면적 등
- ※ 옥내주차장, 별도도로된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시설, 수위실, 예외적으로 인정한 시설은 기타 지원시설 면적속에 포함되지 않음

5) 물류설비

- 지원대상 : 물류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수적인 기계 및 장비

구 분	종 류	기 능
물류기계 저온저장고	지게차, 대차, 컨테이너, 팔렛트 예냉시설	집배송장의 기계화.자동화 채소류 신선도유지 및 상품 차별화
소포장·가공실	자동소분기, 삼면포장기, 수축포장기, 랩포장기, 팔렛트랩핑기	부가가치창출 및 위생처리
축수산장비	자동라벨포장기, 현수시설, 절단기, 육절기, 고압세척기, 자외선소독기, 작업배	“
전산장비	주컴퓨터(서버), 팀 POS	전자수발주 시스템 구축

* 제외 : 쇼핑카드, 사무용기구, PC, S/W개발비용, 주방기구, 집기류 등

[사업계획 승인전에 이루어진 사전기성고]

- 사전기성고 인정의 필요성
 - 사업승인 이후에는 대규모 부지구입이 어렵고
 - 인·허가, 설계 등 복잡한 사전준비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이므로
 - 사업기간 축소와 민간건설의 원활화를 위하여 자부담 우선투입을 일정한 요건하에서 인정 필요

○ 사전기성고 인정요건

- 시점 :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이후에 계약·착공 등이 이루어진것(단, 부지구입은 지자체 신청일로부터 6개월전에 구입한 것도 물류센타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로 구입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인정)
- 내용 : 지원대상시설 및 장비로서 사업계획으로 승인된 것
- 사전보고 : 공사의 필요성 및 공사내역등을 사전에 신고

○ 사후관리 및 목적외 사용방지

- 미선정시에는 잔여공사를 전액 자부담으로 건설하고 사전기성고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 일체의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지원금액이 물류센타 사업비 상환에 소요되는 증명서 제출(대출관계 서류 등)

□ 지원범위 초과시 대책과 예외

- 설치기준을 초과한 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산편성 및 사업비 정산의 대상이 아님)
 - 예) ① 비농산물용 집배송장 설치
 - ② 소매매장 설치기준 초과면적
 - ③ 필수지원시설 허용기준 초과면적
 - ④ 기타 지원시설 허용기준 초과면적
 - ⑤ 공공유형의 분할임대면적
- 설치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이 가능한 것.
 - 농림부장관이 입지, 상권, 지역특성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할 것
 - 예) 취급부류, 매장면적변경, 지자체의 정책적 추진시설, 특수한 물류설비 등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 (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2	백만원 119,837	79,908	69,218	10,690	17,767	22,162
<계속지역>							
천 안	1	16,154	11,308	11,308	-	-	4,846
전 주	1	6,571	4,600	4,600	-	-	1,971
군 위	1	10,143	7,100	7,100	-	-	3,043
대 전	1	9,510	4,755	4,755	-	-	4,755
금 산	1	2,520	1,260	-	1,260	-	1,260
용 인	1	15,717	9,430	-	9,430	-	6,287
<신규지역>							
서울시	2	21,429	15,000	15,000	-	6,429	-
광역시	2	15,169	10,618	10,618	-	4,551	-
전 환	2	22,624	15,837	15,837	-	6,787	-

* 용자조건 : 연리 4.5%, (민간 6.5%) 5년거치후 10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국 시장과(02-504-9415~6)
- 시 도 : 농산물유통과 또는 농정과
- 시군, 자치구 : 유통과 또는 산업과

다. 사업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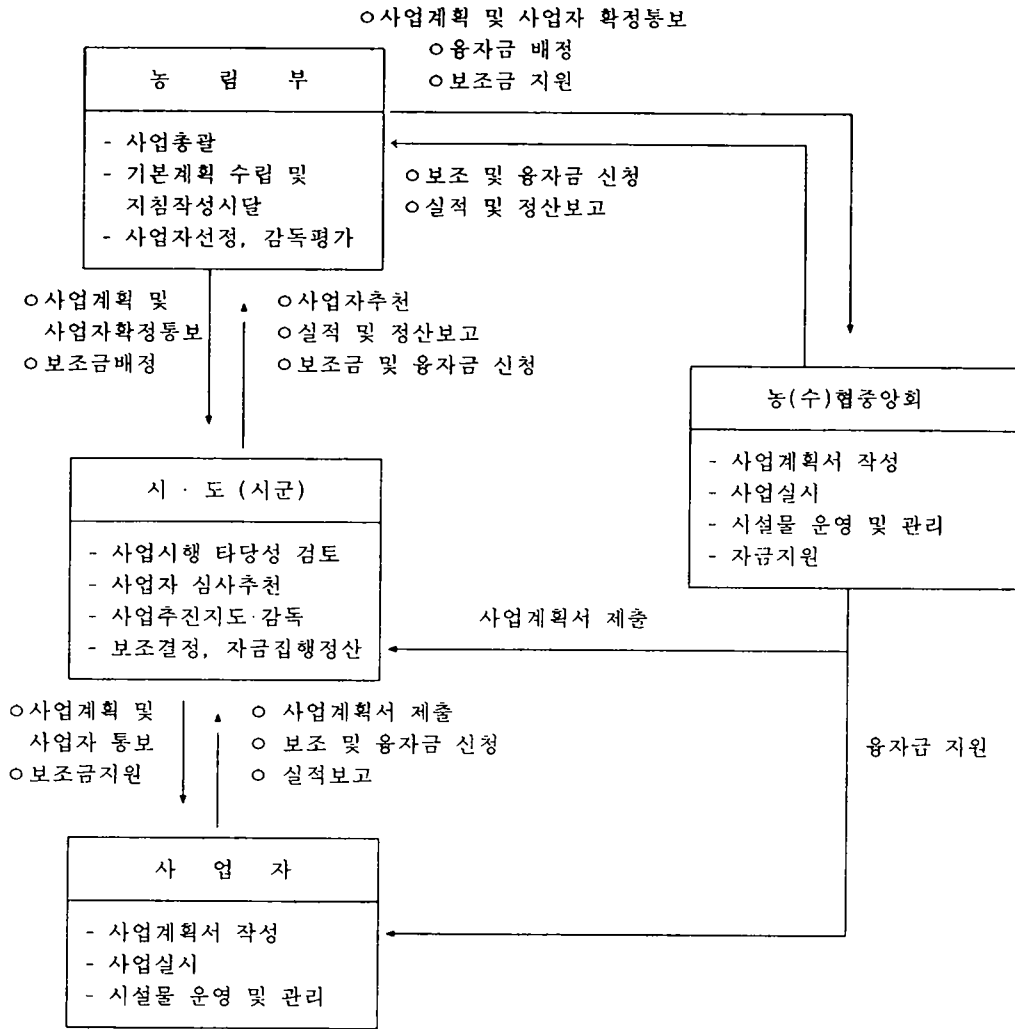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사업시행자)는 세부적인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농림부장관은 사업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개시연도 10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로서 자격을 취소하고 사업자금지원을 회수, 또는 중단할 수 있음
 - 부지매입, 건축설계, 건축허가 등 추진상황이 부진한 사업자에게도 자금 등 지원보류
- 사업대상자는 물류센터 건설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 사업비 지원방법

-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 계약체결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농림부에 용자신청
- 건물비는 기성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농림부에 보조신청
-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책임을 지며 사업의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
 - 보조금(용자금 포함)의 집행상황(교부결정, 검정, 정산 등)을 분기별로 보고

라. 사업시행체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에 지도·감독의 책임을 짐.
 - 농수산물 물류센터 관리책임자는 별도의 운영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 농림부장관은 시설물의 관리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조사·평가감독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 시정명령 등을 할수 있음
 -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관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 건물 - 물류설비	1998	2,025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수 없다. 다만, 사후관리기간중 사정변경으로 상기행위를 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 준용

나. 보고·기타

-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공사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이상유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건설추진상황을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수산물 물류센터 사업주체는 본사업의 운영상황을 연1회 이상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생산자단체의 장

나.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유통자회사 포함),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민간 유통업자
-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수시로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년도 3. 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예정지역의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규상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라. 구비서류

-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운영계획서(공공유형)
- 편익비용(B/C)분석 (별지 제2호 서식)

마. 사업자선정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소비지 유통권역을 중심으로 건설부지를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자
 - * 산지로부터의 집하 및 소비지로의 분산을 위한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서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
- 유통분야에 사업경험이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로서 경영능력과 사업의지가 확고한 자.
 - * 시설비(자부담과 담보능력)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자
- 산지의 출하조직과 연계계획 및 출하조직의 반응이 좋은 사업자로서 보다 안정적이고 규모있는 소비지의 판매조직을 확보하고 있거나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 확실한 자

□ 심사 및 평가요소

- 사업자 및 조직의 사업수행능력
 - 사업동기의 투명성 및 신뢰성, 사업자의 의지와 능력
 - 농수산물 유통 및 연관분야 사업경력, 사업실적
 - 조직화 정도, 자기자본 부담능력 등
- 사업예정지의 입지여건
 - 유통권역의 상품공급 및 소비규모, 소비인구
 - 유통권과의 수송거리, 도로교통여건
 - 사업장 부지확보, 토지이용가능성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 계획물량의 적합성, 물량대비 시설규모의 합리성
 - 상품수집계획의 합리성과 산지출하조직의 확보가능성
 - 상품 분배계획의 합리성과 소비지 판매망의 확보가능성 등

□ 선정절차

- 농림부장관은 사업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한 심사 및 평가요소 (사업자 및 조직, 사업장의 입지,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물량확보 가능성 등)를 설정하여 사업희망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 한 후 시·도지사 또는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바.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계신분은 농림부 유통정책국 시장과 (전화 504-9415, 9416)로 문의

[별지 제1호 서식]

농수산물물류센타 건설사업 계획서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3. 사업대상자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입지

○위 치 :	도 시 동	번지[위치약도(1/5,000축적지형도) 첨부]	
○부지면적 :	(소유자명 :)		
○지목 및 지역(지구)명 :			

- * 입지선정 사유(주변현황 등)
-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나. 사업규모 및 투자내역

(단위 : 평, 백만원)

구 분	규모	사업비		주요기능
		단가	금액	
○부지(6,000평 이상) ○건물(3,000평 이상) <기본시설> -집배송장 -소매매장(농산물·가공품·생필품 구분) <필수지원 시설> -소포장·가공실 -저온저장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일반창고 <기타 지원시설> -사무실·전산실 -품질관리실 -출하주 및 거래처 상담실 -직원용편의시설(식당,강당,회의실,갱의실,샤워실,경비실,용역업체사무실) -고객용 편의시설(휴게실·간이금융점포) -기계실·전기실 -공용면적(용도별로 구분) -옥내주차장 ○쓰레기 및 오·폐수처리시설 ○옥외배송장				

다. 물류설비

구 분	품 명	단 가	갯 수	구입비	비고(기능)
물류기계					
포장기기					
축수산장비					
전산장비					
기 타					
세					

라. 사업추진 일정 :

마. 사업운영 및 관리방안 : 수집방법, 판매방법, 콘소시움의 경우 투자 및 운영방안 등 포함

5. 연차별 수지전망 : 편익비용 분석

- ※ 첨부서류 : 1.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
 2. 사업예정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3. 운영계획서(공공유형)

<세부시행계획 작성시 고려사항>

I 사업자 및 조직부문

- 사업추진 동기
 - 농수산물물류센터 사업추진목적 및 기본방침
- 사업신청자의 사업경력
 - 농수산물유통분야, 관련분야, 기타 사업경력으로 구분(각부분 최근 3개년 간 매출액 실적자료)
- 재무구조
 - 총사업비 산출근거 및 자부담 조달방법
 - 재산상태 및 자금확보 여력

II. 입지여건 부문

- 유통권역의 규모
 - 상품공급권역의 도시 및 인구상황
- 유통권역과의 수송시간 및 도로교통 여건
 - 상품공급권역 중심권 지역까지의 수송시간 및 예정부지 주변의 도로상황
- 부지확보 여부
 - 예정부지의 확보가능성 및 부지확보 추진내용
- 토지이용 가능성 여부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농지전용허가 가능여부
 - 건축허가 가능여부 및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여론

III.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물량확보 가능성 부문

- 취급물량 및 시설의 규모
 - 인근 유통권역의 농수산물 연간 수요량
 - 연간 취급품목별 계획물량 및 산출근거
 - 주요 시설의 규모 및 운영계획
- 상품수집 및 분산계획
 - 산지 출하조직과 소비지 판매조직의 확보상황 및 향후 확보계획
- 정보전산화 구축계획
 - 산지 출하처 및 소비지 판매처와 물류센터간 정보전산화 구축 및 개발계획

편익비용 (B/C) 분석

(단위 : 백만원)

		사업년도	1차년도	2차년도	---- 9차년도	합 계
비용 (C)	고정비용	토지구입비 건물구입비 각종기계구입비 화재보험료 전속인건비 기 타 소 계				
		직접노무비 원료구입비 전기료 수도료 일반관리비 각종세금 기 타 소 계				
	합계(가)	현재가치 (가)	$가 \times 1+r$	$가 \times (1+r)^2$	$(가) \times (1+r)^9$	TC(총비용)
편익 (B)	수탁사업	선별 포장 등 각종수수료 저장 기 타 소 계				
	매취사업	가공 및 판매 금액				
	합계(나)	현재가치 (나)	$나 \times 1+r$	$나 \times (1+r)^2$	$(가) \times (1+r)^9$	TB(총편익)
B/C	나 / 가					TB/TC

<작성시 유의사항>

○ 고정비용

- 토지구입비는 전액을 사업년도에 일괄계상하고 1차년부터 9차년도까지는 공란으로 하되 토지 임차시에는 임차료를 매년 기재
 - 건물구입비(건축비)는 국고 및 지방비 보조를 제외한 자부담금(융자포함) 금액을 사업년도에 일괄 기재하되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는 공란
 - 각종 기계구입비는 건물구입비 기재요령과 같음
 - 전속 인건비는 가동율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직원 인건비를 매년 기재
 - 화재보험료와 기타는 매년 발생하는 금액을 매년 기재하되 지불이자(자기 자본금 이자포함)와 감가상각비는 제외
- ※ 기존유통시설(토지, 건물, 각종기계등)을 활용할 경우· 구입당시가격을 사업년도에 기재

○ 가변비용

- 직접노무비, 원료구입비, 전기료, 수도료, 일반관리비, 각종세금 기타는 모두 매년 발생예정액을 매년 기재

○ 판매사업

- 가공 및 판매사업 인한 조수입액을 매년 기재

○ 현재가치

- 미래 비용과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임
- r은 0.06으로 계산

○ 기타

- TC : 비용의 현재가치의 합계
- TB : 편익의 “
- B/C : TB
TC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합계만 기재

II. 소비자단체 물류시설 지원

1. 목 적

- 소비자단체에 물류시설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새로운 유통경로를 구축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정례화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정착 도모
- 포장센터 등 산지 유통시설 확충에 따른 소비자와의 연계체제 구축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산물 직거래제도의 조기정착과 새로운 유통경로 구축을 위하여 소비자단체의 농산물 물류시설 건설비 또는 임차료 지원으로 2002년까지 소비지 유통권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류시설 35개소 건설비 지원
 - '99년도 시범적으로 신규 5개소 추진
 - 2000년도 이후에는 3년 동안 매년 10개소를 민간유형으로 추진예정
- 소비자단체의 규모와 자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소규모로 다수 설치
 - 대도시 외곽의 부지에 창고형으로 설치하여 사업비 절약

3. 근거법령

-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 3
- 동 법 시행규칙 제32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개소, 백만원)

구 분	'98예산	'99예산안	2000	2001	2002	계
소비자단체물류시설지원						
○ 사업량	-	5	10	10	10	35
○ 사업비(음자)	-	1,498	3,000	3,000	3,000	10,498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배경

- '98수립 농산물 유통개혁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에 대비하여 소비자단체의 농산물 물류시설 건설비 또는 임차료 지원
- 2002년까지 대도시에 35개소의 농산물 물류시설 건설지원으로 농산물 직거래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

자금지원 대상자

- 소비자단체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단체
-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지원기준

-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4.5%)

지원시설의 종류

- 농수산물 물류센타의 지원범위와 동일
- 다만 임차시에는 임차료 지원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개소,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합계	예산액(재원명)	
			국고융자	자부담
소비자단체 물류시설지원	5	2,140	1,498	642

< 추진체계 >

※ 농산물 물류센타 추진체계를 준용함

< 행정사항 >

※ 농산물 물류센타 참조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소비자단체

나. 신청자격

- 소비자단체(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단체)
- 농림부장관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수시로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년도 3.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예정 지역의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라. 구비서류

-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계획서와 동일

마. 사업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소비지 유통권을 중심으로 건설부지를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단체
 - 산지로부터의 집하 및 소비지로의 분산을 위한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서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

- 유통분야에 사업실적이 있고 경영능력과 사업의지가 확고한 단체
 - 시설비 (자부담 능력)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단체
- 산지의 출하조직과 연계계획 및 출하조직의 반응이 좋은 단체로서 안정적이고 규모 있는 소비지의 판매조직을 확보하고 있거나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 확실한 단체

(2) 심사 및 평가요소

- 사업자 및 조직의 사업수행 능력
 - 사업동기의 투명성 및 신뢰성, 사업자의 의지와 능력
 - 조직화 정도, 자기자본 부담능력 등
- 사업예정지의 입지여건
 - 유통권역의 상품공급 및 소비규모, 소비인구
 - 유통권과의 수송거리, 도로교통 여건
 - 사업장 부지확보, 토지이용 가능성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 계획물량의 적합성, 물량대비 시설규모의 합리성
 - 상품 수집계획의 합리성과 산지 출하조직의 확보 가능성
 - 상품 분배계획의 합리성과 소비지 판매망의 확보 가능성 등

(3) 선정절차

- 농림부장관은 사업자 선정기준을 구체화된 심사 및 평가요소(사업자 및 조직, 사업장의 입지,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물량확보 가능성 등)를 설정하여 사업 희망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 한 후 시·도지사 또는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바. 기타사항

- 농산물 물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농림부 유통정책국 시장과 (전화 504-99415,9416)로 문의

※ 이 사업은 '99년부터 시행예정인 신규사업으로 추후 예산이 조정되거나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추후 그 내용을 별도 시달할 계획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시장과(과장 하영효, 행정사무관 안용덕)입니다.

1. 목 적

- 농산물 직판시설의 확대로 직거래사업의 활성화와 제도정착을 도모하고,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하여 「고효율·저비용」의 유통구조를 실현하고자 함.
- 생산자단체, 대형유통업체, 소비자단체(생협)·법인 등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직거래사업 활성화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가. 직거래시설 지원

- 직거래장터 :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설비를 지원하여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운영
 - 전국 주요 도시지역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30개소(매년 10개소) 건설 지원
- 농민시장 :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 회원조합이 부지제공하고, 중앙정부가 시설비를 지원하여 회원조합이 주관 운영
 - 전국 중·소도시 2002년까지 150개소 건설 지원
 - 초기에는 농산물직판장 위주로 운영하되 입지여건에 따라 원예자재 판매점, 생필품점 등을 함께 운영하여 지역농업의 구심체로 육성
 - 향토음식점 등 기타시설은 연차로 추진(지방비+자담)하여 초기 과잉투자 방지

나. 운영자금 지원

- 직거래장터 운영·참여조합의 직거래사업 추진에 필요한 매취·결제자금 지원
- 대형 소매유통업체에 계약재배, 출하약정 등을 위한 출하선도금을 지원하여 농산물 취급확대 및 경쟁촉진 유도
- 소비자단체(생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 계약재배, 출하약정 등을 위한 출하선도금을 지원하여 직거래 활성화 유도
- 직거래 우수농협에 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유통 활성화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의 3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예산안)	2000년	2001-2004	
직거래 장터 시설	사업량	-	-	-	10	10	10	
	사업비	계	-	-	-	2,000	2,000	2,000
		보조 융자	-	-	-	1,400	1,400	1,400
		지방비	-	-	-	600	600	600
		자부담	-	-	-	-	-	-
농민 시장 건설	사업량	-	-	-	15	30	105	
	사업비	계	-	-	-	6,400	12,600	44,000
		보조 융자	-	-	-	3,200	5,040	17,600
		지방비	-	-	-	1,280	5,040	17,600
		자부담	-	-	-	1,920	2,520	8,800
장터 운영 지원	사업량	-	-	-	-	-	-	
	사업비	계	-	-	11,000	12,000	12,000	32,000
		보조 융자	-	-	-	11,000	12,000	32,000
		지방비 자부담	-	-	-	-	-	-
직거래 우수 농협 지원	사업량	-	-	-	-	-	-	
	사업비	계	-	-	-	15,000	15,000	30,000
		보조 융자	-	-	-	-	15,000	30,000
		지방비 자부담	-	-	-	-	-	-
소비자 단체등 지원	사업량	-	-	-	-	-	-	
	사업비	계	-	-	-	8,000	8,000	18,000
		보조 융자	-	-	-	-	8,000	18,000
		지방비 자부담	-	-	-	-	-	-
대형 소매 업체 지원	사업량	-	-	-	-	-	-	
	사업비	계	-	-	-	10,000	15,000	40,000
		보조 융자	-	-	-	-	10,000	40,000
		지방비 자부담	-	-	-	-	-	-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부지제공 포함)의 가액 및 운영 자금의 자부담금, 농민시장의 경우 기본시설이외 시설물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추진경위

- '98. 2월 당시 대통령 당선자께서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 방문시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 지시
- '98. 7월 대통령께 농산물유통개혁대책 보고시 농산물 직거래 시설비 및 운영자금 지원계획 등 보고

(2) 지원대상자

- 직거래장터 : 시·도(시·구)
 - 서울, 부산, 대구 등 특·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
 - 신청지역이 많을 경우 특·광역시, 도청소재지순으로 우선 지원
- 농민시장 : 농협 회원조합(전문조합 포함)
- 장터운영 지원 : 직거래장터 운영·참여조합(농·수·축·임·삼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 산지농협 지원 : 직거래 우수 농협
- 소비자단체·법인지원 :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 대형 소매유통업체 지원 :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형점·직영점형 체인사업자

(3) 지원규모 및 지원단가

(가) 직거래장터

- 지원시설 : 장터기반정비 및 고정식 비가림시설
- 시설기준 : 매장 200~300평 수준(부지는 가능한 500평이상 확보)
 - 장터바닥, 주차장 등 기반정비
 - 매장형태는 개방형 또는 반개방형으로 하고, 판매대, 통신·전기·수도·화장실 등을 기본시설로 하되 세부기준은 사업추진협의회에서 협의 결정
- 사업비한도액 : 사업수행자가 사업능력 및 입지조건에 따라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를 결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개소당 사업비는 2억원 수준을 원칙으로 함.
 - 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되 사업비에는 포함하지 않음.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지방비는 30% 이상 부담 가능)

(나) 농민시장

- 시설규모 : 대형(300평), 중형(200평), 소형(100평)으로 구분하여 건설
 - 지원범위 : 직판장(보관창고 포함) 및 생필품점, 원예자재판매점 등 부대시설
 - 세부시설 기준은 농협중앙회에서 지침으로 정하여 시달
- 개소당 사업비 : 대형 6억원, 중형 4억원, 소형 2억원 기준
 - 농산물 직판장외에 원예자재판매점, 생필품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총매장면적의 30% 이내로 제한
 - 부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회원농협이 제공하되 사업비에는 포함하지 않음.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국고융자 20%, 자부담 30%(자담은 30%이상 가능)
 - * 2000년이후 국고지원기준은 농산물 유통분야 투융자방식 개선계획이 확정될 경우 변경 가능

(다) 운영자금

- 장터운영지원 : 장터운영실적, 규모 등에 따라 각 중앙회에서 배정하되 장터 1개소당 아래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농협 200백만원, 수협 80, 축협 80, 임협 20, 삼협 20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12회전 이상 사업의무
- 직거래우수 농협지원 : 직거래추진 성과에 따라 1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12회전 이상 사업의무
- 소비자단체·법인 등 : 출하선도금으로 1개 단체에 20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250% 이상 사업의무
- 대형 소매유통업체
 - 채소, 과일류의 계약재배, 출하약정 등 출하선도금으로 지원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의 250% 이상 사업의무

나. '99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세, 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25	53,400	50,880	4,600	46,280	600	1,920
○ 직거래 시설	25	8,400	5,880	4,600	1,280	600	1,920
- 직거래장터	10	2,000	1,400	1,400		600	
- 농민시장	15	6,400	4,480	3,200	1,280		1,920
○ 운영 자금		45,000	45,000		45,000		
- 장터운영자금		12,000	12,000		12,000		
- 우수농협지원		15,000	15,000		15,000		
- 소비자단체등		8,000	8,000		8,000		
- 대형유통업체		10,000	10,000		10,000		

① 재원 : 직거래시설(농특세), 운영자금(농안기금)

② 용자조건

- 농민시장 : 연리 4.5%,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농안기금 사업별 지원조건(금리) 적용, 1년이내 상환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 소비자단체(생협)·법인 지원, 대형 소매유통업체 지원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신청자격

○ 소비자단체·법인지원 :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생협) 및 영농조합 법인

○ 대형 소매유통업체 :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형점, 직영점형 체인사업자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시행세부요령에 의거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또는 소재지 관할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신청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사업시행세부요령을 사업시행전에 일간신문 또는 전문지 등의 광고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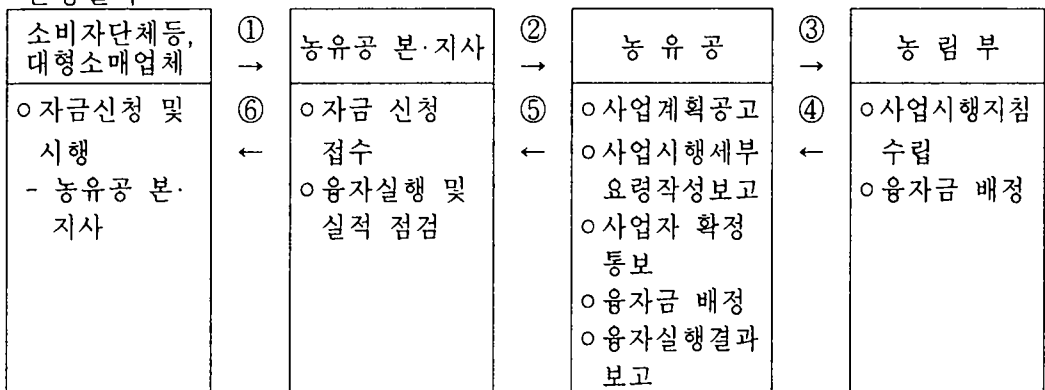
라. 구비서류

- 사업담당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시행 세부요령에 의함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소비자단체·법인 :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유통에 부합되는 영농조합법인
 - 대형 소매유통업체 : 대형점, 직영점형 체인사업자중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
- 우선순위
 - 소비자단체, 법인 : 최근 2개년 직거래 실적이 많은 조직 우선 지원
 - 대형소매유통업체 : 전체매출액중 농산물 취급비중과 최근 2개년 직거래 실적을 50:50으로 반영하여 우선순위 적용
 - * 사업실적 인정 : 농어업인, 작목반, 산지포장센터(수협산지위원장) 등 산지에서 직구입한 것만 인정

○ 선정절차



- ① 사업자금 신청 : 농유공 본사 및 지사
- ② 자금신청 접수
- ③ 사업시행 세부요령 작성보고, 사업공고, 용자실행 결과 보고
- ④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자금배정
- ⑤ 사업실시계획 시달, 용자금 배정, 사업자 확정통보
- ⑥ 용자실행 및 실적 점검

< 추진체계 >

□ 직거래장터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국 시장과 (02-504-9415~6, 02-500-2675~6)
- 시·도 : 농산물유통과(광역시는 농정과)
 - 시·자치구 : 산업과(유통특작과, 지역경제과)
- 생산자단체 : 농·수·축·임·삼협중앙회 직거래사업추진단, 지역본부(도지회)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도지사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9.2월 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99년말까지 사업 완료.
 - 시·도지사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 설치·운영
- 사업비 지원방법
 - 자금집행 절차는 국고보조금집행에 관한 법률, 보조금 집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원한다.

라. 기 타

-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후 시행

□ 농민시장

가.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국 시장과 (02-504-9415~6, 02-500-2675~6)
- 시·도 : 농산물유통과(광역시는 농정과)
 - 시·군·자치구 : 산업과(유통특작과, 지역경제과)
- 농협중앙회 : 직거래사업추진단
 - 농협 각 지역본부 및 회원농협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농협중앙회장이 농림부 지침에 의거 사업기본계획 수립 시달
사업시행자는 사업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사업 계획 변경 시달
- 사업비 지원방법
 - 자금집행 절차는 국고보조금집행에 관한 법률, 보조금 집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원한다.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비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한 후 보조금을 집행 하도록하여야 한다

라. 기 타

-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후 시행

□ 장터운영지원, 산지농협지원, 소비자단체·법인지원, 대형 소매유통업체 지원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국 시장과 (02-504-9415~6, 02-500-2675~6)
- 농·수·축·임·삼협중앙회 직거래사업추진단(장터운영자금, 산지농협지원)
-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지원부·지사(소비자단체·법인지원, 대형 소매유통업체지원)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실시기관은 농림부지침에 의거 세부사업 추진사항 및 추진일정 등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사업추진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실시기관은 지원기준에 따른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자별로 자금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및 보고

(1) 직거래장터, 농민시장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직거래장터의 경우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이 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지사와 농협중앙회장은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직거래장터 농민 시장	준 공 준 공	5년간 1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타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은 공사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이상유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실적보고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은 건설추진상황을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자금요구 :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하여 매월 농림부로 자금배정 요구

(2) 운영자금

- 사업자는 일일 매출실적을 기록관리하는 관리대장(별지4서식)을 비치하고, 대금지급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실적을 사업 실시 기관에 제출
 - 사업실시기관은 지원자별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의무를 미달한 경우는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에 의거 제재

나. 기 타

(1) 직거래시설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은 직거래시설 지원사업의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 책임하에 사업비 정산 및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2) 운영자금

- 장터운영지원중 축협지원분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 등 세부사업 추진사항을 사전에 축협중앙회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협의하되 자금은 축협중앙회가 지원 기준에 따라 배정
- 이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자금융자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대출 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직거래장터 : 농림부
- 농민시장 : 농협중앙회
- 장터운영지원 : 농·수·축·임·삼협중앙회 (직거래사업추진단)
- 직거래 우수 농협지원 : 농협중앙회
- 소비자단체·법인지원, 대형 소매유통업체지원 :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신청자격

- 직거래장터 : 시·도지사
- 농민시장 : 농협회원조합
- 장터운영지원 : 직거래장터 운영·참여조합
- 직거래 우수 농협지원 : 직거래 우수 회원농협
- 소비자단체·법인지원 :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 대형 소매유통업체 :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형점, 직영점형 체인사업자

다. 신청절차

- 직거래장터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99. 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 특·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
 - 신청지역이 많을 경우 특·광역시, 도청소재지순으로 우선 지원
- 농민시장 : 농협중앙회장은 2000년도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99.3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 사업희망조합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장에게 신청
- 장터운영지원, 우수농협지원 : 농·수·축·임·삼협중앙회장이 사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99.6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 소비자단체·법인지원, 대형 소매유통업체지원

- 사업희망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시행세부요령에 의거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사 또는 소재지 관할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신청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사업시행세부요령을 사업시행전에 일간신문 또는 전문지 등의 광고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통지

라. 구비서류

- 직거래장터 : 사업계획서(부지확보 방안 포함)
- 농민시장, 장터운영지원, 산지농협지원, 소비자단체·법인지원, 대형 소매유통업체지원 : 사업담당기관의 사업시행세부요령에 의함

마. 지원대상자 선정

□ 소비자단체·법인 지원 및 대형 소매유통업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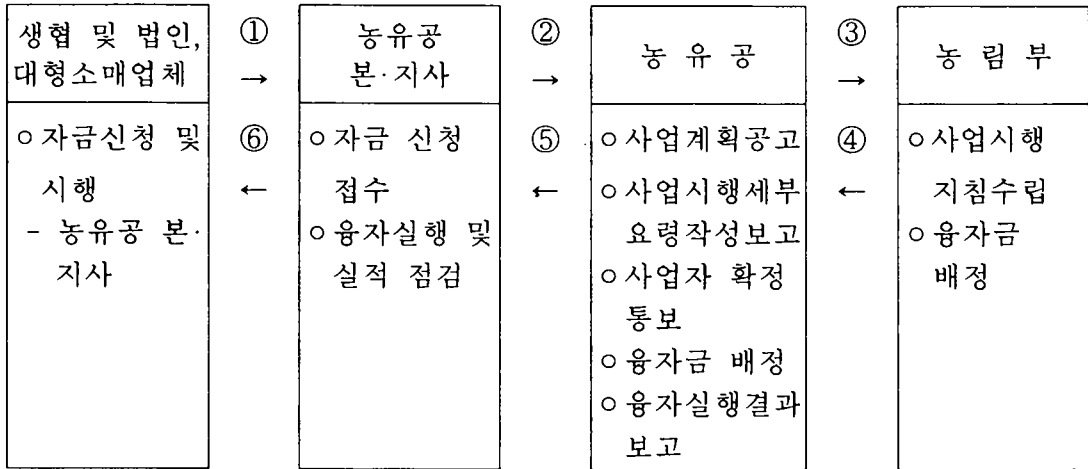
○ 선정기준

- 소비자단체·법인 :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농산물유통에 부합되는 영농조합법인
- 대형 소매유통업체 : 대형점, 직영점형 체인사업자중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

○ 우선순위

- 소비자단체, 법인 : 최근 2개년 직거래 추진실적이 많은 조직
- 대형소매유통업체 : 전체매출액중 농산물 취급비중과 최근 2개년 직거래 실적을 50:50으로 반영하여 우선순위 적용
- * 최근 2년간 사업실적 인정 : 농어업인, 작목반, 산지포장센터(수협 산지위판장) 등에서 구입한 것만 인정

○ 선정절차



- ① 사업자금 신청 : 농유공 본사 및 지사
- ② 자금신청 접수
- ③ 사업시행 세부요령 작성보고, 사업공고, 용자실행 결과 보고
- ④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자금배정
- ⑤ 사업실시계획 시달, 용자금 배정, 사업자 확정통보
- ⑥ 용자실행 및 실적 점검

※ 이 사업은 '99년부터 시행예정인 신규사업으로 추후 예산이 조정되거나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추후 그 내용을 별도 시달할 계획임

< 별지 1호 >

직거래장터 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직거래장터 설치 사업

2. 사업목적 :

3. 사업대상자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입지

○ 위 치 : 시(도) 시(구) 동 번지 (1/5,000 위치약도 첨부)
○ 부지면적 : (소유자명 :)
○ 지목 및 지역(지구)명 :

① 입지선정사유(주변현황 등) :

② 토지관련 법령 등 저촉여부 :

나. 사업규모 및 투자내역

구 분	규 모	사 업 비		조 달 방 법		비 고
		단 가	금 액	국고보조	지방비	
○ 장터설치						
- 기반정비						
- 매장시설						
- 판매대 및 장비 등						
- 기 타						

다. 사업추진 일정 : 세부적으로 작성

라. 사업운영 및 관리방안 : 매장운영 및 관리방안, 판매방법 등 포함

5. 기 타

< 별지 2호 >

심사제외

직거래시설 사업추진실적 보고

1. 사업계획

구 분	규 모	사업비	조 달 방 법			비 고
			국고보조	음 자	지방비(자담)	

2. 사업추진상황

사업자	사업착수	입찰(계약)	착 공	공 정	준공예정일	비 고
	년,월,일	월, 일	월, 일	%	월,일	

- * 장터(시장)별 분기중 추진실적 및 다음분기 추진계획을 일정별로 별지 작성
- * 사업자란에는 시·도명, 농민시장 추진 회원농협명을 기재

3. 사업비 집행상황

사업자	계		국고보조		국고음자		지방비(자부담)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4. 문제점 및 부진사유

- * 추진실적에 대한 부진 및 문제점 발생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 작성대상 : 직거래장터, 농민시장

< 별지 3호 >

총 공통-9

직거래시설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사업자	사업규모				사업비										비고			
	부지		매장		계획				집행(정산) 실적				대비		차이년월도액	불용또는집행잔액	착공일	준공일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국고보조(A)	용자(B)	지방비	자담	계	국고보조(C)	용자(D)	지방비	자담				
계																		

- * 사업자란에는 시·도명, 농민시장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회원농협명 기재
- * 차년도 이월액 및 불용 또는 집행잔액도 국고보조와 용자로 구분 작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 기관은 농림부 시장과(과장 하영효, 행정사무관 정현출), 유통정책과입니다.

1. 목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및 농수산물 물류센터로 농수산물 출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농어민과 소비자 보호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법인과 공판장 등에 출하선도 및 조절용 자금과 대금 결제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출하 유도
- 농수산물 물류센터 기능 활성화와 새로운 거래방식인 예약수의거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매취자금, 출하선도금 및 대금결제자금의 우선적인 융자지원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27조의 2, 제47조, 제57조의 4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지원대상	'92-'95	'96	'97	'98	'99
계	286,725	136,915	172,500	119,920	113,054
도매시장법인	163,300	58,000	87,800	42,506	35,638
농협 공판장	117,703	71,100	68,500	53,516	53,516
수 집 상	5,722	7,815	10,000	8,000	8,000
농수산물물류센터	-	-	6,200	15,900	15,900

* '98이후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출하촉진자금 지원분은 청과부류에 한함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도매시장 출하촉진 및 상장경매제도의 정착지원
농산물 물류센터의 조기활성화와 예약수의거래제도의 정착 지원
- (2) 사업내용 : 소비지 유통개선
 - 재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자금의 종류
 - 출하선도금 : 도매시장법인이 생산자(생산자단체포함) 및 등록된 수집상과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농수산물 물류센터 사업자가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에 출하되어 상장되거나 농수산물 물류센터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자금
 - 매취자금 : 저장성있는 농산물을 성출하기에 확보하여 비축하였다가 단경기에 방출함으로써 물류센터의 안정적인 상품 조달과 소비지 가격안정 도모
 - 출하선도자금 :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농수산물 수집상의 안정적인 출하를 위한 출하조절 및 선도용 자금
- (3) 사업규모 : 사업실적에 따라 용자기관에서 결정
- (4) 지원대상
 -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 제외)의 도매시장법인
 - 제외대상 : 대금 즉시결제 불이행 법인, 거래질서 문란 등 자금 지원 효과가 없는 법인,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지원중단 기간에 해당되는 법인
 -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등록된 수집상
 - 농협중앙회 공판장 및 회원조합 공판장
 - 제외대상 : 대금 즉시결제 불이행 공판장, 거래질서 문란 등 자금 지원 효과가 없는 공판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 농안법 제57조의4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수산물 물류센터
 - 제외대상 :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운영지침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물류센터 운영주체

(5) 지원조건

구 분	융자기간	지원금리
○ 농협공판장 - 선도금, 대금결제자금	1년 이내	5%
○ 도매시장법인 - 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1년 이내 "	5% 8%
○ 농수산물 수집상 - 출하선도자금	1년 이내	8%
○ 농수산물 물류센터 - 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 매취자금	1년 이내 " "	5% " "

※ 사업시행 체계 (지원절차도) : 별표1 참조

나. '99 사업비 (예산)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안 (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113,054	113,054	-	113,054	-	-
도매시장법인	-	35,638	35,638	-	35,638	-	-
농협공판장	-	53,516	53,516	-	53,516	-	-
수 집 상	-	8,000	8,000	-	8,000	-	-
물 류 센 터	-	15,900	15,900	-	15,900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시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다.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국 시장과 (02-504-9415-6), 유통정책과(02-504-9411)
- 시·도 : 농림분야 농산물유통담당과
- 시·군 : 농림분야 농산물유통담당계

라. 신 청

- 자 격 : 지원대상 범위내에서 별도기준 작성 운영
- 절 차 : 지원대상자가 사업실시기관에 신청
 - 지원절차도[별표1] 참조
- 구비서류 : 사업실시기관의 소정양식에 의함
 - 용자 신청서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출하조절 자금 용자 추천서 등

마. 지원방식

(1) 도매시장법인

- 선도금 : 법인별 전년도 산지 선도금 운용실적을 기준으로 배정비율 산정
- 대금결제자금 : 상장경매거래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연 소요액의 1/24)을 기준으로 배정

(2) 농협공판장

- 생산농가에 대한 산지선도금 100%와 상장경매거래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 (연 소요액의 1/24)의 30%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정비율 산정
- 공영도매시장 입주(예정) 공판장에 용자금액의 15% 범위내에서 특별 지원 가능

(3) 수집상

- 법정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출하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 배정
- 단, 개인은 100백만원, 법인은 30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4) 농수산물 물류센터

- 선도금 : 물류센터 운영주체별로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산지선도금의 80% 이내
- 대금결제자금 : 예약수의조달 물량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연 소요액의 1/12) 30%
- 매취자금 : 소비지 물가안정과 물류센터의 안정적 물량조달을 위한 자금 소요액의 40%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에 대하여 사후 관리한다.
- 사업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약정 이행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해당없음

나. 보고·기타

- 사업시행기관은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5일 이내에 사업담당 부서에 보고(통보) 한다.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도매시장법인
 -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원사인 경우에는 동 협회를 경유하여 협회장이 일괄 신청하며, 비회원사일 경우는 직접 신청한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지원처 시장조사부(02-790-8012)
- 농협공판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업장지원부 공판장지원팀.
(02-397-5764)
- 수집상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지원처 시장조사부(02-790-8012)
- 농수산물 물류센터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유통종합지원부 신유통기획단
(02-397-7129)

나. 신청자격 : 5.<사업개요> 가, (4) 지원대상자에 한함

다. 신청절차 : 지원절차도(별표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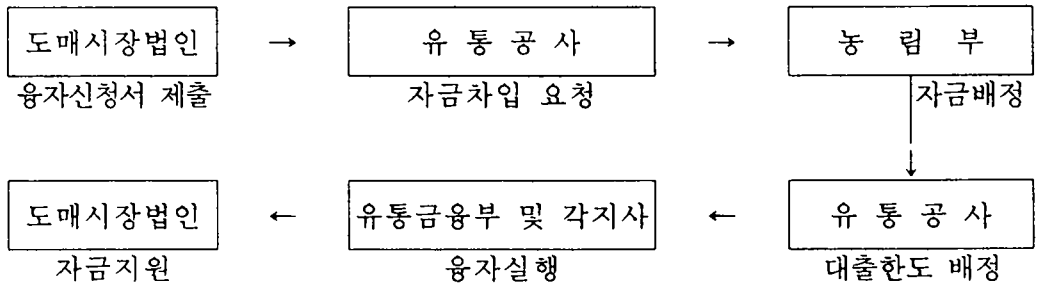
라. 구비서류 : 용자신청,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출하 조절자금 용자 추천서 등

마. 평가지표 : 도·소매비율, 거래형태, 운영실적,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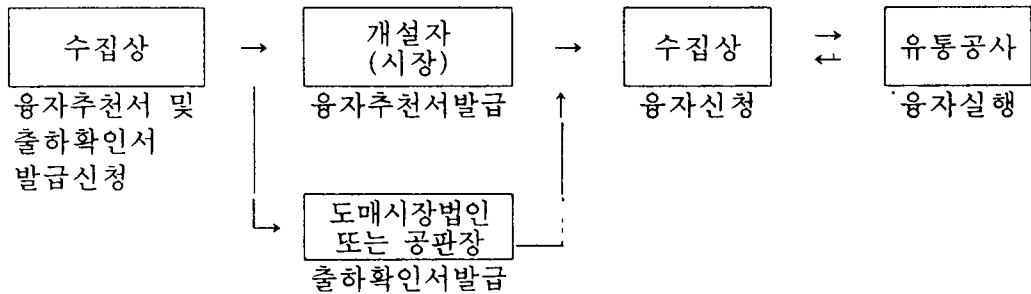
[별표 1]

지 원 절 차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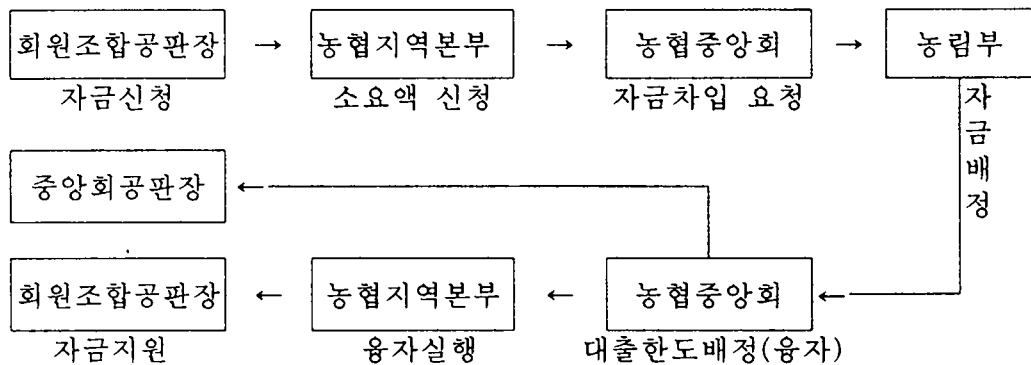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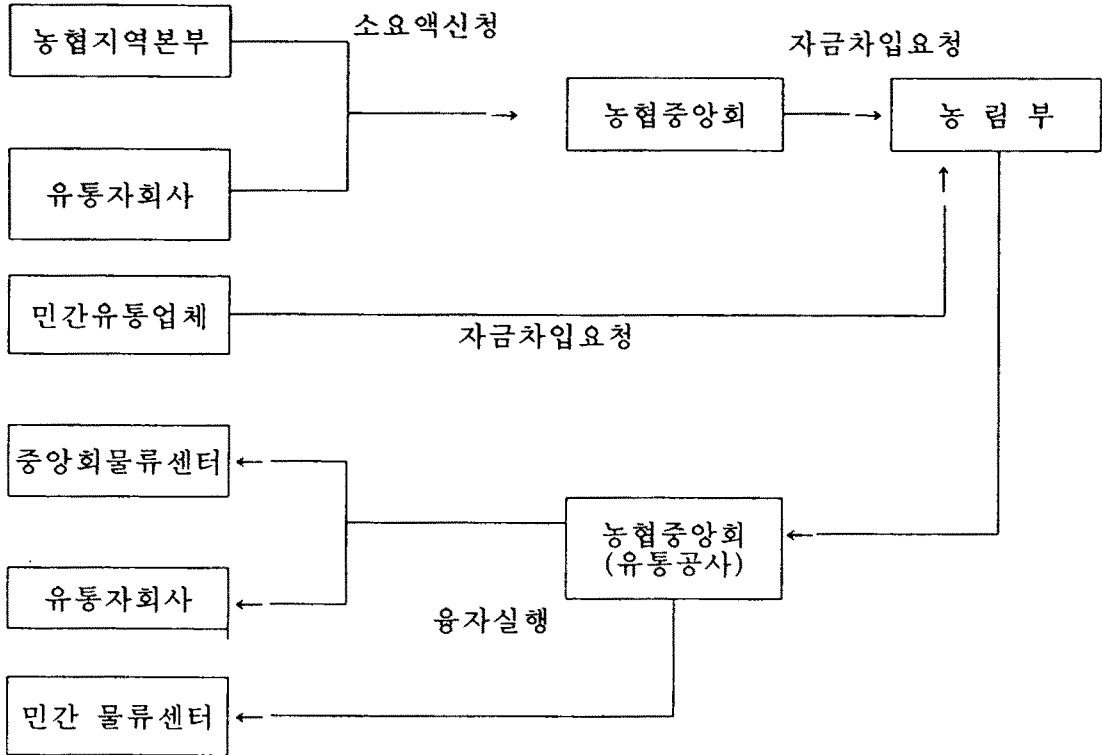
<수집상 출하선도자금>



<농협공판장 출하촉진자금>



<농수산물 물류센터 출하촉진자금>



※ 이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특작과(과장 홍순기, 농업서기관 김남수)입니다.

1. 목 적

- 생산자단체(조직)가 산지시장을 주도하여 시장교섭능력 배양
-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 확대로 산지유통개선 촉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 생산자단체(조직)가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주산단지 재배농가(작목반, 산지법인등)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채소류 생산 및 출하조절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손익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부담 함으로서 사업추진의 합리화 도모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5	'96	'97	'98	'99
계	300,000	62,500	47,500	137,500	21,000	31,500
정부융자	240,000	50,000	38,000	110,000	16,800	25,200
농협자금	60,000	12,500	9,500	27,500	4,200	6,300

* 지원금액은 변동될수 있음

- 정부융자 재원 : '95년 → 농특세 전입금, '96년이후 → 농안기금
 - 융자조건 : 10년거치, 무이자
- 자부담 : 농협중앙회 및 사업참여농협이 분담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가 법인일 경우 참여법인이 부담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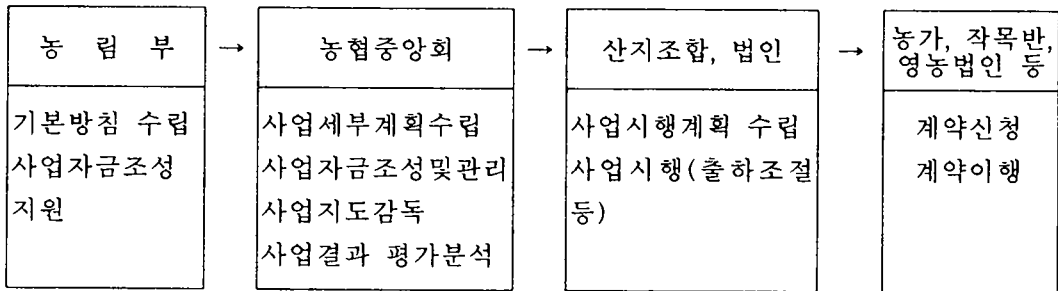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사업설명

- 농협중앙회장이 정부지원융자금과 자체자금으로 채소가격안정 사업자금을 조성하고, 동 자금을 산지농협·산지법인등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여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농가와 계약재배등을 통해 채소의 생산과 출하등을 조절함으로써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대상품목 :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 대상품목은 수급상황등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수 있음

4)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품목의 주산단지농협(특수조합 포함)
- 사업대상품목의 수출업체, 당해지역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수집상등 법인체로서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자

< 사업적격자 검토기준 >

- ① 사업대상 품목의 재배면적 또는 취급물량
- ② 법인의 구성원수
- ③ 자부담 및 자금관리능력
- ④ 사업관리 주체로서의 사업수행능력

5) 사업추진방법 : 계약재배중심 자율방식

가) 계약재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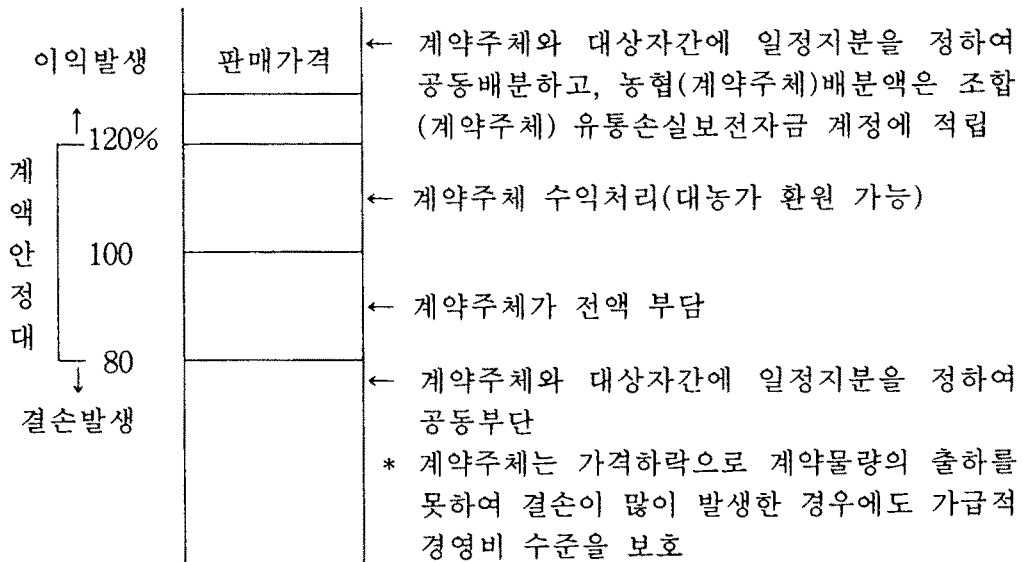
(1) 계약재배방식

- 계약주체 : 산지농협(영농조합법인)
- 계약대상 :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
- 계약물량관리 : 계약대상자가 출하시까지 관리
- 대금지급 :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 지급
- 출하 및 판매
 - 가격동향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로 출하조절
 - 농협중앙회장은 저장성이 있는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출하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2) 사업정산

- 출하경비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순판매가격이 계약안정대(계약가격 $\pm 20\%$) 범위내일 경우에는 손익전액을 계약주체가 처리
- 출하경비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순판매가격이 계약가격 $\pm 20\%$ 를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주체와 계약대상자간에 일정지분의 손·익을 공동부담
- 대농가 정산시기 : 판매후 정산원칙
 - 단, 저장성이 있는 품목은 수매시점의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대농가 정산을 실시하고, 이후 가격상승시 판매이익을 계약농가에 추가배분할 수 있음

[사업정산체계]



주1) 정산단위는 품목특성을 감안하여 농가단위 또는 공동정산방식 채택

2) 계약안정대는 계약가격 $\pm 20\%$ 를 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pm 10\% \sim \pm 20\%$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가격폭등락시 수급안정사업

(1) 기본방향

구 분	무·배추등	마늘, 양파, 고추
가격폭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온저장 ○ 산지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전 산지폐기 ○ 수매비축
가격폭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온저장물량 방출 ○ 예비묘 공급 ○ 직거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매물량 방출 ○ 직거래 물량 염가판매

(2) 시행방법

- 무·배추 저온저장을 통한 출하조절
 - 저온저장시기 : 소비지가격이 경영비 이하로 하락시
 - 고랭지배추 출하기(7~9월), 김장배추(11월)
 - 저장물량규모 : 시기별 저온저장 보관능력을 감안하여 추진
 - * 소요비용은 중앙회 및 회원농협 적립금 활용

- 가격폭락시 자체폐기
 - 요건 : 가격이 경영비 이하로 3일연속 하락시
 - 물량 : 회원농협 및 중앙회 자체적립금의 20% 해당물량
 - 재원 : 회원농협 유통손실보전자금 및 중앙회 채소수급조정자금

- 예비묘 공급
 - 시기 : 재해등으로 절대면적 감소 예상시 사전에 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고랭지, 가을무·배추 위주)
 - 재원 : 농협중앙회 채소수급조정자금

6) 사업우수 및 부진자에 대한 제재

< 사업우수자 >

- 평가결과 우수농협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추가지원
- 계약재배에 3년이상 참여농가는 조합손실보전자금 범위내에서 경영비 수준보전

< 사업부진자(조합·법인) >

- 자금배정액보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미집행자금에 대해 일정 위약금리를 부과
- 다음 익년도 사업지원시 불이익 조치

< 계약 미이행자 >

- 계약금 및 위약금 징수
- 다음년도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등 불이익 조치

7) 사업자금 및 운용 수익의 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과 사업대기자금의 이자를 별도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 동 적립액은 다음의 용도에 한해 사용할수 있음
 - ①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행정비
 - ② 사업조합의 손실보전
 - ③ 농림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 사업대상자는 사업정산결과 가격안정대 이상 발생한 이익배분액과 농가로 부터 징수한 위약금 및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품목별 자금운용 수익을 별도 계정에 적립하여야 하며, 동 적립액은 사업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장은 채소가격안정사업자금 및 운용수익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금운용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나. '98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계	재 원 별	
		정부융자금	농협자금
총 사업비	300,000	240,000	60,000
○ '99 추가조성	31,500	25,200	6,300
○ 기초성('95~'98)	268,500	214,800	53,700

※ 농협자금은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분담할 수 있음

- 사업물량 : 수급전망 등을 감안, 농협중앙회장이 별도시달
- 사업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
 - 금리 : 무이자
 - 지원기간 :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별도 시달
- 사업자금의 운용
 - 총자금중 사업자금 70~80%, 손실대비운용자금 30~20%로 농협중앙회장이 품목별 자금운용수익등을 감안하여 정함
 - 사업조합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손실대비운용 자금을 5% 추가지원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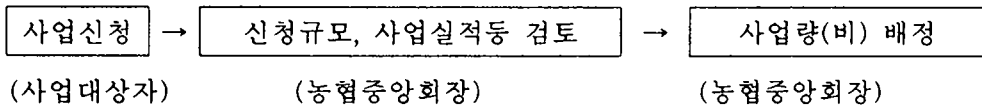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 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특작과 : (02-504-9422/4)
- 농협중앙회 : 채소수급안정사업단(02-397-5734)

다. 사업시행

- 사업세부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농협중앙회장이 당해년도 자금조성 규모와 수급상황등을 감안하여 사업 기본계획 수립시달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사업 계획 변경시달
- 사업량 배정
 - 농협중앙회장이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당해품목의 생산규모등을 감안하여 배정
 - 배정절차



○ 사업비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자금과 운영자금을 사업시행전에 사업대상자에게 무이자 용자지원
- 사업품목의 특성상 전액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품목은 분할 지원할 수 있음

라. 기 타

- 본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 협의후 시행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내실화를 위해 전담사업단 구성운영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조합(생산자조직)의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평가, 기타

- 사업조합에 대한 평가
 - 농협중앙회장은 채소가격안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내실화를 위하여 품목별 사업정산 완료시 조합별 평가를 실시
 - 평가요령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 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손실대비 운영자금 확대지원등 인센티브 부여
- 보고사항
 -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상황 :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 품목별 사업추진사항은 추진진도를 감안, 수시 보고
 - 익년도 사업 및 자금운용계획 : 사업전년도 11월말까지
- 사업자금 운용지침의 변경
 - 농협중앙회장이 자금운용지침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목별 사업시기 30일 이전에 농협중앙회장이 별도 시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무역진흥과(과장 최희종, 행정 사무관 남동익)입니다.

1. 목 적

-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구매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수출농업 기반구축
- 신규 수출시장개척 및 다변화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진흥 여건 조성
 - 농산물수출업체의 대외 수출경쟁력 제고 및 독자적인 해외시장개척 기능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우리 농산제품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국제 농산물 박람회의 참가비용 및 주요시장 특별관측 행사비 지원
- 수출상품의 포장디자인을 국제 감각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
- 수출국의 기호·식관습에 맞는 맛·품질·포장 등을 현지화시킨 수출상품 개발지원
- 수출확대 기반구축을 위한 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체제 구축
-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주 수출국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옥외광고, 라디오, 일간지 등 홍보 지원
- 주요 수출품목의 국내 및 수출상대국의 시장상황에 대한 심층조사 및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지원

3. 근거 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16 조 (농수산물의 수출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 2004년
국제 농산 물박 람회	사업량	60회	16	19	21	24	96
	계	6,398	3,150	3,658	3,680	4,310	17,240
	보 조	3,380	2,520	3,658	3,680	4,310	17,240
	자 부 담	3,018	630	-	-	-	-
수출 활성 화사 업	포장디자인 개발	125품목	50	60	68	90	360
	현지화적응상품개발	-품목	12	15	20	25	152
	채소류, 김치 판촉지원	12,060톤	20,000	40,500	-	-	-
	과실류 CA검역지원	-인	-	-	-	5	24
계	1,381	4,661	8,574	1,187	1,999	10,806	
보 조	688	2,476	4,468	900	1,524	8,530	
자 부 담	693	2,185	4,106	287	475	2,276	
대형 유통 업체 직거 래체 제구 축	바이어초청·기술지도	-회	-	20인	3	5	20
	해외상설매장설치	-개소	-	-	2	3	6
	시장개척단 파견	-회	-	-	4	12	48
	계	-	-	100	1,000	2,050	10,450
보 조	-	-	100	1,000	2,050	10,450	
자 부 담	-	-	-	-	-	-	
수출 홍보 사업	전문지 광고 등	21회	13	20	18	20	20
	옥외전광판	-개국	1	2	2	3	2
	김치홍보센터운영	-개소	2	2	2	4	2
	전파매체홍보	-개월	-	-	6	6	6
계	877	1,477	1,282	1,829	11,427	46,380	
보 조	596	1,182	1,282	1,829	11,427	46,380	
자 부 담	281	295	-	-	-	-	
해외 시장 정보 조사	신규조사	70품목	30	-	20	5/5	5/5
	보완조사	35품목	70	100	100	100	100
	신규 DB	15개	8	8	9	6	6
	품목별 DB	70개	30	-	-	-	-
EDI구축	-	-	-	-	구축	운영	
계	1,556	749	788	817	1,700	4,800	
보 조	1,089	599	788	817	1,700	4,800	
자 부 담	467	150	-	-	-	-	
합 계	계	10,212	10,037	14,402	8,513	21,486	89,676
	보 조 자 부 담	5,753 4,459	6,777 3,260	10,296 4,106	8,226 287	21,011 475	87,400 2,276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국제 농산물 박람회 참가

< 사업 개요 >

(1) 사업내용

가) 지원 대상

-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로서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나) 지원기준 : 박람회 참가비용 및 수출지원(단, 참가업체 전시물품 통관 운송비용 등은 참가업체 부담)

(2) '99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1회	백만원 3,680	3,680	3,680	-	-	-
가. 박람회	11	2,579					
베를린박람회	1	145	145	145	-	-	-
일본특별기획전	1	734	734	734	-	-	-
서울식품박람회	1	168	168	168	-	-	-
곤명원예박람회	1	118	118	118	-	-	-
시카고박람회	1	194	194	194	-	-	-
상파울로박람회	1	158	158	158	-	-	-
홍콩특별기획전	1	351	351	351	-	-	-
상해식품박람회	1	182	182	182	-	-	-
시드니박람회	1	126	126	126	-	-	-
오사카박람회	1	216	216	216	-	-	-
퀵른박람회	1	187	187	187	-	-	-
나. 전시회(1회)	1	40	40	40	-	-	-
우리농수산물식품대축제	1	40	40	40	-	-	-
다. 특별판촉행사	9	1,061	1,061	1,061	-	-	-
LA판촉전	1	110	110	110	-	-	-
러시아판촉전	1	100	100	100	-	-	-
뉴욕추석맞이대잔치	1	120	120	120	-	-	-
대만판촉전	1	60	60	60	-	-	-
일본판촉전	4	552	552	552	-	-	-
밴쿠버판촉전	1	119	119	119	-	-	-

* 각 박람회별 사업비는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추진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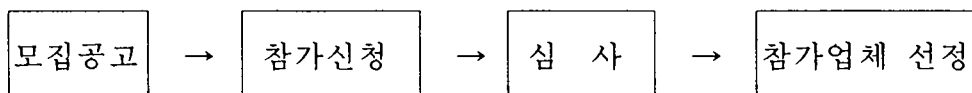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02 - 797 - 4022)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 (02 - 503 - 7278)

(3) 지원대상

-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유망 품목으로 판단되는 상품을 생산 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로서 국제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 수출 농산물을 생산, 수출하는 농업인, 업체 등으로 구성된 협회, 조합, 단체

※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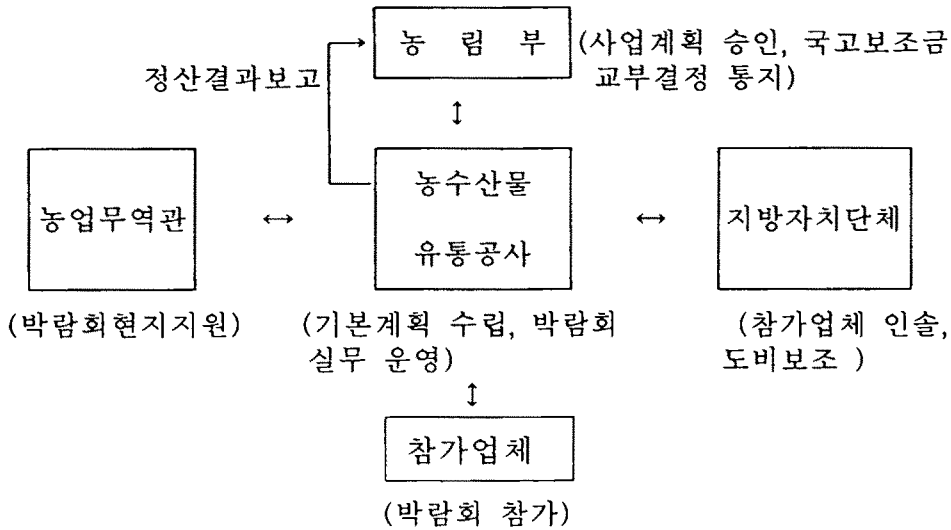


- 선정방법 및 기준

- 기일내 참가신청서와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 참가업체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과거 수출실적, 기존 박람회 참가 여부, 해당 전시품의 박람회 개최 지역 진출 가능성여부 등을 종합평가
- 해당지역에의 수출가능성, 전시품의 현지어 표기, 포장디자인의 적정성 여부, 유통기한 등 검토

(4) 사업 시행

○ 사업체계도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전년도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국제박람회 참가 및 특별판촉행사 사업계획을 수립
- 당해연도 참가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기 및 지역을 고려하여 조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시에는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 내용

- 사업시행자가 전시장 임차 및 한국관 기본 장치 후 업체별로 전시부스 제공
- 종합 홍보 팸플릿 제작, 통역, 판촉물 제작, 해외광고, 수출상담, 박람회장 총괄 관리 등 실시
- 전시품 운송업무 지원 (선적, 통관 등)
- 현지 유관기관간 업무 협조
- 지역별 우수 바이어 포상

(5)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확인

- 사업비 집행내역이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 등 보조금 교부조건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검정, 확인

< 행정 사항 >

(1) 사후관리

○ 국제 박람회 종합 평가 실시 (4/4분기)

-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박람회에 반영하고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시 참고

○ 참가업체별 전담제 운영으로 TOTAL 서비스 실시

- 수출정보, 자금, 수출절차 등 애로사항에 대하여 공동 대처
- 수출계약 체결업체에 대하여 수출이행 지원

(2) 기타 사항

○ 매 박람회 개최 후 결과 분석 및 보고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5조)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나. 수출 활성화 사업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 포장디자인 개발
 - 지원대상 : 농수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업체
 - 지원기준 : 포장 및 용기디자인 개발비용의 70% (업체부담 30%)
 - 지원한도 : 포장디자인 3,500천원/품목, 용기디자인 21,000천원/품목
 - 지원규모 : 68품목(포장디자인 60품목, 용기디자인 8품목)
- 포장디자인 개발 사례집 발간
 - 수록내용
 - 해외 우수 포장·용기디자인 사진 및 경향
 - '99 신규 개발 포장·용기디자인 사진 및 사례
 - 제작부수 : 2,000부
 - 배포대상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업체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나) 현지화 적응 상품 개발

- 농수산물유통공사(해외농업무역관)가 국내 농산물 식품업계 및 농산물 수출단지와 연계하여 추진
- 수출상품의 현지화에 필요한 개발사업비 지원
 - 시장조사비, 광고·홍보비, 시제품, 신선농산물의 육종·육묘기술 지도 및 시험수출 등
- 지원규모 : 20품목
 -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5품목, 가공식품 15품목
- 지원기준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2) '99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백만원 1,187	900	900	-	-	287
○ 포장디자인 개발		562	400	400	-	-	162
- 디자인 개발지원	68품목	542	380	380	-	-	162
· 포장디자인	60품목	300	210	210	-	-	90
· 용기디자인	8품목	240	168	168	-	-	72
· 업체모집공고	2회	2	2	2	-	-	-
- 사례집 발간·배포	2,000부	20	20	20	-	-	-
○ 현지화적응 상품개발	20품목	625	500	500	-	-	125
- 가공식품	15품목	375	300	300	-	-	75
- 신선농산물	5품목	250	200	200	-	-	50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02 - 796 - 4044)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 (02 - 503 - 7298)

(3)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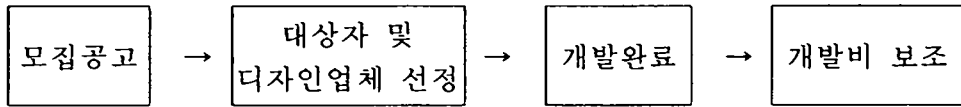
가) 포장디자인 개발

○ 지원대상

- 농수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생산, 수출업체로 최근 2년간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획(신용장 또는 계약서 근거)이 있는 업체

* 디자인 업체 : 포장디자인 기획업체로서 공인 산업디자인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 선정절차



○ 선정기준

- 농림부 지정 20개 수출유망품목 및 관련 제품을 우선선정하되 수출 실적이나 해외시장개척노력이 전무한 품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포장디자인 개발 신청 품목중 포장형태가 유사한 품목은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원 품목수 조정
- 일반 수출품목은 수출실적(70%)과 해외시장 개척도(30%)를 기준으로 산정한 득점순에 따라 선정

나) 현지화 적응 상품 개발

[개발단계]

- 현지화 사업품목 및 연계업체
 - 사업시행자가 해외조직 등을 활용하여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품목의 국내 생산업체중 적격업체를 선정
- 국내 생산업체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착수
 - 해외조직의 조사자료에 의거 국내생산업체가 시제품 생산
- 현지 유통업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자체평가회 개최

[시험수출단계]

- 개발된 현지화적응 가능품목을 현지 전문취급사에 샘플송부 및 요구사항 제시
- 바이어가 요구하는 사항(OPTION)에 의거 국내생산업체가 제공한 “현지화 적응 수출상품”을 시험수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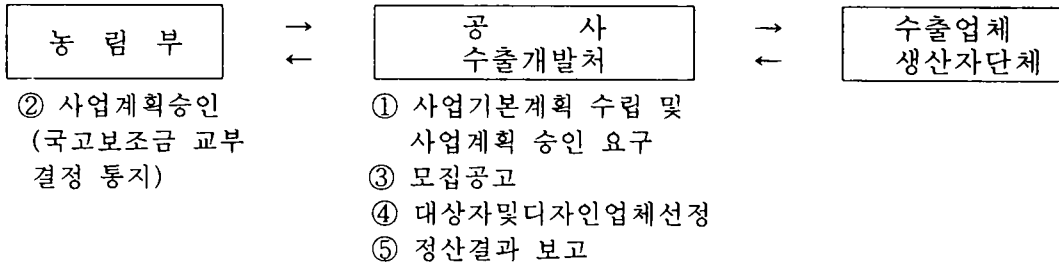
[본격수출단계]

- 현지인의 입맛에 맞도록 변형된 “현지화 수출상품”을 해외조직과 수입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출단계부터는 생산업체가 단독으로 수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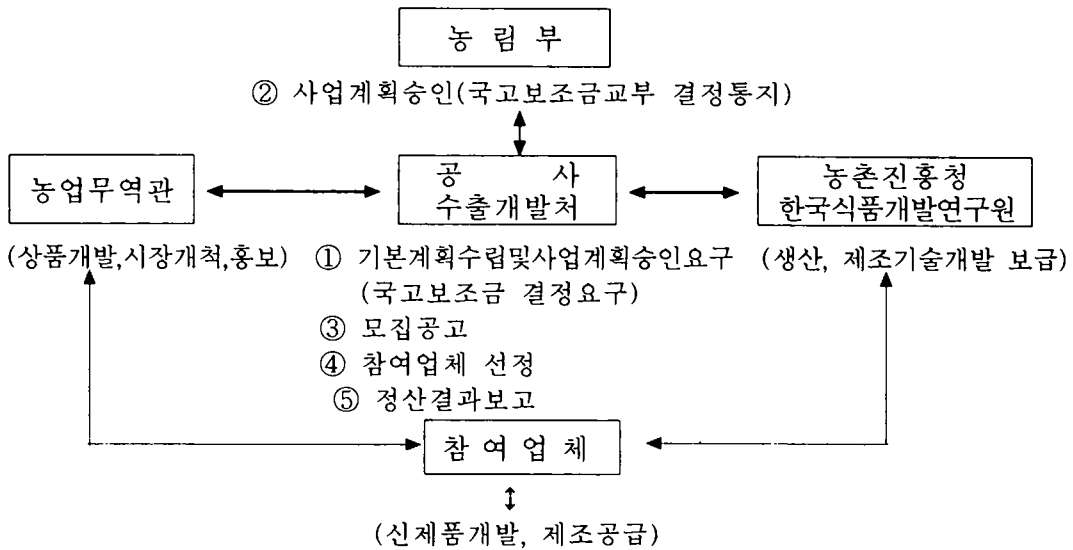
(4) 사업시행

○ 사업체계도

<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



< 현지화적응 상품개발 >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시행자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사업담당부서(무역진흥과)는 사업비의 집행이 사업목적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여부를 검정
- 검정 및 정산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확정 및 사업시행자에 통보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매분기마다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현지점검 및 서면 조사 병행)
 - 포장디자인 개발품 활용실태 조사 및 사업평가
 - 현지화 적응 개발상품에 대한 홍보 및 수출실적 점검

(2) 기타 사항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다. 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 체제 구축

<사업개요>

(1) 사업내용

가) 우수바이어 초청·기술지도

- 초청대상 : 해외 우수바이어 및 대형유통업체 구매자 또는 책임자
- 지원기준 : 국내체류비, 왕복항공료, 구매상담회 개최비용 등 지원
- 초청규모 : 4회, 40명(예산집행상황 및 여건에 따라 규모변경 가능)
- 사업내용 : 현지 대형유통업체 구매 담당자 또는 책임자 초청 설명회·구매상담회 개최
- 지원규모 : 국고 100%

나) 해외 대형유통매장내 상설매장 설치지원

- 사업내용 : 직거래 체제 구축을 위한 해외 대형유통업체 매장내 한국 상품 상설매장 설치지원
- 설치지역 : 일본(동경, 오사카)
- 매장규모 : 2개소(20평 규모/1개소)
- 지원규모 : 국고 100%

다) 시장개척단 파견

- 사업내용 : 우수 수출업체를 목표시장에 파견하여 거래선 발굴 및 현지 통관 및 유통구조, 소비자 기호도 파악을 통한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을 위한 기회제공
- 파견지역 : 미주, 구주, 일본, 동남아 등 주 수출국
- 파견기간 : 지역별 10일 내외
- 파견규모 : 4회, 60업체(예산집행상황 및 여건에 따라 규모변경 가능)
- 지원내용 : 참가업체 항공료, 상담장 임차비, 상품홍보 팸플렛 등
- 지원규모 : 국고 100%

(2) '99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	백만원 1,000	1,000	1,000	-	-	-
○ 우수바이어초청	40명	300	300	300	-	-	-
○ 상설매장 설치	2개소	500	500	500	-	-	-
○ 시장개척단 파견	4회	200	200	200	-	-	-

<추진체계>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02 - 798 - 5031)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 (02 - 503 - 7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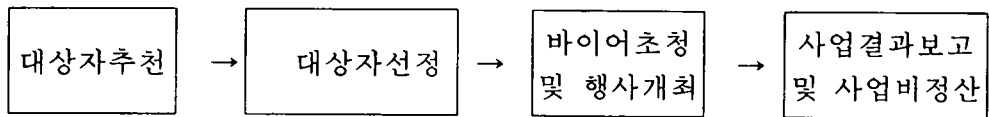
(3) 대상자 선정

가) 우수바이어초청·기술지도

○ 지원대상

- 일본, 동남아등 우리 농산물 주수출국의 품목별 주요 수입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대표 또는 구매책임자 등

○ 사업추진절차



- ① 농업무역관 및 수출단체
- ② 우리 농산물 취급 실적및수입가능성
- ③ 행사계획 수립
- ④ 바이어초청
- ⑤ 행사개최

○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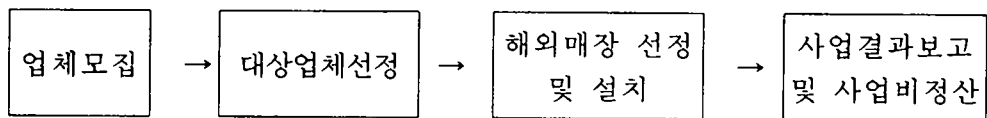
- 한국과 직거래를 추진코자 하는 일본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국과의 거래실적 및 향후 거래 전망과 한국의 농수산 식품의 수입계획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자 결정

나) 해외상설매장 설치

○ 지원대상

- 우리 농산물을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중 적격업체

○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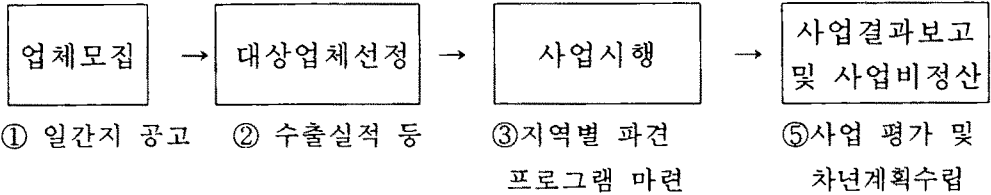
- ① 일간지 공고
- ② 수출실적 등
- ③ 우수대형유통업체와 연계 추진
- ④ 매장설치계약체결
- ⑤ 사업비지급
- ⑥ 평가회개최
- ⑦ 차년계획수립

다) 시장개척단 파견

○ 지원대상

- 우수 농산물 수출업체, 단체 등 수출농업인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시행자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사업담당부서(무역진흥과)는 사업비 집행이 사업목적 및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에 부합여부를 검정
- 검정 및 정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확정 및 사업시행자에 통보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매분기마다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현장점검 및 서면 조사 병행)
 - 사업결과 종합평가 실시 및 효과분석
 - 대형유통업체 및 현지판매 실적 및 운영실태조사
 - 시장개척단에 대한 홍보 및 수출실적 점검

(2) 기타 사항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라. 수출홍보사업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내외 농산물 무역관련 전문지 광고, 인터넷홍보, 홍보디렉토리제작 등 수출홍보비 지원
- 옥외전자광고판 설치 : 2개국 (일본, 홍콩)
 - 우리 농산물의 주 수출국인 일본, 홍콩의 주요 도시에 멀티비전, 빌보드 등 옥외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김치, 인삼, 돈육 등을 홍보
- 전파매체 홍보 : 일본(6개월)
 - 일본의 주요 라디오 채널을 이용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 김치 홍보
 - 이벤트홍보 : 김치홍보센터 운영, 김치담그기 경연대회, 순회시식 판매전 개최, 멀티비전 홍보 지원
 - 연중홍보 : 홍보물 제작·배포, 마스크 캠페인 홍보

(2)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

(3) '99 사업비(예산안)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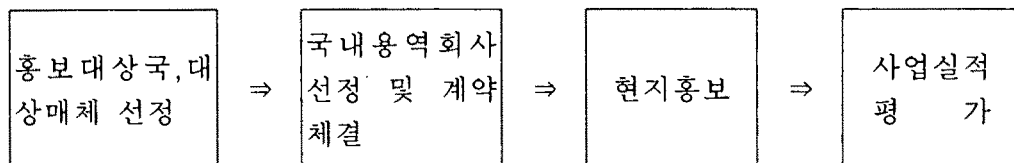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백만원)	-	1,829	1,829	1,829	-	-	-
○ 전문지광고등	18회	141	141	141	-	-	-
○ 옥외 전광판	2개국	698	698	698	-	-	-
○ 김치홍보센터	2개소	490	490	490	-	-	-
○ 전파매체홍보	6개월	500	500	500	-	-	-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02 - 798 - 5031)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 (02 - 503 - 7278)

(3) 사업추진체계



(4)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시행자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추진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사업담당부서(무역진흥과)는 사업비의 집행이 사업목적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여부를 검정
- 검정 및 정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확정 및 사업시행자에 통보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현장점검 및 서면 조사 병행)
 - 홍보효과 분석 및 사업평가
 - 사업중간 점검실시(홍보활동 현장을 방문해 점검 실시)
 - 사업종료시 결과 보고

(2) 기타 사항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분기 전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마. 해외시장정보조사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농산물의 수출확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필수 정보를 수집코자 오이·토마토 등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품목, 식혜·탁주 등 박람회를 통해 수출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는 품목 및 고추·마늘 등 수급관리 품목을 포함한 100개 품목을 선정 집중조사
- '95~'98 조사 100개품목에 대한 정보의 보완·갱신 및 수출 전략품목에 대한 국내외 심층조사
- 국내외 심층조사를 통해 수집된 품목별 국내 및 주요 수출대상국의 생산·유통·시장상황을 분석가공·DB화하여 PC 공중정보통신망을 통해 농수산물 무역정보(KATI)망으로 전파
- 정보이용자 편의 위주의 다양한 정보지원 S/W 및 신규 DB개발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2) '99사업비(예산)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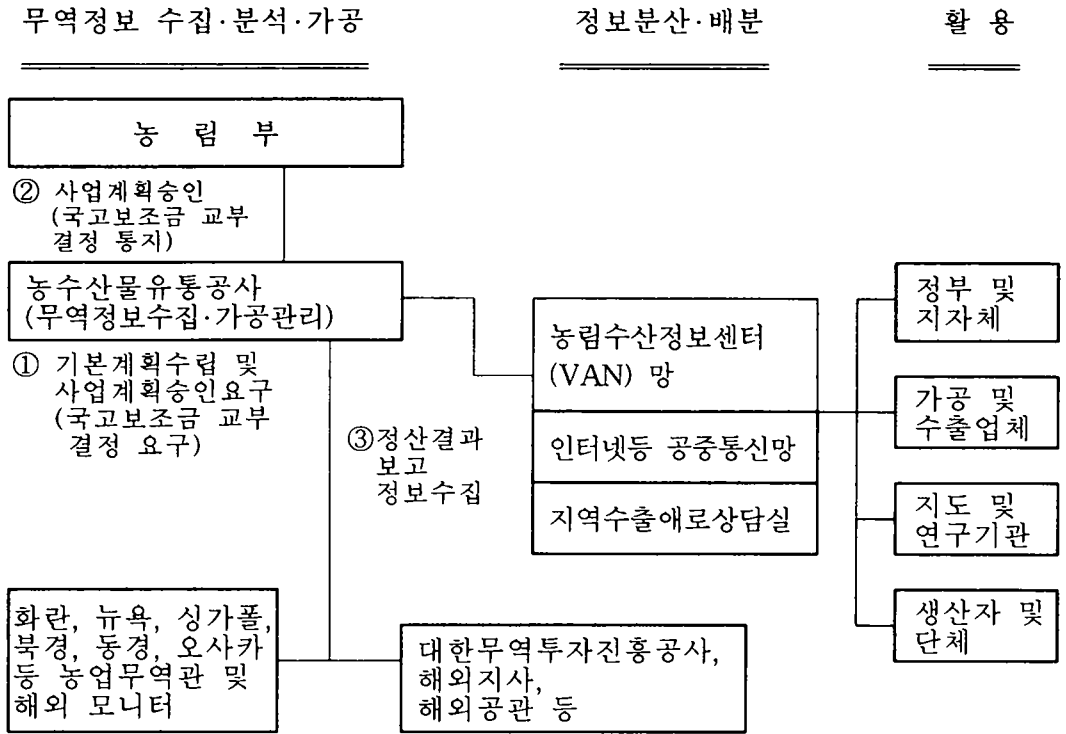
내 용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유자		
계	-	백만원 817	817	817	-	-	-
○ 농수산물무역 정보심층조사	○ 100개 품목 갱신 및 보완	357	357	357	-	-	-
○ 농수산물무역 정보DB구축	○ 9종 S/W 개발	460	460	460	-	-	-

<추진체계>

- (1)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02-794-0594)
- (2)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02-503-7278)

(3) 사업시행

○ 사업체제도



○ 사업계획의 수립

- 사업시행자는 농업인, 수출업체, 관련협회 등을 대상으로 무역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9.1월말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
 - 심층조사 :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 대상품목, 조사인원, 사전조사계획 및 현지조사 내용 등
 - D/B구축 : S/W개발의 내용, 추진시기 등

○ 사업계획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수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조정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행정사항>

(1). 사후관리

- 농수산물무역정보 심층조사
 - 정보수요자 의견수렴 및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 조사결과의 자료집 발간배포 및 DB화 전파

- 농수산물무역정보 DB구축
 - 정보수요자 의견수렴 및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 평가내용 : DB의 내용 및 범위 등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에 대한 활용도 조사·분석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완 및 개선방안 강구

(2)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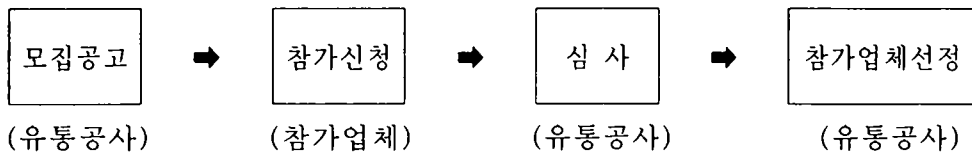
- 분기별 사업진도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의 정산결과 보고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가. 국제 농산물 박람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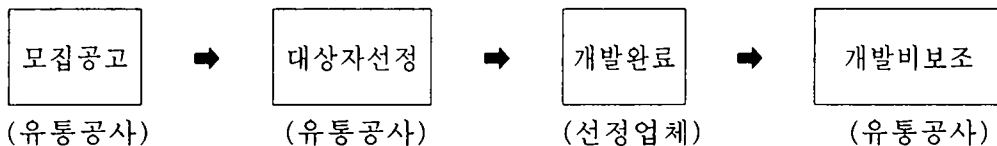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 박람회사업팀(02-797-4022)
-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가 정하는 신청서 등 필요서류
-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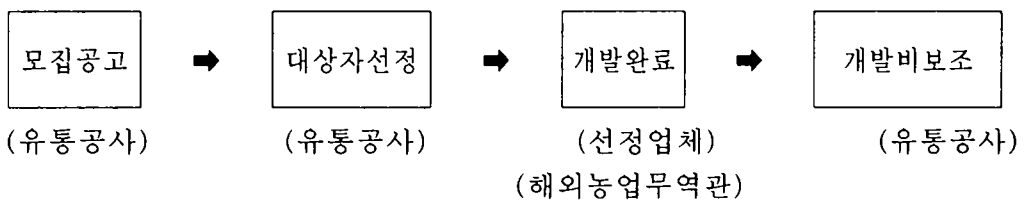
나. 수출활성화 사업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 상품개발팀(02-794-4044)
수출홍보팀(02-798-5031)
-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가 정하는 신청서 등

< 포장디자인개발비 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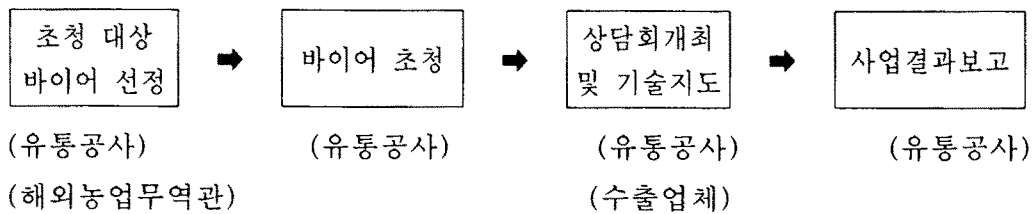
< 현지화적용 수출상품개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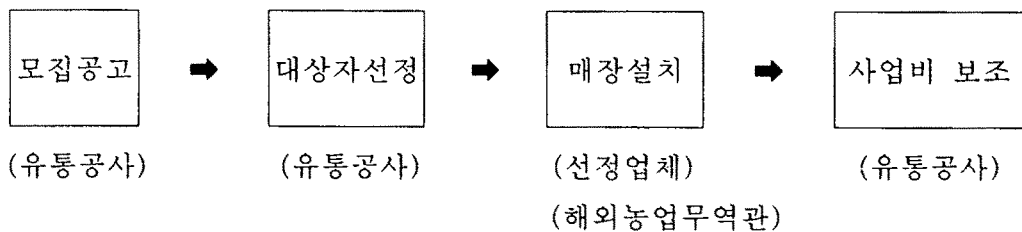
다.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체제 구축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개발처 수출홍보팀(02-798-5031)
-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가 정하는 신청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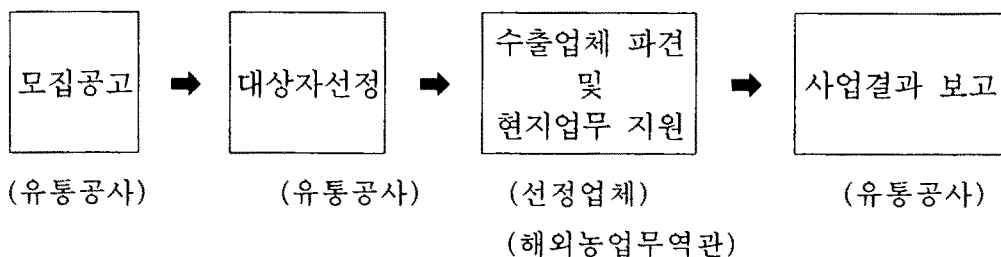
< 우수바이어 초청 및 기술지도 >



< 상설매장 설치 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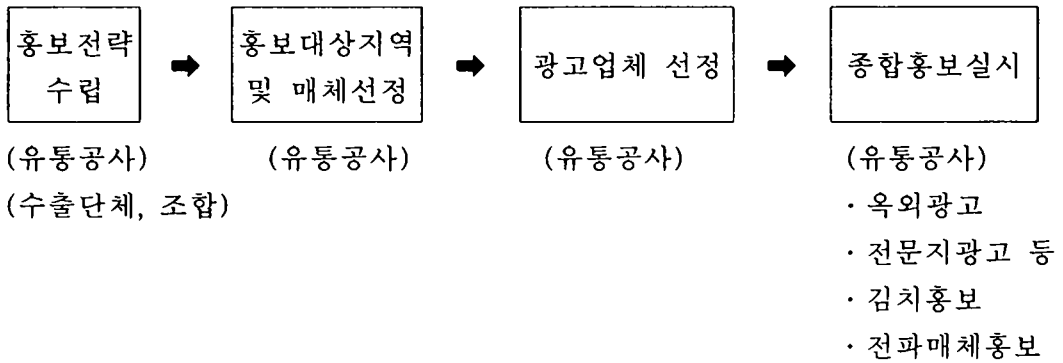


< 시장개척단 파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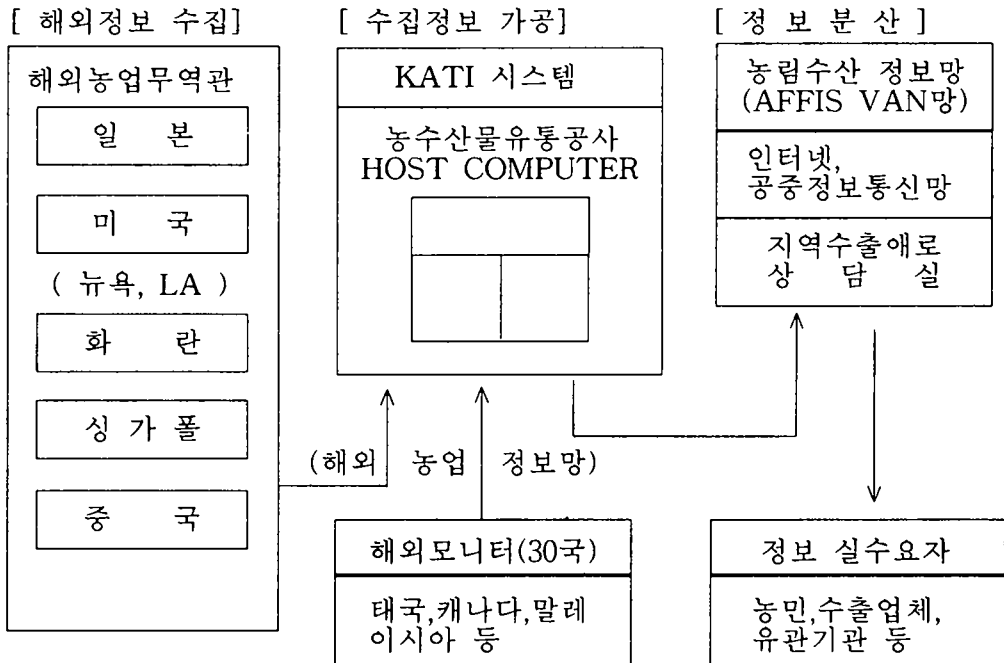
라. 수출홍보사업

○ 사업시행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홍보팀(02-798-5031)



마. 해외시장 정보사업

○ 사업시행자 : 농수산물유통공사(정보지원처) : 02-794-0594



34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무역진흥과(과장 최희종, 행정 사무관 남동익)입니다.

1. 목 적

- 농산물 수출지원 시설과 기능을 갖춘 종합 수출지원기지를 확보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 지원
 - 국제농산물 박람회, 국내농산물 품평회, 회의 등 우리 농산물 판촉 및 교역의 장으로 활용
 - 해외 바이어, 농어민,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농수산물식품의 생산, 유통, 무역정보 등에 대한 종합지원
 - 해외시장 개척, 첨단기술농업 습득, 바이어 유치, 수출상담, 알선 등 생산자 조직 및 수출업체에 종합마케팅 지원

2. 추진방향

- 전시홍보, 무역정보, 수출상담, 알선 등 “종합마케팅” 지원체제 구축
 - 국제전시장, 무역정보관, 회의실 등의 수출지원시설과 복합기능을 갖추어 우리 농수산물식품의 종합수출거점 역할 수행
 - 국내외 무역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무역정보센터 역할
- 수출지원시설의 일원화, 종합화로 생산에서, 수출단계까지 전과정을 일괄 서비스 제공
 - 생산자 조직 및 수출업체에 자금, 경영, 기술 등의 종합수출 지원
 - 국제교류 협력, 선진기술 및 마케팅기법 도입으로 수출활로 개척
- 2002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공사의 효율적 추진
 - 농수산물 수출종합지원기지로써의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시설 및 기능 확보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6조(농수산물의 수출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2-'96	'97	'98	'99 (예산안)	2000	2001- 2004	
사업량	1개소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건설공사 추진 (1차년도)	건설공사 추진 (2차년도)	건설공사 추진 (3차년도)	건설공사 및 준공	
사 업 비	계	73,451	1,072	2,631	20,116	10,445	19,171	20,016
	보조	25,715	1,000	2,631	8,149	3,388	5,873	4,674
	(설계·감리비)	(5,256)	(1,000)	(2,631)	(171)	(319)	(554)	(581)
	(건설공사비등)	(20,459)	(-)	-	(7,978)	(3,069)	(5,319)	(4,093)
	융자	27,278	-	-	7,978	4,050	7,447	7,803
	(설계·감리비)	(-)	(-)	(-)	(-)	(-)	(-)	(-)
	(건설공사비등)	(27,278)	(-)	(-)	(7,978)	(4,050)	(7,447)	(7,803)
	자부담	20,458	72	-	3,989	3,007	5,851	7,539
	(설계·감리비)	(-)	(-)	(-)	(-)	(-)	(-)	(-)
	(건설공사비등)	(20,458)	(72)	(-)	(3,989)	(3,007)	(5,851)	(7,539)

※ 국고보조 지원 금액의 연차별 투자계획은 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비 지원
- 지원기관(사업수행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조건
 - 설계·감리비 : 국고보조 100%
 - 건설공사비 : 국고보조 30%, 농안기금융자 40%, 자체조달 30%
(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투자비율 변경 가능)
- 건설내용
 - 사업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화훼공판장 부지 내)
 - 건축규모 : 부지 5,690평, 건물 15,779평
 - 주요시설 : 전시·박람회장, 무역정보관, 회의장, 전시·홍보관, 수출상사관 등
 - 사업기간 : 1996~2002년
- 주요시설별 기능
 - 전시·박람회장 : 국제박람회, 국내농산물 품평회, 이벤트 행사 등 개최
 - 회의장 :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 무역정보관 : 국내외 정보수집 및 분산
 - 전시홍보관 : 농수산 정책홍보관 및 우수농산물 전시관 운영
 - 수출상사관 : 농수산 관련기관 및 수출업체 입주, 수출상담 및 거래알선 등 지원
 - 편의 시설 : 은행, 여행사, 우체국 등
 - 부대 시설 : 주차장, 기계실, 로비 등

나. '99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농특회계)	용 자 (농안기금)		
계	1	10,445	7,438	3,388	4,050	-	3,007
설계·감리비 건설비 등		319	319	319	-	-	-
		10,126	7,119	3,069	4,050	-	3,007

< 추진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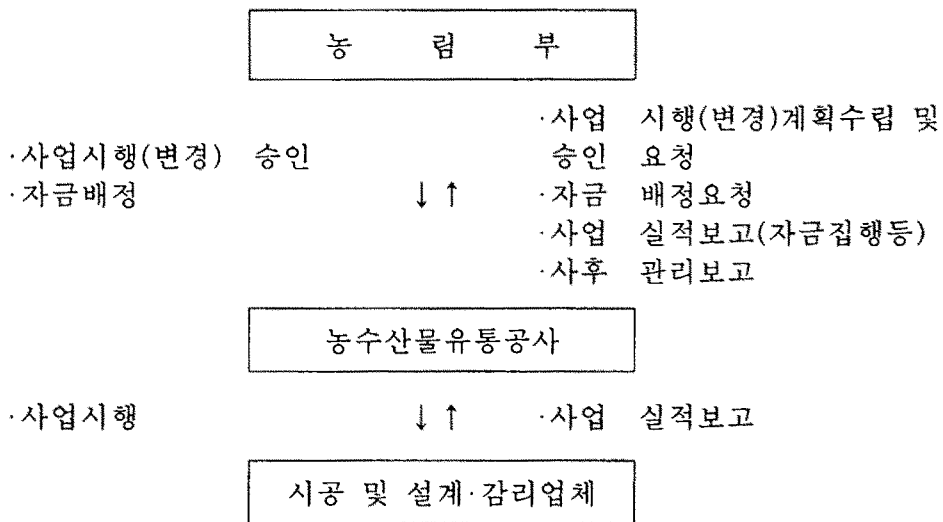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02-503-7278)

다. 사업시행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 절차도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 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 사업비 지원방법 :
자금집행절차는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융자금의 경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검정 및 정산요령>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검정기관은 연도말에 보조사업의 실적이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등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를 심사
- 사업별 보조금은 당해사업 지원조건의 소정 보조율을 초과하지 못함
- 보조금은 교부액과 사업시행자의 실제 수입액을 확인
-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예치 이자는 정부 회계의 수입, 지출, 보고 등에 관한 기준(회계예규 2200.01-1151, '93.5.20) 제1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국고보조금 정산 잔액과 함께 국고에 반납 조치
- 공사실형은 승인된 설계도서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감리조서등에 따라 검정하며 실형상태가 불합리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조치
- 공사실형을 검정함에 있어서 사업시행 인가시에 부여한 지시조건 이행 여부를 대조하여 검정
- 공사실형 검정에 있어서 증거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

< 행정사항 >

(1)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 이전에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기본지침 수립과 전시 등 운영기법 습득으로 센터 준공이후 성공적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사전에 준비
 - 센터 특성에 적합한 장·단기 운영·관리 계획 수립으로 경영 효율성 향상
- 센터 건립 후 운영·관리방안 강구
 - 특화된 농업전문 무역전시장이 되도록 각국 박람회 조직과 협력하여 바이어 유치 등 사업효과 극대화
 - 국내외 시장 및 물류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종합 『무역 데이터뱅크』로 운영(인터넷 등을 활용한 농수산물 수출업체 정보망을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과 전자상거래 등을 위한 정보화 지원)
 - 농수산물관련 국제회의, 세미나 등 개최로 정보교환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과 농업발전 촉진
 - 수출업계에 대한 자금지원, 정보 및 경영컨설팅 제공(농수산물 유통 및 무역에 관한 정책홍보 및 전문교육실시)
- 사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2)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농수산물무역 진흥센터	사업목적 완료시까지	농림부 장관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제공 불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준용

(3) 보 고

- 매 분기마다 건설 추진상황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 분기 익월 15일 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무역진흥과(과장 최희중, 행정 사무관 남동익)입니다.

1. 목 적

수출 농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 및 품질관리를 통한 농산물 수출증대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수출용 농산물의 집하, 저장, 포장, 수출검역 등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종합 수출 농산물 저장시설 설치 지원
-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의 내실화 추진
 - 수출 농산물의 종합 물류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 확보

3. 근거 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16 조 (농수산물의 수출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6년	'97년	'98년	'99년 (예산안)	2000년	2001- 2002년
수 출 활 성 화 사 업	기초조사	-	-	-	200	-	-
	부지구입	-	-	-	-	2,000	-
	설계감리	-	-	-	-	200	400
	건설공사	-	-	-	-	-	4,700
	계	-	-	-	200	2,200	5,100
	보 조 자 부 담	-	-	-	200	2,200	5,100
		-	-	-	-	-	-

5. '9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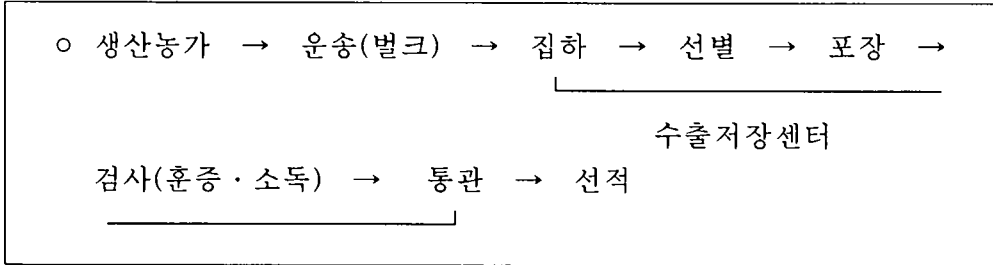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수출농산물의 종합 물류처리 가능한 저장시설 설치, 지원
 - 부지선정을 위한 기초조사결과 선정된 부지에 보관시설·포장실·작업장·사무실 등 건설(부지 2,000평 / 건평 1,000평)
 - 부지선정 및 설치시 운영방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99년 기초조사 실시
- 수출농산물 선별·포장·냉장·컨테이너 적재
 - '97년까지 구입 운영중인 소형 냉장컨테이너(20대) 운영기지로 활용
- 수출물류 종합지원 정보망 구축으로 수출농산물의 원활한 물류제공

나.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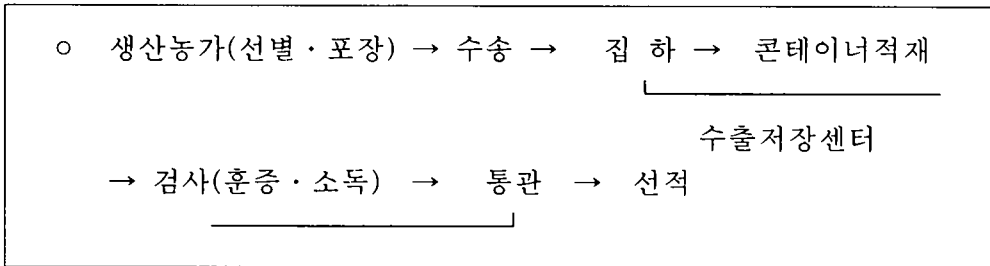
- 집하 : 수출되는 농산물의 일괄 집하 및 상품성 유지를 위한 예냉 및 저온 보관시설 설치
- 컨테이너 적재 : 집하된 수출 농산물을 컨테이너화 할 수 있는 팔레트 작업시설 및 기계화 적재 가능한 컨테이너 상차바닥 설치
- 수출검역 및 통관 : 수출검역을 위한 방역설비, 식품검역, 수출면허 발급을 위한 관련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다. 운영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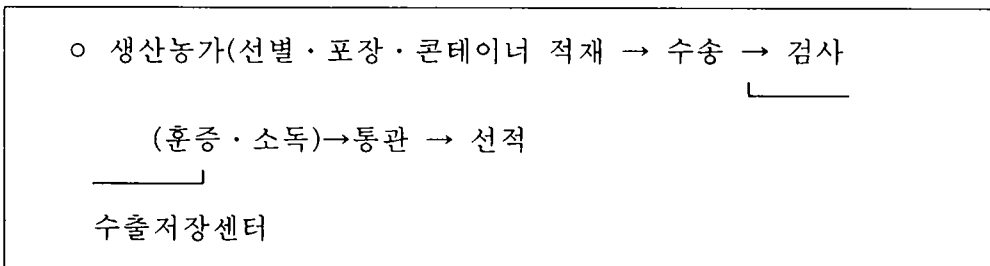
< 수출사례 1 > 수출물류센터에서 집하·선별·Pallet단위 적재 품목
(절화류, 신선버섯류, 신선채소류, 생육, 과일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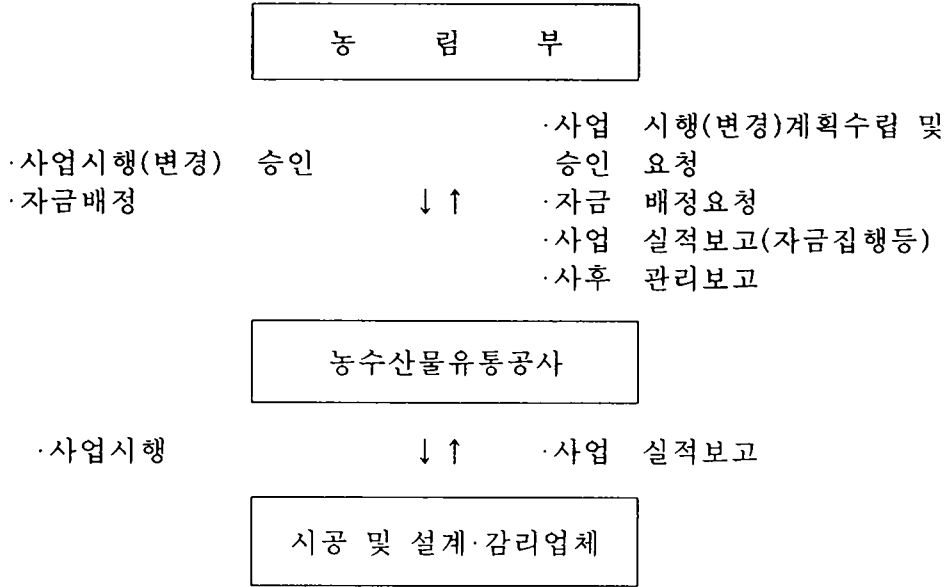
<수출사례 2> 수출물류센터에서 포장완제품을 집하·보관·검역·컨테이너화
하는 품목 (과실류, 채소 등 소량 다품목, 육류 등)



<수출사례 3> 컨테이너 상태로 입하되어 검역·통관하는 품목
(과실류, 육류 등)



○ 사업시행 절차도



- 보조사업자는 기초조사, 시공 및 설계·감리업체 선정시 관련 법규에 따라 경쟁입찰 참여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부실시공 예방 및 고품질 시공 유도
- 보조사업자는 시공자와 감리자의 사전 관리로 품질 저하 요인 사전 제거와 건설 계획 공정표에 따른 철저한 확인 및 관리 감독으로 건물의 효율성 향상과 공사 지연 방지 철저

나. '99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음자		
계	1회	백만원 200	200	200	-	-	-

< 추진 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02 - 794 - 3014)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 (02 - 503 - 7278)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지원방법

- 자금집행절차는 국고보조금집행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집행

< 검정 및 정산요령 >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검정기관은 연도말에 보조사업의 실적이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등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를 심사
- 사업별 보조금은 당해사업 지원조건에 소정 보조율을 초과하지 못함
- 보조금은 교부액과 사업시행자의 실제 수입액을 확인
-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예치 이자는 정부 회계의 수입, 지출, 보고 등에 관한 기준(회계예규 2200.01-1151, '93.5.20) 제1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국고보조금 정산 잔액과 함께 국고에 반납 조치

- 공사실형은 승인된 설계도서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감리조서에 따라 검정하며 실형상태가 불합리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조치
- 공사실형을 검정함에 있어서 사업시행 인가시에 부여한 지시조건 이행 여부를 대조하여 검정
- 공사실형 검정에 있어서 증거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농산물 수출저장시설 건립 이전에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기본지침 수립과 경영기법 습득으로 준공이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계획을 사전 준비
 - 시설 특성에 부합한 운영, 관리계획 수립으로 이용율 제고
- 저장시설 건립후 운영·관리 방안 강구
 - 수출되는 농산물의 일괄 집하 및 상품성 유지를 위한 예냉 및 저온 보관 시설 설치, 운영
 - 집하된 수출농산물을 단위화물화 할 수 있는 팔레트 적재 작업시설 및 기계화 적재 가능한 컨테이너 상차바닥 설치
 - 입·출고 물량 파악 가능한 전산 시스템 구축
 - 수출검역을 위한 방역설비, 식품검역, 수출면허 발급을 위한 관련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 사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수출 농산물 저장시설	사업목적 완료시까지	농림부 장관 승인없이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제공 불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 준용

다. 보 고

- 매 분기마다 건설 추진상황 보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
-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 이 사업은 '99년부터 시행예정인 신규사업으로 추후 예산이 조정되거나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추후 그 내용을 별도 시달할 계획임

36	우수농산물 수매·유통지원사업(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무역진흥과(과장 최희중, 행정 사무관 윤동진)입니다.

1. 목 적

- 민간업체 및 생산자단체가 우수농산물을 수매, 가공 및 수출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기능을 강화

2. 시책 및 추진방향

- 민간업체의 고품질 농산물 수매·수출을 지원하고 계약생산 체제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소득원 확보
- 우수농산물의 포장개선, 규격화와 물류비용 경감을 적극 지원
- 저장·가공 및 부대시설, 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수출규격품 생산 확대와 고품질화를 적극 유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47조(농안기금의 운용)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92~'96	'97	'98	'99
		436,881	198,587	232,188	240,800
우수농산물 수매유통지원	용 자	365,564	160,576	177,588	175,200
수출시설 현대화지원	"	16,317	11,011	28,600	28,600
유망품목시장개척지원	"	55,000	27,000	26,000	37,000

5. '99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우수농산물 구매·유통지원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규모 : 1,752억원

○ 구매지원(지정품목) : 1,132억원

○ 유통지원 : 620억원

※ 단, 수출용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용은 50억원 이내

(2) 지원조건

○ 대출 금리 : 연 5%

○ 대출 기간 : 12개월

○ 자부담비율 : 자금지원액의 10%이상

○ 용 도

- 구매지원 : 각품목별 국내농산물 구매비

- 유통지원

·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가공, 저장, 포장, 운송경비 등 수출 부대 경비

·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부자재 구입비

· 농수산물 수출통조림 부자재 비축 공급비(수출통조림 부자재 비축
공급 업체에 한한다)

○ 대출한도

- 구매지원 { 최고한도 : 품목별 지원규모의 30%이내
최저한도 : 품목특성에 따라 최소 수출물량
(1컨테이너) 해당액으로 정하되
50백만원 이상

- 유통지원 최고한도 : 업체당 30억원이내

※ 지원한도별로 배정하되 여유자금 발생시 지원한도를 초과 할 수 있음

(3) '99 사업비(예산안) 내용

○ 구매지원

(단위 : 백만원)

분 류	세부대상품목	지원액 (P)	지원시기	대출기간	비고
채 소 류	소 계	25,000			
	(오이, 토마토등 일반채소)	(15,000)	4월	12개월	
	(김치원료)	(10,000)	4월	"	
과 실 류	사과, 배 등 과실류 전품목	17,800	6~10월	"	
약 용 류	시호, 길경, 산수유 등 생약 전품목	1,800	자금요청시 (품목특성감안 조정가능)	"	
버 섯 류	송이, 표고버섯을 제외한 버섯류	800	5월	"	
화 웨 류	절화, 분화, 선인장 등 화훼류 전품목	1,400	자금요청시 (품목특성감안 조정가능)	"	
인 삼 류	인삼 또는 그 가공제품 (분말, 엑기스 등)	12,500	8월	"	
임 산 물	소 계	41,100			
	(밥)	(28,500)	7월	"	
	(표고)	(5,000)	3월	"	
	(송이)	(7,100)	7월	"	
	(기타임산물)	(500)	7월	"	
양 파		-	5월	"	
채소종자		1,800	9월	"	
축 산 물	돼지고기, 닭고기 등	11,000	10월	"	
합 계		113,200			

※ 품목별 지원액은 '98년도 품목별 수출액이 최종 집계된 후에 '97년도 실적 대비 증감여부에 따라 품목별로 조정하여 별도 확정(수출증가품목 : 10% 범위내에서 증액, 수출감소품목 : 10%범위내에서 감액)

○ 유통지원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62,000	62,000	-	62,000	-	-
○ 일반수출업체 유통지원	57,000	57,000	-	57,000		
○ 수출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지원	5,000	5,000	-	5,000		

○ 용도별 자금지원 시기

- 구매자금 또는 구매 및 유통자금 동시 배정업체 : 품목별 지원 시기
(2품목이상 사용업체의 유통자금은 각 품목별 지원시기 또는 최초 품목
지원시기에 일괄 지원 가능)
- 유통자금만 배정된 업체 : '99. 8월

추진체계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02-503-7298)

다.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02-794-3014)

라. 자금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1) 지원대상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자로서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실적(구매지원은 해당품목)이 있거나 당해년도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단, 과거 수출실적이 없고 당해년도 수출 계획만 있는 업체는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등)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수출을 목적으로 농수산물을 저장, 가공하는 업체 또는 생산자 단체
- 농수산물 수출용 통조림부자재(공관)를 제조하여 통조림 수출업체에게 공급하는 업체

(2) 선정기준

- 업체의 사업지원신청을 받아 구비서류 확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단, 유통 및 수출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의무 미달로 대출정지중인 업체는 제외한다.
- 수출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사업은 석판, 제관, 골판지 등 부자재 제조 업체로서 전년도 농림수산물 통조림 수출업체에 공급실적이 있고 한국 농림수산물수출입조합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3) 선정 및 배정절차

- 지원계획 공고 : '98. 12월 하순(일간신문에 공고)
- 지원대상업체 사업지원신청서 접수(각지사)
 - '98. 12월하순 ~ '99. 1월하순
- 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구매지원 : '99. 3월말한
 - 유통지원 : '99. 3월말한(단, 수출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용은 '99. 5월말한)
 - * 업체별 구매자금 및 유통자금 용도로 일괄선정·배정

(4) 업체별 자금배정기준

구매지원

- 업체별 평점에 의하되 평점구성은 수출실적 70%, 수출추진노력 30%를 적용하고 수출업체 종합평가결과 최우수,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실적 평점 산출시 우대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전항의 기준에 따라 업체별 배정된 금액은 '98년도 업체별 해당품목의 수출실적에 따라 다음기준에 의하여 조정 배정할 수 있다.
 - '98년도 수출실적이 '97년 대비 100%이상인 업체 : 10% 해당액 이내 증액
 - '98년도 수출실적이 '97년 대비 90%미만인 업체 : 10% 해당액 이내 감액

□ 유통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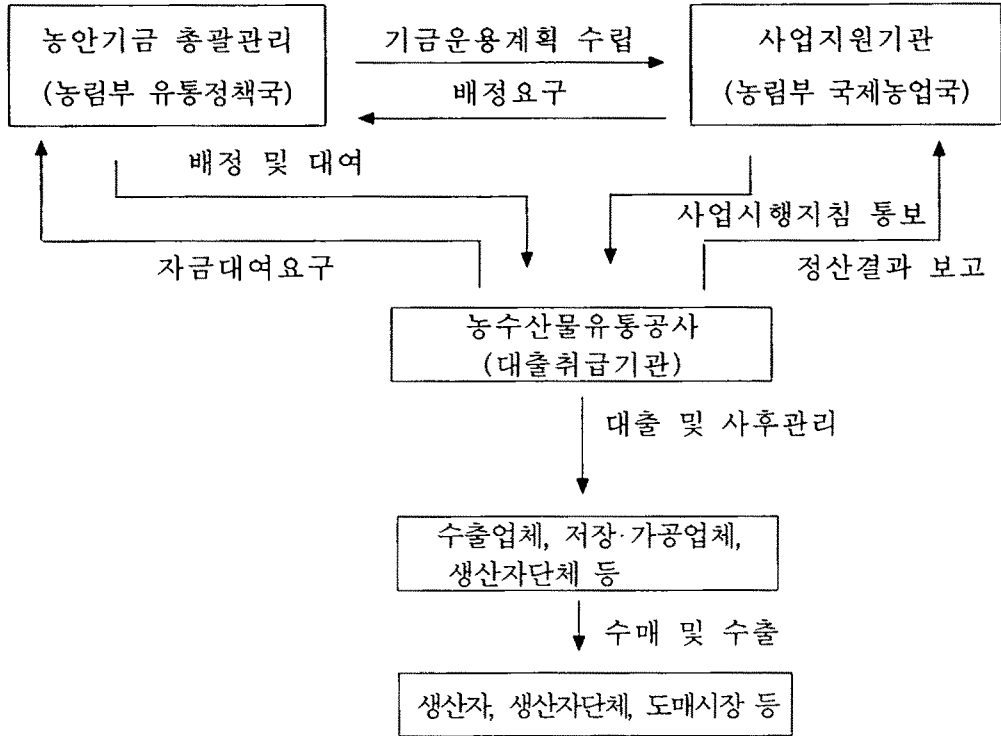
- 일반수출업체
 - 업체별 평점에 의하되 평점구성은 수출실적 70%, 수출추진노력30%를 적용하고 수출업체 종합평가결과 최우수,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수출 실적 평점 산출시 우대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수출용 통조림부자재 비축공급업체
 - 한국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입조합 이사장이 추천한 업체에 사업규모,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감안 배정하되 업체당 20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지원한도별로 배정하고 여유자금 발생시 지원 한도 초과 가능

(5) 사업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사업시행

○ 사업시행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본 지침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 담당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2) 사후관리방법 : 용도별 업체별 사후관리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 수매지원

- 수매의무액 : 대출액의 110% 이상
- 수출의무액 : [대출금 + (대출금 × 자부담비율)] × 50%
 - 수출실적 : 품목별 수출실적은 월평균 전신환 매입율로 환산
- 수매대상
 -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수매한 경우
 - 현지 생산대표 농가로부터 수매한 경우
 -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의 도매·중개에 의하거나 매매 참가인으로 등록한 후 직접 매수한 경우
 - 수출용 농림산물을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에 등록된 수집상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에 한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수집상 포함) 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 사업정산
 - 사업시행자는 품목별 자금상환 만기일후 14일 이내에 수매 및 수출실적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사업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제재사항
 - 자금의 부당사용 : 부당사용자금 회수, 위약금 징구 및 정도에 따라 대출정지 1~5년
 - 법령위반 : 자금전액 또는 일부 회수 및 대출정지 2년(사업지원기관과 협의 감경 가능)
 - 사업의무미달
 - 자부담 비율 미만 수매 : 당해 대출금 전액 회수, 위약금 징구 및 대출정지 2년
 - 자부담 비율 이상 수매하였으나 의무액 미만 수매 : 미이행 상당액의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
 - 수출의무 미달 : 위약금 징구

□ 유통지원

○ 수출 의무액 또는 수출용 통조림 부자재 공급의무액

(일반업체)

- 수출의무액 : 대출액의 55%이상
- 수출실적 : 농수산물 수출실적 전체로 월평균 전신환 매입율로 환산

(수출용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업체)

- 사후관리 방법 : 비축공급실적으로 같음
- 공급의무액 : 공급계약액의 50% 이상 공급

○ 수출용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 수출용 통조림 부자재 비축공급업체 사후관리 기준은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 이사장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 이사장은 매분기별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한다.
 - 공급실적 확인방법은 공관(제관, 골판지) 공급실적 보고서, Local 신용장사본 또는 영세율 매출계산서 사본 등에 의한다.

○ 사업정산

- 사업시행자는 대출기간 종료후 14일 이내에 지원업체로부터 수출실적 자료를 징구하여 사업정산을 하여야 한다.

○ 제재사항

- 자금의 부당사용 : 부당사용자금 회수, 위약금 징구 및 정도에 따라 대출정지 1~5년
- 법령위반 : 자금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및 대출정지 2년(사업지원기관과 협의 감경 가능)
- 사업의무미달
 - 자부담 비율 미만 수출 : 당해 대출금 전액 회수, 위약금 징구 및 대출정지 2년
 - 자부담 비율 이상 수출하였으나 의무액 미만 수출 : 위약금 징구
 - 공급의무액 미이행 : 위약금 징구

나. 보고·기타사항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다음 사항을 농림부(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매·유통지원 세부시행계획 수립 제출('99.1.20까지)
 - 월별 수매·유통지원 집행실적 및 수출실적(익월 10일까지)

(나) 수출시설현대화 지원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규모 : 286억원
- 용 도
 - 농수산물 수출에 필요한 저장·처리 및 가공시설의 증설 및 개보수
 - 농수산물 수출업체 및 수출지원업체의 부대시설(건물 등) 증축(설) 및 개보수
 - 농수산물 수출업체의 부대장비(운반차량, 물류장비 등) 구입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
 - 대출기간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단, 첨단원예시설농단 입주업체는 3년거치 17년상환)
 - 자부담 비율 : 자금 지원액의 25% 이상

나. '99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합 계		28,600	28,600	-	28,600	-	-
○ 일 반 업 체		22,000	22,000	-	22,000		
○ 첨단원예시설 농단입주업체		6,600	6,600	-	6,600		

추진체제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02-503-7298)

다.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02-794-3014)

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1) 지원대상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 무역업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자로서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실적(최근 2개년간 200천\$ 이상)이 있거나 당해년도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단, 과거 수출실적이 없고 당해년도 수출계획만 있는 업체는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서류(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에 의해 100천\$ 이상인 자에 한한다.

(2) 선정기준

- 업체의 신청을 받아 최근 2개년간 농림수산물 수출실적이 200천\$이상인 업체중에서 다음사항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통·수출입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업의무 미달로 대출정지중인 업체는 제외한다.
 - 재무구조의 건전성 여부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최근 2개년간 농림수산물 수출실적
 - 사업추진 가능성
 - 사업추진 시기
 -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

- 지원대상업체 선정의 구체적인 적격심사 기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3) 선정 및 배정절차

- 지원계획 공고 : '98. 12월 하순(일간신문에 공고)
- 지원대상업체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각지사)
 - '98. 12월 하순 ~ '99. 4.15
- 업체선정 및 자금배정 : '99. 5월말

(4) 업체별 자금 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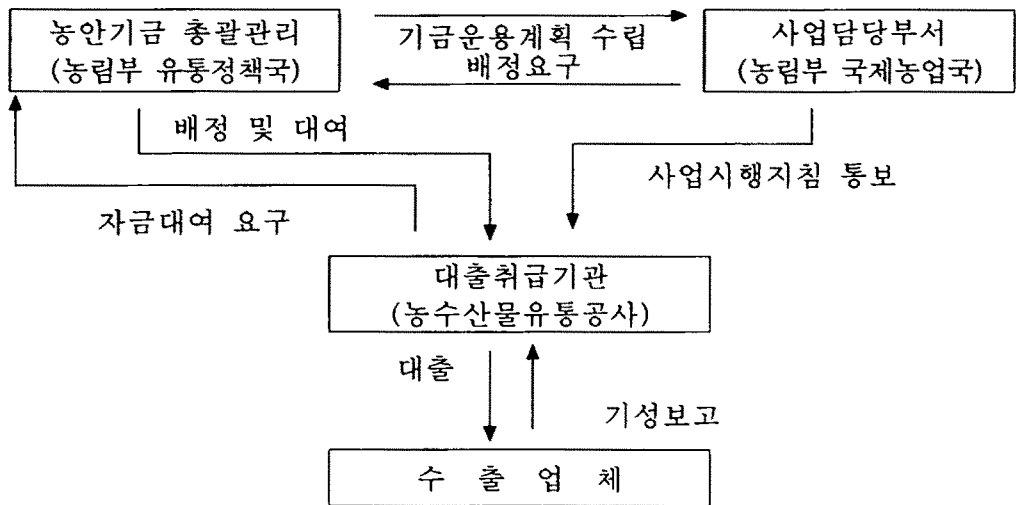
- 업체별 평점에 의하되 평점구성은 적격심사 평점 40%, 수출추진 노력 30%, 수출실적 30%로 한다.
- 항목별 평점산출 세부기준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대출금 지급은 대출약정금액 범위내에서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사업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사업시행

○ 사업시행체계(일반업체)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본 지침에 의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첨단원예시설농단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동 집행지침에 의하되 별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지침을 적용한다.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담당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후관리방법
 - 시설자금 대출금의 사업실적 확인은 기성보고 확인으로 같음한다.
- 제재사항
 - 자금의 부당사용 : 부당사용자금 회수, 위약금징구 및 정도에 따라 대출정지 1~5년
 - 법령위반 : 자금 전액 또는 일부 회수 및 대출정지 2년(사업지원기관과 협의 감경 가능).

나. 보고·기타사항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세부시행계획을 '99.1.20까지 농림부(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망품목 시장개척지원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규모 : 370억원
- 지원조건
 - 금리 : 연 5%
 - 기간 : 12개월 이내
- 자금운용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농협중앙회장, 인삼협중앙회장
- 자금용도
 - 생산자 조직 또는 생산자로부터 국내 우수농수산물을 수매하는 자금
 - 우수농수산물의 수출추진에 따른 포장자재비, 운송비, 부자재구입비 등 유통사업비

나. '99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 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합 계		37,000	37,000	-	37,000	-	-
○ 농수산물유통공사		12,000	12,000	-	12,000	-	-
○ 농협중앙회 (수출관련자회사) (회원조합)		20,000 (13,000) (7,000)	20,000 (13,000) (7,000)	-	20,000 (13,000) (7,000)	-	-
○ 인삼협중앙회		5,000	5,000	-	5,000	-	-

추진체제

가. 사업지원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02-503-7298)

다. 사업시행자 또는 기금대출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장, 인삼협중앙회장
(사업시행자), 농수산물유통공사(기금대출 취급기관)

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농협중앙회 및 인삼협중앙회

- 사업시행자(농협중앙회장, 인삼협중앙회장)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농협중앙회는 수출관련 자회사 및 회원조합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은 다음에 의한다.
 - 지원대상조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 수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을 선정하여 지원하되 수출단지를 운영하는 전문조합을 우선 지원한다.
 - 지원기준 : 조합당 10억원 이내

농수산물유통공사

- 기금대출취급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원칙적으로 신규 유망품목 창업업체, 신규품목 개발업체, 우수 경영체 및 생산자조직 등에 지원하되 우수농산물 수매·유통지원대상 수출업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 단, 자부담 비율, 수매 및 수출의무액은 우수농산물 수매·유통지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 사업시행

- 사업시행자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본 지침에 의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추진실적(자금집행실적, 수출 실적, 사업추진상황 등)을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농림부(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

가. 보고·기타사항

- 사업시행자 또는 기금 대출취급기관은 본 지침에 의한 세부시행 계획을 '99.1.20까지 농림부(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6. 2000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대상사업 : 우수농산물 수매·유통지원, 수출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나.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각지사

다. 신청자격 : 농수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라. 구비서류

- 지원대상업체 사업지원 신청서(사업시행자 소정양식)
- 사업계획서(사업시행자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간 농수산물 수출실적 증명원(외국환은행장 발행)
-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증명원(관할 세무서 확인)
- 농안기금 대출 신청서(사업시행자 소정양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기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정하는 서류

마. 대상자 선정

- 지원계획 공고 : '99년 12월 하순(일간신문, 경제신문)
-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 '99년 12월 하순 ~ 2000년 1월 하순(시설자금은 4월 15일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 2000년 3월(시설자금은 5월말)

※ 사업별 자금지원 시기를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음.